

NORTH KOREA STRATEGY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손기웅·김대경·베른하르트 젤리거

NORTH KOREA STRATEGY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 손기웅 · 김대경 · 베른하르트 켈리거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인 쇄 2013년 12월
발 행 2013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한디자인 (02-2269-9917)
인 쇄 처 (주)현대아트컴 (02-2266-4482)

ISBN 978-89-8479-726-0 93340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Contents

요 약	vii
I. 서론	1
II. 독일정책과 인권정책의 의미	7
III. 동독의 인권상황	17
1. 동독 헌법상 기본권규정과 인권상황	19
2. 동독의 인권상황	22
3. 동독 주민과의 심층면접을 통한 일상생활과 인권	31
IV. 서독의 인권 법제	49
1. 서독의 인권 법제	51
2. 국제적 인권 법제	59
V. 서독의 인권 법제에 대한 동독 정권의 대응	69
1. 사회주의통일당과 국가보위부의 대응	71
2. 평가	83
VI.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87
1.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시기	89
2.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전개	94
3.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주요 조직	112
4. 평가	133
VII. 결론: 과정과 문화적 차원에서의 대동독 인권정책	137
참고문헌	147
최근 발간자료 안내	159

표목차

Contents

〈표 IV-1〉 헬싱키협정 내용	63
〈표 VI-1〉 동독 이탈주민 정착지원 내역	101
〈표 VI-2〉 서독 교회의 동독 교회 지원액	105
〈표 VI-3〉 서독 주민의 동독 방문	110
〈표 VI-4〉 동·서독간 상품교역 현황	111

그림목차

Contents

〈그림 II-1〉 독일정책과 대동독 인권정책의 관계	10
〈그림 II-2〉 시간에 따른 서독의 독일정책과 대동독 인권정책의 변화	14
〈그림 III-1〉 1977년 할레시의 신시가지(Halle-Neustadt)	35
〈그림 III-2〉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 할레시의 모습	35
〈그림 III-3〉 동독 가정의 주말소풍(Wochenendausflug)	39
〈그림 III-4〉 동베를린의 문화공원(Kulturpark)	39
〈그림 III-5〉 1990년 4월 작센하우젠(Sachsenhausen) 수용소 희생자 발굴	44
〈그림 III-6〉 라이프치히 대학 창립 550주년 기념 학생공연	47
〈그림 III-7〉 어린이 회전목마(Kinderkarussell)	48
〈그림 V-1〉 유럽안보협력회의를 중심으로 한 동독과 서독의 관계	73
〈그림 V-2〉 동독의 국가보위부장 밀케(Erich Mielke)와 소련의 국가보안 위원회(Komitee für Staatssicherheit: KGB) 의장 안드로 포프(Juri, W. Andropow)와의 협력계약 조인식(1973)	76
〈그림 V-3〉 중앙 평가 및 정보 그룹의 내부 조직도	81
〈그림 V-4〉 동독의 당 수뇌부와 교회지도자의 정상회담 (1978. 3. 6)	83
〈그림 VI-1〉 1960년대 동독의 협동농장	96
〈그림 VI-2〉 1953년 6월 17일 시민 항쟁	98
〈그림 VI-3〉 연도별 동독 정치범 석방자의 수	103
〈그림 VI-4〉 동베를린 방문을 위해 줄을 서는 서베를린 주민	108
〈그림 VI-5〉 시간에 따른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발전	135

요약



이 연구는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우선 시간적인 차원에서 이 연구는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과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초대총리였던 아데나워의 힘의 우위에 의한 통일정책은 단기간 내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통일 담론 보다 작은 정치적 이슈였던 동독 주민들의 인권문제는 아데나워 정권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아데나워 총리 시기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전독성과 초기 전독성 장관이었던 카이저로 대표되었던 동독지역 출신 명망 있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 건설은 아데나워 총리의 힘의 우위에 토대를 둔 통일정책이 더 이상 시대적인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었다. 결국 베를린 장벽 건설을 통해 장벽 너머 동독 주민들의 인권문제가 서독 사회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서베를린 시장이었던 빌리 브란트는 동독 주민의 인권 침해 감독과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중앙기록보존소의 설립을 주창하였고 기민당의 원내 총무 바르첼은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통한 동독의 정치범의 석방을 동독정권에 제안함으로써 정치권내에서도 대결적 인권정책에 있어 변화가 나타났다. 1969년 정권교체를 통해 총리가 된 브란트는 인권정책 뿐만 아니라 서독의 통일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동방정책을 실행에 옮겨 동독과 동구권 국가에 교류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였다. 사민당 출신 총리였던 브란트와 슈미트는 국내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동독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1975년 헬싱키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동독과 서독 정부의 최종 의정서 서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브란트 정권 초기 동서독 사람들간의 인적접촉에서 시작된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인적, 물적 교류, 교류의 확대, 대규모의 경제지원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브란트가 총리가

된 이후 야당으로 사민-자민당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통일정책을 반대하였던 기민당은 콜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가 당권을 잡게 되면서 서서히 사민-자민당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독일정책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민당의 새로운 독일정책 노선은 콜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다. 그리하여 콜 총리는 브란트-슈미트 총리의 독일정책과 대동독 인권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다. 이러한 인권정책과 독일정책의 연속성은 독일통일이 달성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용적 차원의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동독 주민들이 기본적인 인권개념에 대해 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에 따라 대동독 인권정책을 통해 동독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가 서서히 확대되는 한편 동독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1989년 평화혁명이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사민-자민당의 실용적 인권정책이 시작된 1970년대 초를 기점으로 동독정권은 서독과 서방국가의 인권공세에 맞서기 위해 국가보위부 조직을 강화하였다. 이에 국가보위부의 직원 수는 197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동독 정권이 붕괴된 1989년까지 두 배 가까이 증원 되었다. 또한 동독정권은 동독주민의 인권문제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련과 동구권 국가의 보위기관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였다. 국가보위부는 동독인권 상황에 대한 꾸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전담할 중앙 평가 및 정보 그룹(Zentrale Auswertungs- und Informationsgruppe: ZAIG)을 창설하였다. 따라서 사민-자민당 연정의 실용적 대동독 인권정책은 단기적으로 동독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실용적 대동독 인권정책은 동독 정권의 신봉쇄정책과 신감시정책을 낳았다. 신감시정책에 따라 국가보위부는 반체제지식인, 동독의 서방언론인, 교회, 동독의 일반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

였다. 바로 이 점이 인도적 문제 해결이 인권 개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국 실용적 인권정책의 문제점은 동독 인권에 대한 규범적 비판과 동독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압박수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 연구는 당시 동독 주민들과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 동독의 인권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개인적인 인권개념이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동독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소위 ‘사회적 권리’ 개념으로 인권 개념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권리 개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관에 따라 개인보다는 사회에 우선을 둔 인권 개념이 발전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구조 특성상 동독 주민들은 ‘내 것’ 혹은 ‘나’라는 개념이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발달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 동독에서 인권의 문제점은 바로 사회적 권리개념 안에 내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권리에 개인의 권리는 전체를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동독 정권은 동독 주민들을 정치적 신뢰를 기준으로 하여 신뢰가 높은 주민들에게는 여행과 이동의 자유, 건강권과 같은 사회적 권리를 제공하고 체제 비판자들에게는 무자비한 탄압과 기본권을 제한하였다.

결국 이 연구는 지금까지 서독의 인권정책과 통일정책 연구에 아직까지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동독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동독의 인권상황과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에 대한 동독 정권의 대응을 중심으로 서독의 인권정책 내용과 인권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I. 서론



1990년대 북한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대북 인권정책은 실질적인 정책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연구대상이 되었다. 대북 인권정책과 관련된 많은 연구 논문과 서적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학계에서 점차 발전하고 있는 대북 인권정책 연구와 달리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¹ 왜냐하면 당시 대동독 인권정책은 서독의 독일정책에서 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된 연구대상이 되지 못하였다.² 시간적인 관점에서도 1990년 독일통일과 함께 종료된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인권문제의 국제화, 인권정책의 전략, 인권정책의 주요 개념 등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인권정책에 비해 세련되지 못하다.³ 또한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이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크게 주목 받지 못한 이유는 인권상황과 관련한 동독과 북한의 차이점이다. 외국 언론인의 활동 허용, 서독인들의 동독 방문, 헬싱키 최종의정서에 서명을 한 동독의 인권상황과 아직도 강력한 전체주의 체제와 개인숭배가 유지되는 북한의 상황과는 많은

-
1.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관련한 선행 연구로 다음의 논문이 있다. 이동기, “평화와 인권: 서독 정부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대북 인권정책을 위한 합의,” 『통일과 평화』 3(1)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11); 김학성,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대북인권정책과 인권문제의 세계적 추세』, KPI 연구총서, 제10회 한반도평화포럼 자료집 (2008.8); 김성윤, “독일연방공화국의 대 독일민주공화국의 인권정책사이에 관한 연구,” 『정책과학연구』, 제6권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1994).
 2. 켈리거(Bernhard Seliger) 박사에 따르면 1980년 동독의 인권상황에 대해 서독 사회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문제가 서독 사회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긴장완화에 초점을 둔 당시 서독의 독일정책에서 동독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동독과의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공론화 되지 않았다.
 3. 독일통일 이후인 1990년대 동독의 인권문제는 독일 사회에서 동독 독재 청산 (Aufarbeitung der SED-Diktatur)과 동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역사가들의 논쟁(Histoikerstreit)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 문제는 시기적으로 통일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은 독일통일을 이루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었다. 1960년대 이후 서독 정부는 긴장완화를 통해 동독과 화해 및 협력을 추진하였다. 이 당시 서독 정부는 인권(인도적)문제 해결을 위해 동독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었다. 따라서 독일정책은 베를린 주민들의 이산가족 상봉, 동베를린 단기체류 허가 등 인적 접촉과 같은 구체적이고 해결 가능한 인권문제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 대규모 경제지원으로까지 발전하여 통일의 근간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40년간의 독일정책을 인권이라는 렌즈를 통해 다시 재해석하는 작업은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인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된 독일통일의 역사는 우리에게 풍부한 정책적 상상력을 제공하는 장이다.

둘째, 이 연구는 연구대상의 특성상 동독 주민들과 동독인권상황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통일에 대한 연구는 서독 측의 입장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왔다. 국내에서 진행된 독일통일 연구에서 동독을 서독의 반대 편 혹은 독일통일의 아웃사이더로 취급하여 동독은 아직도 독일통일 연구에 있어 블랙박스(Black Box)로 남아 있다.⁴ 그러나 대동독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을 담당할 서독 측의 행위자도 중요하지만 인권정책의 대상자인 동독 주민들 역시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동독 인권정책을 담당할 주요 행위자는 물론 당시 동독 인권상황의 실재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동독에 살았

4. 지금까지 서독 위주의 독일통일 연구를 벗어나기 위해 연구의 대상을 동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일방적 관계가 아닌 쌍방향적 차원의 소통으로 이해하는 문화적 관점에서 (독일통일을 동독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독일통일을 새롭게 해석할 여지가 많다. 또한 동독 연구를 기초로 하여 북한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성과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규명할 수 있다.

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수행 하였다.⁵ 이를 통해 독일 통일 정책 연구와 동독의 일상사 연구를 결합하려고 시도하였다.⁶ 동독의 일상사 연구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서독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의 인권공세에 대한 동독 정권의 대응에도 주목하였다. 특히 최근 국가보위부 문서 연방위원회(Bu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StU)가 국가보위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서방국가들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응하였던 동독 정권에 대한 연구가 독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주변국인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정부와 이들 국가의 국가보위부 문서고의 협력으로 국가보위부의 해외협력에 대한 연구 역시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다.⁷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독일의 동독 국가보위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동독 정권이 어떻게 서방국가의 인권공세에 대처했는가를 살펴보았다.

-
5. 이 자리를 빌어 바쁜 방향 일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면접 시간을 내주신 동독공산당 희생자 연합의 대표 바그너(Rainer Wagner) 목사님, 11월 박사 구두시험을 앞두고 서도 시간을 내주신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versität Berlin) 정치학과 술제(Gunnar Schulze)씨 그리고 자료 정리를 도와준 뮌헨 대학교(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법학과의 에첸나우어(Phillip Eschenauer)와 베를린 자유대학교 정치학과의 쿠나우(Andreas Kunau)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6. 독일 통일과 동독 연구를 접목시킨 대표적인 연구자는 베를린 자유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자 동독 연구소(Forschungsverbund SED-Staat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소장인 슈뢰더(Klaus Schreoder) 교수이다. 동독 연구가로 출발한 슈뢰더 교수는 독일통일 분야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동독 연구소에서 슈뢰더 교수와 그의 연구팀(알리쉬 박사(Steffen Alisch), 슈타트 박사(Jochen Staadt), 볼레 박사(Stefan Wolle), 뢰넨돈커 박사(Siegward Lönnendonker) 등)은 동독 연구와 독일 통일연구를 접목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http://www.fu-berlin.de/sites/fsed/mitarbeiter/index.htm>>.
7. 국가보위부 문서 연방위원회는 폴란드의 국가과거사 연구소의 문서보관소(Archiv des polinischen Instituts für Nationale Erinnerung: IPN)과 체코의 국가보위부 문서청(Archiv bezpečnostnich solzek)의 협력으로 동독 국가보위부의 다른 동구권 국가의 국가보위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이 연구의 주제인 인권문제는 사람과 체제,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만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인권문제에 대한 학제적 관점 즉,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가로지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정책학적 관점에서 독일정책과 대동독 인권정책의 관계를 통한 범위 설정과 인권정책의 의미(Ⅱ장), 인류학, 사회심리학, 사회학, 법학 차원에서 동독 인권상황의 고찰(Ⅲ장), 서독의 대동독 인권 법제의 검토(Ⅳ장) 그리고 역사학과 정치학적 관점에서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동독 정권의 대응(Ⅴ장, Ⅵ장)을 기술하였다.

Ⅱ. 독일정책과 인권정책의 의미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을 연구하는 데 여러 가지 난제가 있다. 첫째,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연구된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⁸ 둘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해서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복지정책, 외교정책과 같이 정책학에서 다루어온 전통적인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학에서 다룬 내용이 아닌 점도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서독의 독일정책의 하위범주에 속한다. 독일정책은 1949년부터 1990년까지 독일 분단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정책 개념이다. 여기서 독일정책은 독일분단과 동·서독 관계와 관련된 국내·국외적 모든 정책을 말한다.⁹ 이에 연구자들은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을 독일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서독의 독일정책은 대동독 인권정책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책의 내용상 대동독 인권정책은 독일정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⁸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법무부 용역을 수행한 이동기 교수는 현재 독일 국회의 연설문과 문서기록소에서 대동독 인권정책과 관련된 사료를 수집 중에 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독일에서 독일정책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인권정책과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이동기 교수와의 인터뷰: 2013. 9. 13).

⁹ Deutschlandpolitik der BRD,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ttp://www.bpb.de/geschichte/deutsche-einheit/deutsche-teilung-deutsche-einheit/43646/deutschlandpolitik-der-brd>> (Zugriff am 14.09.2013).

● 그림 II-1 독일정책과 대동독 인권정책의 관계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을 위의 <그림 II-1>과 같이 이해한다면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인권정책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다. 즉 독일정책 중에서 동독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개념상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독일정책과 관련하여 동독의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서독의 대동독 정책을 기술하려고 한다. 동·서독의 국내 관계뿐만 아니라 동독의 인권문제 가운데 국제사회와 서독의 외교정책과 관련된 헬싱키 최종의정서와 유엔의 인권활동과 같은 국제기구의 인권활동 역시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에 포함시켰다.¹⁰

¹⁰ 서독 연방헌법재판소는 1973.7.31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판결문에서 동·서독 양측이 기본조약체결에 따라 존중해야 할 기본적인 인권 보장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을 언급하였다. 첫째, 동·서독인들에 대한 서신, 우편·통신 비밀 보장은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없고,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제한할 수 없다. 둘째, 라디오, TV 제작 및 방송과 관련하여 동독 측이 원치 않는 방송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서독측은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항에 동독 측과 합의하면 안 된다. 셋째,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 동독 측이 원치 않는 단체가 결성되어 이 단체의 목적과 선전활동이 조약의 정신에 일치하지 않으며 내정간섭을 행하고 있다고 동 단체를 금지하라는 요청이 있더라도, 서독측은 동 단체가 기본법질서를 준수하는 한 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넷째, 동독 측이 서독 측의

또한 연구자들은 서독의 인권정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을 가능케 한 조건인 동독의 인권상황 자체에도 주목하였다. 특히 연구자들은 기존의 동독인권 현황에 대한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독에 살았던 주민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이 경험하였던 인권의 실재가 무엇인지 즉 동독에서 인권의 실재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공산주의 국가 동독에서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단순히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 개념을 기초로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와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였다.¹¹ 마지막으로 동독 인권문제와 관련된 서독의 인권 법제를 분석하였다.

전술하였듯이 연구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독일정책의 하위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독일정책이라는 맥락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초대 총리 아데나워(Konrad Adenauer)의 독일정책에서부터 ‘통

내공간섭을 구실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주민들의 이익의 표출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섯째, 주민들의 자유왕래를 방해하는 내독간 국경선의 현실 즉 장벽, 철조망, 죽음의 사선, 탈출자에 대한 사격 명령 등은 조약의 정신과 합치하지 않는다.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통일원, 1993), pp. 176-177.

- ¹¹ 정확하고 구체적인 동독의 실제 인권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면접 대상자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3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한국이라는 연구 공간의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가능하다면 많은 면접대상자들과 동독의 인권상황을 주제로 소통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면접 대상자들의 진술은 동독의 정치체제와 일상사와 관련된 문헌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였음을 밝혀 둔다. 이러한 동독 인권 개념의 실제적인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효과적인 대동독 인권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정책 담당자들의 동독의 실제 인권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기 때문이다. 동독의 사회체제와 사람의 성향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 할 것. 안지호, “동·서독 관료 성향에 관한 연구: 현상학적 사회학과 해석학을 중심으로,” 『정부학 연구』 17(2)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안지호, “독일 행정통합의 재고찰: 겔렌(Arnold Gehlen)의 제도론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9(4)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1).

일총리'로 불리우는 콜(Helmut Kohl) 총리까지 독일정책 전반을 개관하여 동독의 인권문제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독일의 초대 총리 아데나워의 독일정책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와의 관계강화를 통해 서독의 국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이는 서방통합을 우선 강화한 다음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통일을 위해 동구권 국가 및 동독과의 협상을 배제하고 친서방 정책을 통해 서독의 국력을 배양하는 것이 아데나워 독일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통합 후통일' 모델은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사민당의 슈마허(Kurt Schumacher)는 물론 같은 기민당내의 유력한 정치인인 카이저(Jakob Kaiser)의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데나워는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당 전략을 통해 자신의 독일정책을 관철시켰다.¹² 그러나 1960년대부터 유럽정치에서 데탕트의 시대가 도래하고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에서 보여준 서방 국가의 무기력함은 더 이상 '대결적 독일정책'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에 아데나워의 뒤를 이은 에어하르트(Ludwig Erhard)와 키징거(Kurt Georg Kiesinger) 총리는 아데나워의 힘에 바탕을 둔 대결적 독일정책에 변화를 주어 동구권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아데나워 이후의 기민당 출신의 두 총리는 기존의 독일정책을 바꾸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동구권 국가 및 동독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ktrin)을 고수해서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키징거 연정에서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사민당 출신의 브란트(Willy Brandt)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

¹² Sebastian Jabusch, "Adenauers Deutschland-Politik: Alternative Ideen & Kritik," 2009, <http://www.sebastianjabusch.de/wp-content/uploads/2010/12/Konrad_Adenauer_und_die_gescheiterte_Einheit_by_Jabusch.pdf> (Zugriff am 17.0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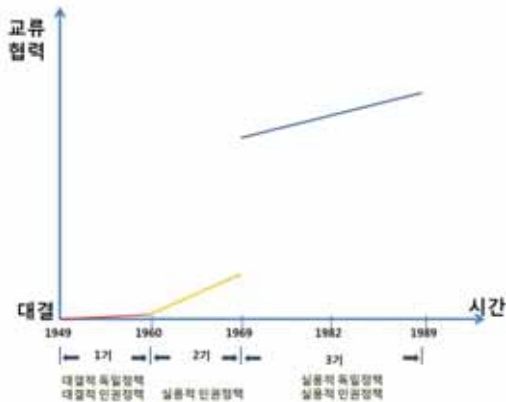
국가와 동독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이들 국가들을 합법적인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동방정책(Ostpolitik)을 자민당과 손잡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¹³ 브란트는 새로운 독일정책을 통해 소련, 폴란드, 체코 등의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동독과의 교류를 위한 유리한 외부환경을 조성하였다. 브란트는 동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한 다음 베를린 문제를 중심으로 동독과의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새로운 독일정책을 폈다. 1972년 기본조약 체결은 브란트 총리 독일정책의 정점이었다. 브란트의 뒤를 이은 슈미트(Helmut Schmidt) 총리 역시 브란트의 새로운 독일정책을 계승하였다. 슈미트 총리는 브란트 총리 시절 동독과 체결된 기본조약의 구체적인 세부 협약을 마무리하여 브란트의 독일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하였다.¹⁴ 서독의 독일정책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민당 정부 시절 야당으로 브란트와 슈미트 총리의 독일정책에 반대만 하였던 기민/기사당이 재집권하면서 동독과의 교류와 관계 개선에 사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사실이었다. 1982년 정권교체로 기민당의 콜(Helmut Kohl)이 총리가 되었다. 콜 총리는 브란트와 슈미트 총리의 새로운 독일정책을 이어 받아 동독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것이 결국 독일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¹⁵ 지금까지 설명한 아데나워 총리부터 콜 총리까지의 독일정책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¹³- Dennis·Bark·David Gress, *A History of West Germany*, 서지원(역), 『도이치헌 대사 2』 (서울: 비봉출판사, 2004), pp. 280-281.

¹⁴- Manfred Görtemaker,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n der Gründung bis zur Gegenwart* (Frankfurt a.M.: Fischer Verlag, 2004), pp. 557-561.

¹⁵- Clay Clemens,, *Reluctant Realists: the CDU/CSU and West German Ostpolitik*, 권영세(역), 『서독 기민/기사당의 동방정책: 고뇌하는 현실주의자』 (서울: 나남출판사, 2010), pp. 347-351.

● 그림 II-2 시간에 따른 서독의 독일정책과 대동독 인권정책의 변화¹⁶



<그림 II-2>는 시간을 중심으로 독일정책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2>에서 잘 나타나듯이 독일정책 40년간의 역사에서 한번의 불연속성이 나타난다. 그것은 1960년대 초까지 서방국가와의 연합을 강화하여 서방과의 단합된 힘을 강조하는 독일정책에서 동독의 체제를 인정하고 협력해 나가는 ‘실용적 독일정책’¹⁷으로 전환된 시점이다. 아데나워 정권 시절 동독과의 대결을 특징으로 한 독일정책을 1기라고 부른다면 이러한 독일정책 1기에서 새로운 독일정책이 나오기 전까지의 과도기 기간을 2기 그리고 브란트 총리가 등장하여 동독과의 화해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독일정책이 시작되어 이러한 흐름이

¹⁶ 연구자가 다음의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Deutschlandpolitik der BRD,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ttp://www.bpb.de/geschichte/deutsche-einheit/deutsche-teilung-deutsche-einheit/43646/deutschlandpolitik-der-brd>> (Zugriff am .14.09.2013)

¹⁷ 여기서 대결적 독일정책과 실용적 독일정책, 대결적 인권정책, 실용적 인권정책이란 개념은 연구자가 다음의 논문에서 빌려 온 개념임을 밝힌다. 이동기, “평화와 인권: 서독 정부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대북 인권정책을 위한 합의,” 『통일과 평화』 3(1)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11), p. 32.

통일 전까지 계속된 3기로 독일정책을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독일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독일정책의 시간적 리듬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정책 1기에는 서독 정부가 반공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인권단체를 지원하여 동독의 인권상황을 알리고 이 조직을 지원하는 대결적인 인권정책의 형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1960년부터 독일정책과 인권정책에서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정책 2기에 서독 정부는 당시 동독 정권을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권정책에서는 서베를린 시민들의 통행협정과 중앙기록보존소의 설립 주창과 같은 실용적인 인권정책의 요소들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동독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독일정책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변화가 시작되었던 독일정책은 브란트의 등장과 함께 대대적으로 변하여 마침내 실용적 독일정책으로 발전하였다. 서독의 인권정책 3기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상호 방문이라는 인적 접촉과 함께 동·서독 기본조약과 헬싱키 최종의정서에서 인권문제가 다루어졌으며 동독에 대한 대규모 경제 지원으로 까지 인권정책의 외연이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시간에 따른 독일정책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중심으로 서독의 독일정책을 시기적으로 구분하였고 독일정책의 맥락에 따라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을 개관하였다.

Ⅲ. 동독의 인권상황



1. 동독 헌법상 기본권규정과 인권상황

가. 동독 헌법상 기본권 규정¹⁸

(1) 기본권의 규정

1949년 동독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바이마르헌법의 기본권 규정에 기초하였으나 1968년 헌법 이래 소련헌법의 기본권규정에 접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949년헌법의 기본권 규정은 첫째로 바이마르헌법의 기본권 규정을 많이 계수한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즉 평등권이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단결권, 필요최저한도의 생활 부조에 대한 권리, 재산권과 상속권의 보장, 친권보장, 모성보호의 권리, 학문과 예술의 권리, 신앙과 양심의 자유, 선거권의 자유와 비밀 등의 보장이 그것이다. 둘째로 소련헌법의 영향은 적었으나, 교육에 대한 평등권과 같은 조항을 도입하였고, 근로의 권리·휴가와 휴식에 관한 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은 비슷한 점이 있었다. 셋째로 기본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입법방침규정으로 보고 이의 소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이것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의 향용론적 이론과 실재를 모방한 것이라고 하겠다.¹⁹

¹⁸ 김철수,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 (서울: 박영사, 2004), p. 174, 구동독의 체계 및 특성은 ①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절대 우위, ② 정치적 반대의 차단, ③ 형식적 사회주의적 법치주의, ④ 국가공안부를 통한 독재, ⑤ 기본적 인권의 제한 등으로 나타난다.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법무부, 1995), p. 17.

¹⁹ 동독 헌법의 바이마르 헌법의 기본권 규정의 속용으로 평등권이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단결권, 필요최저한도의 생활 부조에 대한 권리, 재산권과 상속권의 보장, 친권보장, 모성보호의 권리, 학문과 예술의 권리, 신앙과 양심의 자유, 선거권의 자유와 비밀 등이 그것이다. 또한 교육에 대한 평등권을 규정하였고 근로의 권리·휴가와 휴식에 관한 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였다.

이후 1968년 및 1974년의 개정 헌법은 점차 전통적 기본권 규정에서 벗어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국가관에 근거하게 되었다. 특히 1961년 이래 ‘시민적·자본주의적 개념의 기본권’이란 용어 대신에 ‘사회주의적 인격권(sozialistische Persönlichkeitsrechte)’ 개념을 채용함으로써 독자적인 사회주의적 기본권 개념을 정립하였다. 또한 동독은 기본권보장의 국제조약에도 가입·비준하여 1976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동독 헌법상 기본권 규정은 법규범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주의적 인격을 형성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에 공동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즉 기본권은 대국가적·항의적인 것이 아닌 국가질서의 형성에 참여하는 일종의 참여권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²⁰

(2) 기본권 규정의 특성

형식적으로 볼 때 구동독 헌법도 일련의 기본권조항(동법 제19조)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과 비중은 자유 민주국가에서의 기본권과는 다음에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첫째, 일반적으로 자유권이란 국가에서의 자유(Freiheit vom Staat)를 뜻하는 항의적 성격의 것으로 파악되는 데 비하여 동독 헌법상 자유권이란 국가에의 자유(Freiheit zum Staat)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기본권을 경제적·사회적 필연성의 산물로 보아 전 국가적인 것이 아닌 노동자만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사회주의적 도덕 내지 법과의 일치성을 강조하여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불가분적인 통일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동독 헌법은 기본권을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²⁰- 김철수,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 (서울: 박영사, 2004), pp. 174-179.

위해서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헌법 전문과 기본권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본권의 청구와 실현은 헌법의 근본원칙과 목적에 봉사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 있어서 동독은 헌법재판소나 행정재판소를 두지는 않았으며 사법적 보장이 아닌 정치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보장이 우선시 되었다.²¹ 마지막으로 기본권 남용시의 규제에서 동독 헌법의 기본권은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반대하여 사용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²²

이처럼 구동독 헌법은 사회주의의 완성과 공산주의에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었고 사회주의적 국가의 번영을 위해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기본권의 제한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동독 헌법상 기본권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경우만 행사될 수 있었으므로 기본적인 자유권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결정적으로 제한받게 되었고 노동쟁의와 거주이전의 자유 등도 인정되지 않았다.²³

21. 위의 책, p. 181. 정치적 보장은 인민에 의하여 성취된 사회·국가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데올로기적 보장이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세계관과 사회주의적 국가의식에 의한 보장을 뜻한다. 그리고 경제적 보장이란 생산수단의 사회화, 국유화와 계획경제에 의하여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22. 동독 헌법 제27조 “모든 인민은 이 헌법의 제원칙에 따라 자기의사를 자유로이 공개적으로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인민은 이 헌법의 원칙과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23. 통일원 『인권관련 법규 및 동·서독 사례연구』 (통일원, 1994), p. 48;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pp. 43-44, Rüdiger Thomas, “DDR: Politisches System,” in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1993), p. 115. 1968년 구동독 형법은 지나치게(extensive) 인간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고 가혹한 형벌위협과 결합한 정치적 범죄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국가적 선동(staatsfeindliche Hetze)(동법 제106조) 또는 반국가단체 결성(동법 제107조)은 폭도(동법 제217조), 범죄단체결성(동법 제218조) 그리고 국가모독(동법 제220조)과 마찬가지로 처벌되었다.

2. 동독의 인권상황

가. 동독 체제의 특징

동독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법과 사법에 의한 불법’이었다. 즉 사회주의통일당 일당지배 체제 하의 동독은 체제에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세력을 격리·제거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 심지어 동독이 제정한 성문법조차도 준수하지 않았다.²⁴ 이러한 체제에 반하는 세력을 제거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형사법이 활용되었다. 즉 형법은 반체제 인사들의 생명, 자유, 건강 및 재산을 박탈하기 위한 정치·선전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특히 종교단체의 구성원 등 체제에 비판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을 사회 내부의 잠재적 은둔세력으로 판단하여 정치형법을 가혹하게 적용하였다.²⁵

동독 체제는 형법에서뿐 아니라 민법, 가족법, 노동법 및 국가기관 의 통상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체제비판자들에게 다양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예컨대 학교졸업의 방해, 직업교육 방해, 주택배분·여행허가·승진에 있어서의 불이익 처분, 신분증명서의 몰수, 부당 해고 등이 그것이었다.²⁶ 동독 정권이 취한 일련의 통제 수단은 무엇보다 동독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는 일종의 위하(威嚇)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²⁴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주 15.

²⁵ 체제불법(Systemunrecht, systembedingtes Unrecht)의 개념은 체제불법이 논의 되는 상황과 여건에 비추어 행위 당시에는 국가의 권력강제에 의하여 보장되는 총체적 규범질서 속에서 실정법에 근거한 국가행위의 형태로 자행됨으로써 체제 내부에서는 불법으로 평가받지 않았지만 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종전의 가치질서와 법률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불법으로 평가받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통일원, 『독일통일백서』(주 15), p. 61 이하 참조.

²⁶ 통일원, 『독일통일백서』, pp. 46-47.

동독 체제는 소련 군정과 같이 법을 계급투쟁의 무기로 활용하였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라 법의 문제는 항상 권력문제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독립적인 법기관은 동독에 존재하지 않았다. 법기관은 당 권력의 구조와 메카니즘에 조정되었다. 법기관의 정치지도는 체제비판자들의 일소(Ausschaltung Andersdenkender), 사회주의통일당의 독재체제의 정당화(Legalisierung von Willkürmaßnahmen der SED), 계몽독재체제 확립(Schaffung einer Erziehungsdiktatur)을 목표로 하였다. 법기구에 대한 제도적 그리고 인사적 조직화는 동독의 건국 이후에 당의 철저한 통제에 따라 수행되었다. 동독이 건국하기 전 사회주의통일당은 소련 군정과 함께 주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법기구에 충원하였다. 판사의 임용에 있어 프로레타리아와 반파시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인민법정이 신속하게 조직되었다. 1950년 4월 이미 판사의 반 이상이 그리고 검사의 86%가 사회주의통일당 당원이었다. 이러한 당원의 수치는 계속 증가하여 동독 정권 말기에는 모든 검사 그리고 96%의 판사가 사회주의통일당원이었다. 법기구의 고위직은 노멘클라투어 시스템을 따랐다. 법기구 역시 삼권일치와 민주주의 집중제의 원리(Prinzipien der Gewalteneinheit und des demokratischen Zentralismus)를 통해 운영되었다. 법기구는 정치국(Politbüro)과 중앙위원회 비서국(Sekretariat des ZK)의 결정을 따랐다. 동독의 헌법에는 독립적인 법기관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²⁷ 국가보위부의 제 7국은 구금, 형벌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국가보위부 제 6국은 조사기관이었다. 국가보위부 제 6국은 공식적으로 검사들을 감독하는 기능

²⁷-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Geschichte und Strukturen der DDR*, p. 423-424.

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국가보위부는 항상 당의 명령에 따라 소송 절차, 형량을 감독하였다. 정치적인 법률기관을 위해 국가보위부 제 1 국은 검사들의 선발, 감독, 보직이동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²⁸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형법상의 판결을 위해 사회주의통일당은 헌법 제 6조 2항(Artikel 6 Abs. 2 der Verfassung)에 있는 민주주의 시설과 조직에 대한 보이콧 선동(Boykotthetze gegen demokratische Einrichtungen und Organisationen), 민주주의 정치가에 대한 살인 선동(Mordhetze gegen demokratische Politiker), 군사적인 프로파간다(Militaristische Propaganda), 전쟁선동(Kriegshetze)을 형법적인 의미에서 범죄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이용하였다. 이 조항의 넓은 그리고 자의적 해석을 통해 모든 국가와 당에 반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범죄가 되었다. 1957년까지 헌법 6조 2항에 의해 수천명의 정치범이 동독에서 생겨났다.

탈스탈린화(Entstalinisierung)의 과정에서 동독 정권은 형법의 개정을 통해 법의 정치적 기능을 더욱 세련화(Verfeinerung des strafrechtlichen Instrumentariums) 하였다. 1957년 개정된 형법에는 가능한 정치적 불법행위에 대한 수가 많아졌으며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다양한 정치적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국경을 넘는 행위와 사회주의체제가 아닌 국가의 사람 또는 기관과 접촉한 행위 역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해외여행에 대한 요구는 개정된 형법조항에 따라 국가 또는 사회를 침해한 행위가 되므로 금고형(Freiheitsstrafe)에 처해졌다. 1950년대 빈번히 금고형에 처해졌던 당에 대한 비방, 정치선동으로 인한 위법자들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그

²⁸ 위의 책, p. 425.

이후에도 정치법률가들은 여전히 의사의 자유, 자유여행,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수년형의 금고형을 판결하였다. 1940년대 정치적으로 유죄 또는 구금을 당한 사람들은 약 20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²⁹

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실태

(1) 생명권

동독 정권에서 자행된 생명침해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는 ‘국경수비대에 의한 총격 살인사건’이다. 동독 정권이 수립된 1949년부터 1989년까지 베를린장벽 또는 내독국경에서 국경수비대의 총격으로 사망한 자는 약 200여 명에 달하며 특히 지뢰와 자동발사장치에 의한 사상자도 약 300여 명에 달했다.³⁰ 이들 중 대부분의 피해자는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및 내독국경에 장벽이 설치된 이후 구동독을 탈출하려다가 희생된 자들이었다.³¹

한편 자의적 사법절차에 의한 사형판결도 생명을 침해한 불법의 주요 유형에 포함된다. 특히 1949년 동독 헌법 제6조 제2항³² 소정의 보

²⁹-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Geschichte und Strukturen der DDR*, pp. 427-428.

³⁰- Christoph Schäfer, “DDR-Regierungskriminalität - Erscheinungsformen und Probleme” (Deutschland Archiv, 1993), p. 116.

³¹- Heiner Sauer/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Ulstein, München, 1993), pp. 255-305; 베를린 장벽 설치 직후 잘츠기터(Salzgitter)에 설치되었던 중앙법무기록보존소(Erfassungsstelle)의 공식집계에 의하면 내독국경에서 119명, 베를린 장벽에서 78명 등 총 197명이 살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진호 譯, 『서독 잘츠기터 인권침해중앙기록보존소 - 동독(사회주의통일당)의 국가범죄에 대한 서독중앙기록보존소의 결산보고』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³²- 동조 제2항은 「민주적 시설·기관에 대한 보이콧, 민주적 정치가에 대한 살인선동, 종교·인종·민족증오의 표명, 군사적 선정·전쟁선동 및 기타 평등권에 반하는 행위는

이콧트선동죄에 근거한 사형판결이 대표적이며,³³ 1950년 4월 26일부터 약 3개월간 험니츠 인근 발트하임사에서 진행된 소위 발트하임 재판(Waldheimer Prozeß)³⁴에서도 3,324명에 대해 매 사건 당 1시간 안팎의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3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동년 11월 4일 2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기도 하였다.³⁵ 이 외에도 1961년 이후 1990년 3월 6일까지 기타 구금기관 내에서의 고문·학대로 인한 사망, 국내외에서의 국가공안부 등에 의한 촉탁살인, 의료지원의 자의적 거부 등에 의한 사망사건, 국방위원회·인민경찰 내에서의 사망사건, 의사의 적극적 기여에 의한 살인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 생명침해로 인하여 총 4,444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다.³⁶

형법상 범죄이다. 헌법상의 민주주의적 권리행사는 보이콧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³³- BT-Drs., 12/7820, p. 87.

³⁴-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pp. 627-633. 발트하임 재판의 배경은 1945년 이후 수년간 소련점령군은 전쟁범죄, 나치국가 목적수행(Eintreten für die Ziele des NS-Staates), 기타 반인도주의범죄에 참여하였다는 죄목으로 점령지역 내에서 수많은 독일인 인사를 체포·신문한 후 Sachsenhausen, Buchenwald, Fünfeichen 등에 소재한 나치시대의 유대인수용소에 수용하였다. 이후 1949년 9월 16일 W. Pieck는 소련 지도부와 동독 창건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는데 이때 그는 이들을 동독기관에 인도함으로써 동독이 이들을 자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소련에서도 수용소 해체와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수용자들을 창건될 동독 기관에 인도할 것을 동의하였다. 이후 1949년 11월 12일 피수용자들을 동독에 인도하기 위한 조직적 사전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다. 적당한 구금장소를 물색하던 중 소련 통제위원회(Sowjetischer Kontrollkommission: SKK) 대표가 참여한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발트하임교도소가 선정되었다. 1950년 1월 2일 소련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동독 지역 내의 특별수용소는 해체되어 피수용자들은 동독 내무부로 인도되었으며 이때 동 교도소에 3,432명이 수용되었다. 이후 동 재판은 1950년 4월 26일 개시되어 1950년 7월 14일에 종료되었는데 피수용자 총 3,324명에 대한 3,392건의 재판이 단행되었으며 이들 중 32명에 대하여 사형판결이 선고(사형집행 24명, 무기형 내지 25년의 자유형 7명, 치료시설의 수용 1명)되었고 그 밖에 146건의 무기형, 1,829건의 15년에서 25년간의 자유형 등을 선고받았다.

³⁵- LG Leipzig Urteil vom 1. 9. 1993 - 1Ks04Js 1807/91(NJ, 1993), p. 111.

³⁶- Heiner Sauer/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 Report* (Ulstein, München, 1993); Anhang: "Geschäftsübersicht der Zentralen Erfassungsstelle."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생명 침해에서와는 달리 신체와 건강에 대한 침해사례는 성질상 정확한 피해 내용과 범위의 확인이 쉽지 않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의료 또는 약품지원의 고의적 거부, 환경오염, 원자력기관 및 우라늄광산에서의 방사선 기타 인체유해광선, 지시에 의한 안전수칙 및 노동보호규정의 위반, 의도적인 심리손상, 운동선수들에 대한 흥분제 투여 등에 대한 유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⁷

(3)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에 대한 침해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에 대한 침해유형³⁸으로는 정치적 형벌구성 요건에 의한 체포·구금·수사 및 자유형 선고,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형벌의 집행, 여행의 자유 제한, 동독 내에서의 체류 제한, 양심 및 사상의 자유 폐지, 언론·정보의 자유 및 정치적 선거 자유의 제한, 허가된 국가단체 및 사회단체를 제외한 집회자유 엄격한 제한, 검열조치, 교육·직업 및 학과선택 자유의 제한,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행정적 제한, 정치적 동기에 기한 일정직업의 취업금지, 구동독 탈출자 및 장기 자유형 복역자 자녀들의 강제입양, 정치적 비신뢰성을 이유로 한 입양 제한, 정치적 동기에 기한 친권 박탈, 체포된 국외이주신청자 직계비속의 유기, 정적 및 반동사상자에 대한 계획적 심리압박, 외국인 노동자·동성연애자 등 특정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 등이 언급되고 있다.³⁹

37. BT-Drs., 12/7820, p. 229.

38. 김학성,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대북인권정책과 인권문제의 세계적 추세』, pp. 81-86; 이동기, “동독에 대한 서독 정부의 인권정책 -서독 연방 법무부의 인권활동을 중심으로” (법무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09), pp. 6-8.

39. BT-Drs., 12/7820, p. 230.

(4)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 제한

동독 정부는 국가공안부, 내무부 또는 지방행정기관을 동원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주하려고 할 경우 이주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의 거부, 나아가 회유와 협박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제재하였다. 이와 더불어 직장에서의 해고위협 및 자녀들의 상급학교 진학거부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또한 동독 정부는 긴급한 가사상의 사유로 서독을 방문하려는 자들을 회유하여 이들의 서독여행을 포기하도록 하였으며 상당수 동독 주민들을 “비밀소지자”로 분류하여 서독방문 자체를 제한하였다. 또한 특별감시 대상자들에게는 특별증명서를 발급하여 본 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동구권 국가들을 포함한 외국여행이 제한됨은 물론 당국에 의해서도 항상 철저히 감시되었다.⁴⁰

- 거주이전의 자유: 강제 이주와 강제 연금

1970년대 중반부터는 체제 반대자들에 대한 서독으로의 이주 강요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의사에 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등으로 위협하였다. 또한 동독 탈출자, 합법적 이주 허가자, 서독으로 석방된 정치범은 재차 동독으로의 여행 및 방문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리고 특정의 용의자들에 대해서는 동베를린 등 일정지역의 체류를 금지시켰으며 주거에 대한 신고의무와 직장변경 및 특정인과의 교제를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동독 헌법 제21조 제1항에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헌법의 기본원칙에 상응하여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의 기본원칙이란 당의 영

⁴⁰ 통일원, 『독일통일백서』, p. 324; 이동기, “동독에 대한 서독 정부의 인권정책 -서독 연방 법무부의 인권활동을 중심으로,” p. 6.

도적인 역할, 개인과 국가이익의 일치, 소련과의 동맹관계 등이다. 이러한 지엽적 해석이 가능한 헌법상 유보조항을 이용하여 국제인권협약에 규정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실로 삼았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주로 작가들이 그 대상이 되었으며 작품발표를 방해하거나 동독에서의 출판 금지 등이 주요 수단이었다.⁴¹

- 양심과 종교의 자유 침해

동독에서 종교자유에 대한 침해는 개인의 신앙고백에 기초한 반체제적 활동을 하는 자들로서 평화운동·환경보호운동 단체의 회원들이 박해의 주요 대상이었다. 부모가 기독교인인 자녀들은 상급학교의 진학에서 불이익을 당했으며 종교적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사 임용에 제한을 받았고, 종교적인 이유로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군복무 자체를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 가족 재상봉 거부 및 부모의 친권 침해

동독 정권은 서독으로의 탈출자, 합법적 이주자, 정치범으로 석방된 자와 잔류가족의 재상봉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다. 또한 동독 정치범들은 자신이 수감될 경우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당했으며, 경우에 따라 친권 자체를 박탈당하기도 하였다.

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1) 소유권 및 재산에 대한 침해

소유권 및 재산에 대한 침해로는 몰수 및 농업의 강제집단화, 기업의

⁴¹ 그러나 이러한 작가들에 대한 박해는 국제적인 여론을 통해 동독 정부에 압력을 가해졌기 때문에 일정한 제약은 받을 수밖에 없었다.

몰수, 소련이 점령한 지역 내 동독 탈주자 및 베를린장벽·내독국경지역 거주민 소유 부동산의 몰수, 자영업자와 자유업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강제조치, 정치적 동기에 의한 소송 또는 소위 조세확장을 통한 실질가치의 몰수, 국외 이주자 소유 예술품·골동품의 몰수, 서방세계 접촉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의 몰수와 양로수당 지급상의 불이익 처분, 국경통과 시 사소한 관세법 위반을 이유로 한 화물차 전체의 압수조치, 상사조정단(KoKo)의 이익을 위한 강제몰수, 강제수세조치(정치적 동기에 의한 벌금형 등), 폐쇄계정(Sperkkonto) 내 입금액의 탈취, 화폐조작, 국외이주신청자에 대한 강제조치 및 외환청산계정(Devisenverrechnungskonto)을 이용한 조작행위 등을 들 수 있다.⁴²

(2) 직업에 대한 침해

직업에 대한 침해는 반체제 발언을 이유로 한 학업·직업 및 노동의 금지, 강제노동수용소의 할당, 정치적 동기에 의한 승진기회 박탈 및 불이익 처분 등 직업적 경력의 침해, 일자리의 강제 조정, 교육 및 직업교육의 방해 등이 있었다.⁴³

⁴²- BT-Drs., 12/7820, p. 230. 특히 소유권 등 재산에 대한 반법치국가적 몰수조치에 대한 상세는 Gerhart Fieberg/Harald Reichenbach/Burkhard Messerschmidt/Jürgen Schmidt-Räntsch,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Kontar) (München: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93), Rn. 8f.

⁴³- BT-Drs., 12/7820, p. 230; Christoph Schäffgen, a.a.O(Fn. 19), p. 112. 동독의 인권침해의 양태는 ① 국경수비대 총격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한 내독국경에서의 살인사건, ② 검사 및 법관의 법률왜곡이 주종을 이루는 사법불법, ③ 국가공안부의 불법행위, ④ 상사조정단, 수출입금지품목의 밀수,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등과 관련된 경제범죄, ⑤ 선거결과 조작과 관련된 선거 부정행위 등으로 유형화 될 수 있다.

3. 동독 주민과의 심층면접을 통한 일상생활과 인권

가. 동독의 인권 개념

앞서 동독 헌법상 기본권 규정과 관련된 동독의 인권상황을 살펴보았다. 헌법과 인권 관련 법규를 통해 동독의 인권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모든 사회에서 법과 현실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⁴⁴ 따라서 여기서는 동독에 살았던 주민들과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동독의 일상생활(Alltagsleben)에서 이들 주민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느낀 동독의 인권상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개인적인 인권 개념이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동독은 마르크스-레닌주의(Marxismus-Leninismus)에 기초하여 소위 ‘사회적 권리’ 개념으로 인권 개념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권리 개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관에 따라 개인보다는 사회에 우선권을 둔 인권 개념이 발전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에 인권이 없다는 개념은 잘못된 표현이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동독에 ‘사회적 권리’라는 인권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 동독의 인권 개념은 개인적 인권 개념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국가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

44.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법과 같은 외적 규제만으로 통제할 수 없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내적 규제라는 개인적 윤리, 종교, 문화라는 내적 규제 장치 통제를 무의식적으로 받는다. 이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국가기구를 크게 억압적 국가기구(외적 규제 장치)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내적 규제 장치)로 나누었던 알튀세(Louis Althusser)의 방법과 유사하다. 내적 규제 장치는 무의식, 인간의 신체 그리고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이와 같은 내적 규제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책을 참조할 것. Robert Guggen, *Soziologie des Körpers* (Transcript Verlag, 2004); Beate Kraus-Gunter Gebauer, *Habitus* (Transcript Verlag, 2002). 이러한 내적 규제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는 사회학자 부르디외(Pierre Bourdieu), 엘리야스(Norbert Elias), 슈츠(Alfred Schütz) 그리고 고프만(Erving Goffman)의 책을 참고할 것.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동독 출신 면담자의 진술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동독에서는 개인적인 인권(individuelle Menschenrechte) 개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권의 주체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노동권은 하나의 인권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반인권적인 것이다(Es ist ein Menschenrecht auf Arbeit. Arbeitslosigkeit ist gegen die Menschenrechte)”라고 공산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권리는 동시에 의무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희들(동독 주민)에게 일할 권리를 주고 너희들은 일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민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제한을 받게 됩니다. 동독 정권은 인권 개념을 사회적 권리(gesellschaftliche Rechte)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노동권, 저렴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동독에서 월세는 상대적으로 서독에 비해 저렴하였음)는 동독에 있었지만, 의사의 자유(freie Meinungsäußerung), 집회의 자유(Versammlungsfreiheit), 언론의 자유(Pressefreiheit), 여행의 자유(Reisefreiheit), 정보의 자유(Informationsfreiheit)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인권은 부르주아(bürgerliche)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동적인(rückständige) 것이었으니까요.⁴⁵

위의 면담자가 말한 동독 인권상황의 핵심은 동독에서 인권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인권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독에서 개인적인 측면의 인권은 부르주아적이며 동시에 반동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개인적 인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인권 개념과는 달리 사회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⁴⁵- 동독 주민 A와의 인터뷰(2013. 8. 29).

사회적 권리 개념은 동독에서 존재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 면담자의 진술은 동독의 대표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가운데 하나인 건강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독의 보건상황(Gesundheitszustand)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였던 기업소에는 기업소의사(Betriebsärzte)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업소의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감독하였습니다. 기업소 노동자들의 질병 예를 들면 알콜 중독과 같은 병을 이들 기업소 의사들이 주로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독 정부는 노동력의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동독에는 결핵 치료를 담당하는 특별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결핵에 걸려서 이들 특별 의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동독의 정부는 모든 주민들에게 X선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독과 마찬가지로 결핵(Tuberkulose), 소아마비(Kinderlähmung)와 같은 위험한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Impfpass) 역시 무료로 주민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치과과사들이 일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학생들의 치아를 점검하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기업소에서 노동자들이 원하면 기업소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 기업소 의사들은 노동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소 의사들은 해당 기업소에 일하는 노동자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독의 보건상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동독 정부에게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⁴⁶

면담자가 위에서 진술 한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 동독은 주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독 정부는 동독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

46. 동독 주민 A와의 인터뷰(2013. 8. 29).

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독 정부는 기업소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 학교 학생들의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이라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면담자가 언급한 기업소에 소재하였던 병원 시설과 기업소 의사라는 특화된 의료종사자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면담자의 진술에서 동독 정권이 대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사회적 권리를 저렴하게 공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숙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지금 독일의 기숙사 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학생들은 학생식당(Mensa)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합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당시 한 달 식비로 40 동독 마르크를 썼습니다. 기숙사비는 20 동독 마르크였습니다. 물론 숙소는 단지 단칸방이었습니다. 저는 식비와 기숙사비는 장학금을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나치 시절 수용소 수감자여서 당시 동독 정부로부터 칼-맑스 장학금(Karl-Marx-Stipendium)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총 200 동독 마르크가 넘는 돈을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또한 당시 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극장과 연극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녔던 라이프치히(Leipzig)에서 베를린(Berlin)으로 가는 기차 값이 제 기억으로는 14 동독 마르크 정도 였던 것 같은데 학생들은 8 마르크만 내면 되었습니다.⁴⁷

상기 면담자의 진술처럼 일반 동독 주민들은 사회적 권리에 따라 큰 불편함 없이 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III-1>은 1977년 할레시 신시가지 모습이다.⁴⁸

47. 동독 주민 F와의 인터뷰(2013. 9. 16).

48. 이 사진은 선전용 사진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문헌조사와 현장연구가 더 필요하다. 확실한 것은 동독의 정확한 인권상황은 <그림 III-1>과 <그림 III-2>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림 Ⅲ-1 1977년 할레시의 신시가지(Halle-Neustadt)



출처: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Geschichte und Strukturen der DDR*.

그러나 아래 <그림 Ⅲ-2>는 같은 할레시의 모습인데 위의 <그림 Ⅲ-1>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2>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할레시의 주택 상황이다. 담장에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Hier leben noch Menschen!)’는 문구가 써 있다.

● 그림 Ⅲ-2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 할레시의 모습



출처: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Geschichte und Strukturen der DDR*.

정치 구조적 차원에서 사회주의 국가 동독의 특성은 자본(유)주의 국가 서독과 비교해 볼 때 잘 드러난다. 사회주의 국가 동독은 자본주의 국가인 서독과 비교하여 사적 영역이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사적 공간의 공적화로 인해 공사의 구분이 불투명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구조 특성상 동독 주민들은 ‘내 것’ 혹은 ‘나’라는 개념이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발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치구조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개인적 욕구가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구성원들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요구(그것이 당이든 국가든 상관없이)에 쉽게 순종하는 인간형이 만들어진다. 동독 고위관료를 지낸 다음 면담자의 진술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이후 교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니다. 물론 당은 저에게 교사가 되지 말라고 강압을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 당시(60년대 초) 저와 같이 고등교육을 받은 여자가 많지 않아서 당은 저를 국가기구에 배치하였습니다. 제가 관료가 되기 전까지 국가기구에 대해 교과서로 배운 것 밖에 없는 데 말입니다. 저는 관료가 되었고 나중에 포츠담 시장(Oberbürgermeister)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니다.⁴⁹

위의 면담자의 진술에서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당의 요구에 따라 국가간부(Staatsfunktionär)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화된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진술에서 개인의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가 동독에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적 영역이 최소화 되어 있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치구조에서 개인적 선택 혹은 개인적 자유 개념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49. 동독 주민 B와의 인터뷰(2013. 9. 3).

동독에서 개인의 선택은 제한되고 당의 명령 혹은 사회의 요구를 받아 들이는 피동적인 성격이 발달된다.⁵⁰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 사람들의 성향을 이해한다면 동독 주민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당의 요구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솔직히 인간의 자기 가치 이런 가치관 같은 것은 북한에는 없고 지금 제가 여기(남한) 와서 제일 먼저 충격 받은 게 이런 것이거든요. 그니까 대한민국에 와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생각하게 되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일단 내가 직업을 지지(선택하지) 않습니다 (...) 내가 교사다 하면 그 이상의 것은 없어요. 그냥 교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남한)은 교사도 하면서 실제로 저도 이일 저일 다 하면서 학원도 다니고 배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물론 돈이 들고 시간이 없고 그렇지만 일단 내가 하고픈 거 한 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일단 내가 뭘 하자 하고 생각한다면 만약 실제로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어느 공장기업소에서 일을 해요. 근데 야간대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야간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조직의 승인부터 세포부터 뱉어서 올라 가며 이 신청서에 싸인도 받아야 되고, 조직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야간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서는 그렇지 않잖아요.⁵¹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 동독의 인권 개념 역시 자본주의에서 발달한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거리두기를 해야 사회주의 국가의 인권 개념을

⁵⁰- 동독 주민들의 성향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책을 참조할 것. Hans Joachim Mazz, *Der Gefühlsstau: Ein Psychogramm der DDR*(Argon Verlag: Berlin, 1992). 이 책에서 동독 출신의 정신분석가 마츠는 프로이트(Sigmund Freud) 심리학 이론에 기반하여 동독 주민을 감정정체(Der Gefühlsstau)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⁵¹- 북한 이탈주민 C와의 인터뷰(2013. 9. 10).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² 동독의 인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가 아닌 집단적 관점이 중요하다. 이는 인권 개념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차원에서 동독의 집단적인 문화의 특징을 볼 수 있다. 다음 면담자의 진술은 사회주의 국가 동독 주민들의 집단적인 성향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제 동료들과 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동독에 사는 동안 저는 매년 부활절과 10월에 유원지로 놀러 갔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동료들의 부인들과 아이들도 함께 갔습니다. 이러한 여가문화는 서독에서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독에는 단지 동료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있었지만 동료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모임은 없었습니다. 동독에서 살았을 때 크리스마스에 항상 저는 동료들의 가족들과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는 40~5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돼지 한 마리를 잡고 우리가 준비한 술과 맥주를 마시면서 새벽 5시까지 춤을 추고 놀았습니다.⁵³

52.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와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다음의 경우를 유념해야 한다. 우선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화된 연구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학습한 이론과 개념을 사회주의 국가 연구에 투영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무의식적 경향으로부터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거리두기(Distanzierung)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임도빈·신혜영·안지호, “북한의 지방행정 두텁게 이해하기(Thick Understanding):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3) (한국지방자치학회, 2012). 또한 체제와 사람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중첩되는 연구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만으로 부족하고 인문학과의 학제적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논문과 책을 참조 할 것. 안지호, “인간학으로서의 행정학을 위하여: 엘리 아스의 결합태(figuration)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4) (서울행정학회, 2013); Norbert Elias, *Engagement und Distanzierung: Arbeiten zur Wissenssoziologie* (Berlin: Suhrkamp Verlag, 1983).

53. 동독 주민 F와의 인터뷰(2013. 9. 16).

● 그림 Ⅲ-3 동독 가정의 주말소풍(Wochenendausflug)



출처: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Geschichte und Strukturen der DDR.*

● 그림 Ⅲ-4 동베를린의 문화공원(Kulturpark)



출처: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Geschichte und Strukturen der DDR.*

동독 사회에서 사적 영역의 축소는 시장시스템이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인권에 기초하고 있는 서독과 비교해 보면

분명해 진다. 동독에서는 서독과 같이 삼권분립이 인정되지 않는 정치-행정 구조와 함께 사회적 권리의 강조와 개인적 인권의 부재로 인한 상황을 이해하면 동독에서 개인들은 부당하거나 잘못된 정부기관의 명령에 대해 시정할 권리가 없는 것은 설명될 수 있다.

사람들은 개인적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는 동독에서 의미가 없었습니다. 헬싱키 최종의정서에 따라 일반 주민들은 외국여행서류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독 정권은 이 협정은 정권을 위한 것이지 당신(개인)을 위한 것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당신(해외 여행 서류신청자)은 이러한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는 당국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독에서 실질적인 법을 담당하는 기관이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독에는 정부의 부당한 법이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법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러한 것을 동독에서 두 세 번 경험하였습니다. 서독에서는 관청에 실수에 대해 주민들이 행정법원을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시민적·정치적 인권인 자유권(거주 이전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과 관련하여 다음의 면담자는 헌법 차원에서 동독의 인권상황과는 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저는 동독에 살 때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매년 흑해로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는 텐트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호텔과 같은 더 나은 숙박시설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물론 호텔에 묵고 싶었지만 동독에서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아내와 저는 젊었기 때문에 텐트에서 자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흑해에서 휴가를 즐겼습니다. 물론 그 후에 저는 러시아, 브레스트, 민스크, 체코, 프라하,

부다페스트를 여행 할 수 있었습니다.⁵⁴

동독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주택을 제공하였습니다 (...). 제가 일했던 기업소에는 약 15명으로 구성된 사회주의 작업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업반원들 모두와 함께 주말에 소풍을 갔습니다. 예를 들어 슈프레발트(Spreewald)에 가서 배를 타고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업 일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말에 가족, 동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⁵⁵

상기 면담자의 진술은 동독에서 여행의 자유에 있어서 문헌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헌법상 동독의 여행의 자유와 면담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에서 오는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동독에서 여행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권리가 아닌 사회적 권리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와 여행의 자유는 개인적인 권리가 아닌 사회적 권리이다. 위의 면담자의 진술처럼 거주와 여행의 자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기업소 작업반이라는 집단적 차원에서 동독사람들은 여행을 허락받을 수 있었다.⁵⁶

나. 동독의 권리 침해 실태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동독의 주민들은 이웃 국가인 폴란드, 체코슬

54. 동독 주민 D와의 인터뷰(2013. 9. 13).

55. 동독 주민 G와의 인터뷰(2009. 6. 30) 이 자료는 다음의 논문에서 재인용하였음. 안지호, “동·서독 관료성향에 관한연구: 현상학적 사회학과 해석학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7(2)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56. 이러한 여행의 자유가 개인적인 선택인지 혹은 기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조직된 것인 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문헌연구와 심층면접 작업이 더 필요하다.

로바키아, 헝가리, 러시아 등 동구권 국가로 여행을 갈 수 있었다. 다음 면담자의 진술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동독에서도 동구권 국가로 여행 갈 수 있었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독에서 돈이 있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 모든 곳을 갈 수 있었습니다. 동독에서는 한동안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로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초부터 폴란드에서 자유노조운동(Solidarnosc)이 일어나서 폴란드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행 비자를 꼭 받아야만 했습니다. 헝가리 또한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1974년 저는 아내와 함께 헝가리로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비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을 할 수 없었고 동독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동독에는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압수하여 이들에게 대체신분증(Ersatzausweis)을 교부하였습니다. 대체신분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독 지역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수도인 동베를린을 여행할 수 없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사는 지역(Landkreis)을 벗어날 수 없는 여행의 자유가 더 제한된 대체신분증이었습니다.⁵⁷

상기 면담자의 진술처럼 동독에서 해외여행 혹은 동독 내에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은 정치범들이었다. 또한 이들 정치범들은 죄의 정도에 따라 수도 동베를린을 제외하고 이동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날 수 없는 이동의 자유가 완전히 제한된 사람들로 구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면담자의 진술에서 흥미로운 점 가운데 하나는 동독의 인권 개념인 사회적 권리가 선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즉 동독 정권은 동독 주민들을 정치적 신뢰를 기준으로 하여 신뢰가 높은 주민들에게는 여행과 이동의 자유, 건강권

57. 동독 주민 A와의 인터뷰(2013. 8. 29).

과 같은 사회적 권리를 제공하고 동독 정권에 대해 충성이 약한 주민들을 분류하여 사회적 권리를 제한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동독의 인권 상황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은 정치범 혹은 수감자들의 인권상황이다. 면담자는 다음의 진술에서 재소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가 동독의 보건상황에 대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독 주민의 건강권이 제한받았던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극물이나 위험한 물질이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기업소에 있어서 이들 기업소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원활하게 공급받아야 했는데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강권이 지켜지지 않았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데사우(Dessau)에 있는 감옥에 있으면서 끔찍한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당시 데사우에는 가스렌지와 같은 것을 생산하는 데사우 가스기구 제작소(Dessauer Gasgerätewerke)가 있었습니다. 이 기업소는 프레스 기계를 사용하여 철판을 가공하여 가스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공장 대부분의 프레스 기구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소에서 노동자들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업 재해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독으로부터 좋은 기계를 수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지만 당시 동독은 만성적인 외화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서독의 기계를 수입할 충분한 돈이 없었습니다. 이에 동독 정부는 이 기업소에 데사우에 있는 죄수를 노동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죄수들의 입장에서 이 기업소에서 일하면 감옥에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죄수들이 이 기업소에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 이 기업소에서 일하였던 죄수의 10분 1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⁵⁸

58. 동독 주민 A와의 인터뷰(2013. 8. 29).

대표적인 동독의 시민적·정치적 인권인 건강권은 체제에 순응한 일반 주민들에게 제공되었지만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정권의 불만자, 재소자, 정치범에게는 사회적 권리의 박탈을 통해 이들을 탄압, 회유, 교정하는 수단이 되었다. 위의 면담자의 진술처럼 동독에서 재소자들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무시되었다.

● 그림 III-5 1990년 4월 작센하우젠(Sachsenhausen) 수용소 희생자 발굴



출처: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Geschichte und Strukturen der DDR*.

모두가 국가보위부의 노여움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직장 과 부인,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가보위부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가보위부가 관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권에 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독이 불법 국가라는 것은 맞습니다. 사람들을 탄압하고 자유가 없었으니까요.⁵⁹

⁵⁹ 동독 주민 G와의 인터뷰(2009. 6. 30) 이 자료는 다음의 논문에서 재인용하였음. 안지호, “동·서독 관료성향에 관한연구: 현상학적 사회학과 해석학을 중심으로.”

그러나 체제 비판자들과는 달리 동독의 체제에 순응하고 살았던 많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권리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에게 제공된 사회적 권리를 통해 동독 정권은 정당성과 충성도를 담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권리는 통일 이후 동독 주민들이 동독 사회를 그리워하는 오스탈기(Ostalgie) 현상이 대두되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 되기 전 시절이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동독의 정치체제가 오늘날보다 더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독 주민들은 모두 직업과 집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았던 과거의 안정된 삶을 말합니다.(...) 동독 주민들은 안정되고 편안한 사회에 살았으니까요.⁶⁰

그러나 동독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권리의 제공 또한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동독 사회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권 개념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권리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인권이 유린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였다. 특히 동독 스포츠 선수들의 도핑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동독의 체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운동 선수들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가 경시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동독은 아시겠지만 스포츠 강국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국가는 아이들과 학생들을 잘 관찰하여 일찍부터 최고의 스포츠유망

⁶⁰ 동독 주민 G와의 인터뷰(2009. 6. 30) 이 면접 자료는 다음의 논문에서 재인용하였음. 안지호, “동·서독 관료성향에 관한연구: 현상학적 사회학과 해석학을 중심으로.”

주들을 선발하였습니다. 스포츠 유망주들을 세계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기 위해 어린 학생들은 특수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동독의 이러한 체육정책은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대회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 동독 정권은 8, 10, 12학년의 어린 학생들에게 약물을 강제로 투입하였습니다.⁶¹

동독에서 이러한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학교와 대중단체에서 행해지는 모든 체육 관련 행사에서 사적인 것을 억압하고 당과 집단에 모든 것을 맞추는 일종의 병영국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체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군대교육의 형태를 띠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체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오토바이, 자동차, 사격을 배웠습니다. 독일자유청년단(FDJ)과 같은 청년조직에서 단원들은 낙하산 타기와 같은 스포츠를 배웠는데 이는 바로 군사 교육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체육 활동은 군사교육을 가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사회체육이 당과 독일자유청년단에 의해 적극적으로 장려되었습니다. 결국 동독의 생활체육에서 개인적인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⁶²

개인의 권리는 전체를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는 사회주의의 인권 개념은 인권 개념을 넘어 사람들의 미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다음 탈북자의 진술은 사회주의 국가의 통일적 미에 대한 생각을 잘 보여준다.⁶³

61. 동독 주민 F와의 인터뷰(2013. 9. 14).

62. 동독 주민 F와의 인터뷰(2013. 9. 14).

63. 동독의 실제적인 인권현황을 면밀하게 재구성하고 분석하기 위해 더 많은 면접과 문헌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 국가(예를 들어 북한)의 인권현황을 비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도 시험적으로 3명의 북한이탈주민들

우리 기동대 활동할 때, 학생 선전대 활동 할 때 있잖아요. 그니까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게 학생 청소년들의 외모를 바로 할 때 대하여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전대 자체가 학생들이 같은 치마 길이, 같은 머리단장. 이렇게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북한에서 그거 통일해야 되요. 모든 게 그렇게 되 있잖아요. 그니까 진짜 실제로 학생이 분장도 제가 다 똑같이 하나같이 시켰거든요. 그리고 손동작 발 하나 그대로 근데 그렇게 해서 학생들 내세우면 그거 반응이 확실히 좋았습니다.⁶⁴

● 그림 III-6 라이프치히 대학 창립 550주년 기념 학생공연



출처: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Geschichte und Strukturen der DDR*.

과 면담을 하였고 부분적으로 이들과의 면담자료를 활용하였다.

⁶⁴ 북한이탈주민 C와의 인터뷰(2013. 9. 10), 통일에 관한 문화적 접근은 이러한 남북한 사람들 간의 인권, 미적 감각, 시간관, 공간관 등을 포함하는 성향(아비투스; Habitus, Hexis)의 차이에 주목한다. 이러한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안지호, “동·서독 비교행정 연구 서설: 부르디외의 아비투스과 장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2) (한국행정학회, 2011).

● 그림 III-7 어린이 회전목마(Kinderkarussell)



출처: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Geschichte und Strukturen der DDR*.

경제생활이나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동독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인권침해 현상은 할당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인권침해가 있다. 아래 면담자의 진술에서 계획경제는 동독 주민들에게 일상적인 인권침해를 구조화 한다.

저는 동독에서 있었을 때 오염된 약으로 예방접종을 하여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예방접종 담당 교수는 자신에게 할당된 계획을 달성해야만 했습니다. 동독의 계획경제 하에서 그 교수는 특정 기간까지 정부당국에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위원회(Planungskommission)로부터 질책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방약 제조를 담당했던 교수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된 약으로 여성들에게 백신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한 여성들 중 일부는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는 등 지금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동독 정권은 이러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⁶⁵

⁶⁵- 동독 주민 F와의 인터뷰(2013. 9. 14).

IV. 서독의 인권 법제



1. 서독의 인권 법제

인권보장은 서독 기본법에 명시된 평화, 자유(인권) 및 통일 등 3대 명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서독 정부의 독일정책에서 항상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가 되어 왔다. 이러한 3대 명제 중 어떠한 가치가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동·서독 관계의 변천과 역대 정권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존재하였으나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이 커진 경우에도 인권(자유) 문제가 그 중요성을 상실하지는 않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대동독 인권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던 서독의 법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 동독 주민의 법적 지위

서독은 전체 독일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독일국적 단일성 보존 명령에 근거한 동독 주민 보호 의무로부터 동독 지역에 있는 동독 주민과 서독 지역에 있는 동독 국적 주민도 최대한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서독은 기본법 제1조⁶⁶부터 인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권보호의 인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독 주민의 법적지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서독 기본법 제116조⁶⁷와 제16조,⁶⁸ 국적법(StAG)⁶⁹은 서독 국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

66. 기본법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의무다. ② 독일 국민은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세계의 모든 공동사회의 기초로서 그리고 평화와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67. 기본법 제116조: 이 기본법에서 말하는 독일인이란 다른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독일 국적(die Deutsche Staatsangehörigkeit)보유자, 「1937년 12월 31일 현재 상태의 독일제국 지역」에서 독일혈통의 망명자 또는 피추방자, 그 배우자와 비속으로서 받아들여진 자이다.

68. 기본법 제16조 제1항: 독일인의 국적은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적의 상실은 법률에

로서 독일 제국이 법적으로 존속한다는 명제 하에 독일인(Deutscher)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들 기본법 제16조, 제116조와 국적법 규정은 “독일 국적”이 동시에 서독의 국적이라는 점에서 출발하며 기본법적 의미에서 독일 국적자는 서독국민 뿐만 아니라 동독 주민도 서독 국적자에 해당하는 것이다.⁷⁰ 이러한 의미에서 동독 주민도 독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 서독 국적자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기본법 제23조에 따를 때 동독 주민은 서독의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동독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서독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는 못하며, 동독 주민은 서독의 기본법 보호영역 내에서 동법 제16조와 제116조 제1항의 의미에서 독일인이 되며 이 경우 동독 주민의 서독 정부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solange er nicht darauf verzichtet)가 존재해야 한다.⁷¹ 이러한 동독 주민의 보호의사 여부에 따라 서독의 보호영역 내에 있는 동독 주민과 그렇지 않는 주민으로 대별되어지며, 여기에서 서독의 보호영역은 서독의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서독 지역과 해외공관이 해당된다.⁷²

근거하여서만 행해지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무국적이 되지 않는 때에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

69. 독일국적법 제1조: 이 법의 의미에서 독일인이란 독일국적 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 국적은 1. 출생, 2. 제5조에 따른 신고, 3. 입양, 4. 추방자와 난민의 업무에 관한 법률, 4의2. 기본법 제116조 제1항이 의미하는 독일국적이 없을 시 독일국적으로서의 전환, 5. 외국인의 귀화에 의하여 취득한다.

70- BVerfGE 36, 1.

71. BVerfGE 36, 1;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불법청산 개관』 (주 36), pp. 101-111. 서독은 전채로서 독일제국과 ‘부분적으로만 동일’할 뿐, 독일국의 전채국민과 영토에 관한 한 전체 독일제국을 포함하지 못하며 서독은 독일제국과 배타적 동일성을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독 주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무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서독은 전체 독일에 대하여 기본법 제116조에 따라 독일국적 단일성 보존 명령에 근거한 동독 주민의 보호의무로부터 동독 지역에 있는 동독 주민과 서독 지역에 있는 동독 국적 주민도 최대한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이는 서독은 독일인인 동독 주민에 대하여 최대한 그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나. 형사법상 동독 주민의 보호

서독의 형사법은 원칙적으로 지역관할권 내지 영토고권원칙⁷³에 따라 동독 주민에 대한 법적 보호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⁷⁴ 그러나 서독은 동독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 모든 독일인에 대한 보호요청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는 점과 단일한 독일국적으로부터 보호의무(Schutzpflicht)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및 형법상 국민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서독의 형사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⁷⁵

특히 형사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 서독의 실무와 판례는 기본조약의 체결 전후를 기준으로 지역간 형법이론 및 국제형법 유추 적용설로 양분되어졌는데, 전자에 따를 경우 범죄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은 관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동·서독 법원이 각자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동·서독 주민에 대해서는 동·서독 법원이 각자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며,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넘어오는 경우에도 서독 법

72. BVerfGE 36, 1. 이와 관련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인, 즉 서독 국민으로서의 권리행사의 요건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동독 주민이 서독의 보호영역 내에 들어와야 하고, 둘째, 당사자가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73. 형법 제3조: 독일형법은 국내(Inland)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74.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불법청산 개관』(주 36), p. 56. 서독은 내독 간 형사사법 및 기관공조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innerdeutsche Rechts- und Amtshilfe in Strafsachen: RHG)에 의하여 정치적 이유에 기한 동독법원의 불법한 형사판결에 대하여 집행불허확인결정(Feststellung der Unzulässigkeit der Vollstreckung)을 하였고, 또는 구금자지원법(Häftlingshilfegesetz: HHG)에 의하여 정치적 이유로 인한 불법한 구금에 대하여 보상을 하였다.

75. 독일 형법(StGB) 제7조 제2항은 “국외에서 범죄를 행한 후 독일인이 된 자”의 범행이 행위지에서 처벌되는 경우에는 서독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속인주의 규정의 하나로 정하고 있어, 동독 지역에서 동독 주민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서독에 와서 서독 국적을 취득한 자도 처벌할 수 있었다. 또한 독일 형법은 국민보호주의 규정으로서 제5조 제6호의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독일인에 대한 정치적 약취, 유인 및 정치적 무고죄” 규정과 제7조 제1항의 “국외에서 행해진 독일인에 대한 범죄로서 행위지에서 형사 처벌되는 범죄”를 정하고 있다.

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적용 법률은 동독법률이 된다. 이에 반하여 국제형법 유추 적용설에 따르면 동독 주민은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되며, 영토고권의 일반원칙에 따라 서독은 동독에 거주하는 동독 주민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동독 주민이 서독인이 된 경우에는 형법상 속인주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고, 서독의 국가법의 또는 국민에 대한 법익침해의 경우에는 형법상 보호주의의 원칙에 의해 동독 주민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⁷⁶

다. 동·서독 왕래와 이주의 자유 보장

서독은 동·서독 주민의 인적 교류에 대하여 기본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의 측면에서 보아 원칙적으로 어떠한 제한규정도 두지 않았다. 즉 동독 주민도 기본법 제116조 제1항의 의미에서 독일인에 해당하며, 따라서 서독 기본법 제11조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었다.⁷⁷ 연방헌법재판소도 서독지역으로 이주하는 동독 주민에 대하여 기본법 제11조에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⁷⁸

동독 주민은 외국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

76. 독일 형법(StGB) 제7조 제2항은 “국외에서 범죄를 행한 후 독일인이 된 자”의 범행이 행위지에서 처벌되는 경우에는 서독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속인주의 규정의 하나로 정하고 있어, 동독 지역에서 동독 주민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서독에 와서 서독 국적을 취득한 자도 처벌할 수 있었다.

77. BVerfGE 2, 266; 기본법 제11조 제1항: 모든 독일인은 전 연방영역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린다. 제2항: 이 권리는 충분한 생활근거가 없고 이로 말미암아 일반에게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나, 연방 또는 어떤 지방의 존립이나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병의 위험이나 자연재해 또는 특별히 중대한 사고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년을 방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서만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제한될 수 있다.

78. BVerfGE 2, 266.

없이 동독 여권만으로 서독을 왕래할 수 있었고 비자 없이 서독에서 거주할 수도 있었다. 아울러 언제든지 동독 주민이라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서독의 실질적인 국적을 확보하였으며, 서독 주민과 마찬가지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고 일정기간(3개월) 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계속 거주하고 있는 18세에 이른 자는 선거권도 행사할 수 있었다.⁷⁹ 이에 반하여 서독 국민의 동독 입국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었는데, 동·서독간 인적교류의 정도는 전적으로 동독 정부의 허가정도의 여하에 달려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었다.

라. 긴급수용법(Notaufnahmegesetz)

긴급수용법⁸⁰은 1950년 8월 22일 제정되어 1990년 7월 1일 “서독과 동독 사이의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국가조약(Staatsvertrag)”의 발효와 함께 폐지되었다. 동법 제1조 제2항은 ‘직계 준비속간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피난, 서독에서 주택과 직장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피난, 특별한 정치적 이유로 긴급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시도한 피난, 피난 수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자가 심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피난’의 경우에만 영구체류허가(ständige Aufenthaltserlaubnis)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체류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복지주택 우선 입주권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였다.⁸¹

⁷⁹- BVerfGE 36, 139;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 제12조 제1항: 선거권은 기본법 제116조 제1항의 의미의 모든 독일인으로서, 1. 만 18세에 이르고, 2. 서독에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상거소를 가지고 있고, 3. 제13조에 따라 선거권 박탈되지 아니한 자에게 있다.

⁸⁰- Gesetz über die Not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독일인의 긴급수용에 관한 법률).

동 법률은 1950년 당시 양독간의 정치적 문제를 고려하여 지나친 피난민의 유입을 적절히 통제하고 전후 복구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하여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유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배경이었다. 그러나 동 법률이 동독 주민을 포함한 독일인에 대한 거주 이전의 자유(특히 기본법 제11조)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1953년 5월 7일 동 법률을 헌법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⁸²하였다.

이렇듯 전후의 특수상황 속에서 피난민에 대한 적절한 유입통제수단으로 사용되어졌던 긴급수용법은 이후 1961년 동·서독간의 국경봉쇄와 서독경제의 회복 등에 따라 그 수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따라서 동 법률상 수용절차는 더 이상 일정한 선별절차가 아닌 단순 기록절차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러한 추이를 반영하여 1961년 6월 29일 개정된 긴급수용법은 더 이상 수용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거부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여 그 입법취지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마. 민간단체의 탈주 지원과 사법적 판단

1971년 12월 17일 통과협정(Transitabkommen) 및 1972년 5월 26일

⁸¹ 주독대사관,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주독대사관, 1993), p. 305;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 불법청산 개관』 (주 36), pp. 144-147. 수용절차는 사전조사와 수용위원회의 결정절차로 이루어졌다. 사전조사에서 헌법 보호 및 동독의 사회정치적, 군사적 정보 획득을 위한 조사를 하였고 수용위원회에서 체류허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수용위원회는 연방실향민성(Bundesministerium für Vertriebene) 장관에 의해 임명되었고 연방상원에 의해 위원의 절반이 추천되었으며 이들은 국가기관이 아닌 정당의 대표자, 종교사회단체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는 1980년 폐지되었다.

⁸²- BVerfGE 2, p. 266.

통행협정(Verkehrsvertrag)의 체결을 통하여 동독 체제의 이탈주민이 급속하게 증대되었는데, 여기에는 순수한 인도적 지원단체에서부터 상업적 탈주 지원단체까지 상당부분 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업적 탈주 지원은 상당기간 동·서독간의 긴장관계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동독은 서독 정부에 대하여 탈주지원단체의 활동을 제지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였다.⁸³

이러한 “사법적 탈주지원계약(ein privatrechtlicher Fluchthilfevertrag)”에 대하여 1977년 9월 29일 독일연방최고법원(BGH)은 중요한 판결⁸⁴을 하였다. 본 판결에서의 주된 쟁점은 탈주지원계약이 서독 민법 제134조 및 제138조에 반하여 무효인지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하여 연방최고법원은 동독은 서독과의 관계에서 외국이 아니지만 서독과 동독의 법질서의 상당한 괴리를 고려하면 동독 법률은 민법 제134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국내법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탈주지원계약이 선량한 풍속(gute Sitte)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38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연방최고법원은 서독으로의 이주는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독일인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모든 독일인은 기본법 제116조에 따른 거주이전의 자유를 향유하며 이는 1972년 12월 21일 체결된 기본조약에 의해서도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⁸⁵

⁸³-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 불법청산 개관』 (주 36), pp. 148-152.

⁸⁴- BGHZ 69, 295; 69, 303; NJW 1977, 2358.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탈주자가 탈주 지원자에게 5,000DM 내지 45,000DM를 지불하기로 계약하였는데, 2건은 탈주에 성공한 탈주자가 잔금 지불을 거절하여 지원자가 탈주자에게 그 잔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고, 1건은 탈주 실패 후 탈주 시도자가 지원자에게 이미 지불한 선금 9,000DM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⁸⁵-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 불법청산 개관』 (주 36), pp. 148-152 참조.

이러한 동독 주민에 대한 서독 민간탈주 지원단체의 활동에 대한 서독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하여 동독은 통관협정상 “의심가는 대상과 인물에 대한 검색과 검문”을 강화함으로써 체제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동독 정부의 일련의 반발성 조치에 대하여 서독 정부는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비록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독일인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누리지만 선의의 피해가 증대되는 상황 하에서 일종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 1978년 2월 서독 정부는 상업적 탈주 지원에 관한 공동대책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탈주지원을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었지만 통관규정, 탈세방지, 형법 등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탈주지원업체의 영업행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바. 동·서독 기본조약

1972년 12월 21일에 동베를린에서 정식 서명된 동·서독간 기본조약은 전문에서 「국가지위 및 민족문제를 포함한 양독의 기본문제에 대한 서독과 동독의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현실의 바탕 위에서 양독 국민의 복지를 위해 서독과 동독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합의하였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조약 제2조⁸⁶는 유엔현장의 목적과 원칙 위에 ‘인권보호 및 무차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약 제7조⁸⁷는 실질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⁸⁶ 동·서독 기본조약 제2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유엔현장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 특히 모든 국가의 주권평등, 독립, 자주성 및 영토보전의 존중, 자결권, 인권보호 및 무차별에 관한 목적과 원칙에 따른다.’

‘상호이익에 기초한 경제·과학·기술·교통·우편·문화·스포츠·환경보호 및 그 밖의 제 분야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⁸⁸

동·서독 기본조약은 무엇보다 유엔헌장에 기초한 일반적 인권보호 규정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기초한 실질적 내지 인도적 해결방법으로 가족재회, 상호방문 왕래, 관광여행, 우편 및 통신분야에 관한 추가적인 후속 의정서의 채택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비록 이듬해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로 동독의 국가성 인정 및 기본법상 재통일명령의 위반을 둘러싼 위헌논란이 촉발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분단의 현실을 직시하고 독일 민족 내에 두 국가가 존립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 두 국가의 긴장완화에 의하여 먼 장래에는 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 점에서 또한 실질적으로도 양독의 관계정상화를 가져왔고 동서교류를 증진시켜 동질성 회복의 초석이 되어 차후 통일의 밑거름이 된 것을 고려할 때, 그 당시 서독 정부가 취할 수 있었던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고 기능주의적인 접근방법이라 평가된다.

2. 국제적 인권 법제

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⁸⁷ 동·서독 기본조약 제7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이고 인도적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한다. 쌍방은 본 조약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이익을 위하여 경제, 학술, 기술, 교통, 사법, 우편, 전신업무, 보건, 문화, 스포츠,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 협력을 발전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세부사항은 추가의정서에서 규정한다.’

⁸⁸ 동·서독 기본조약체결에 관한 상서는 김철수,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 불법청산 개관』 pp. 99-105. 동 기본조약은 종래 서독이 부인해 왔던 동독의 법적존재를 인정하고 국제법적인 승인은 아니나 국내법적인 「한 민족의 두 국가」를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1970년부터 인권의 국제화가 쟁점이 됨에 따라 UN 결성 이후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되게 되었다.⁸⁹ 특히 유럽은 두 번의 큰 전쟁을 경험 하면서 전체주의 체제하에서 나타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경시, 대량학살, 강제노동, 국외추방 등의 비인간적인 만행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은 세계인권선언, 유럽인권협약, UN 헌장 등과 같은 국제조약의 형태로 나타났다.⁹⁰ 세계인권선언은 청원 분야, 국제협약분야, 각국의 헌법, 입법부 및 사법부 분야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었는데, 특히 유럽 국가 중 독일연방기본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인권협약에 대응하여 동독 정권은 체제이념의 차이를 내세워 인권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방어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제인권협약에서 허용된 유보조건들을 내세웠으며 내정불간섭 원칙을 주장하며 서독의 인권침해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고자 하였다.⁹¹ 특히 서독에서의 노동자의 권리 및 소득의 불평등 분배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무마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동독 정권의 반응에 대하여 서독은 동독 정권이 이미 1973년에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였고,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창설을 의미하는 헬싱키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의정서에 규정된 인권 등 기본적 자유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⁹² 동독은 서방 세력이 강조하는 시민적 기본권을 배제할 수 없었으며 이

89-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3), p. 766.

90- 최태현/박미경,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국제인권규정의 국내적 적용과 보장,” 『법학논총』, 제24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p. 5.

91- 김학성,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p. 81.

92- 최진우, “독일의 통일외교정책과 한반도에의 시사점” (통일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0), p. 9.

러한 상황 속에서 서독 정부는 인권에 대한 단순한 개념 차이에 대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동독 정권에 대한 인권개선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엔의 국제인권협약과 같은 국제적 제 규범을 통하여 동독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였다.⁹³

나. 헬싱키 최종의정서(Helsinki Final Act, 1975)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물론 미국과 캐나다가 서명한 헬싱키 최종의정서는 1975년 8월 1일 35개국 정상회담에서 공식 승인되었다.⁹⁴ 헬싱키 최종의정서는 비록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참가국들에게 정치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합의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⁹⁵

헬싱키 최종의정서의 목적과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모두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인권관련 부분은 바스켓(Baskets)Ⅲ ‘인권 및 기타 분야의 협력(Cooperation in Humanitarian and Other Fields)’이라는 제목 하에 이산가족의 재상봉, 정보의 유포와 접근, 문화협력 등을 다루었다. 헬싱키의정서에 인권존중의 원칙을 포함시킨 것은 국가안보와 동·서간의 긴장완화가 국가의 인권존중에 기초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서유럽의 성공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헬싱키의정서는 참여국이 사상,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규정하면서 이런 권리가 고유한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다고 함으로써 인권이 국가에 의해 비로소 보장되는 단순한 실정법상의 권리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⁹⁶

93. 김학성,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p. 82.

94. 한용섭,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이론, 선례, 정책 대안,” 『국가전략』, 제8권 4호 (세종연구소, 2002), p. 55.

95. 박경서/서보혁, 『헬싱키 프로세스와 동북아 안보협력』 (한국학술정보, 2012), p. 21.

헬싱키의정서에 따른 인권존중, 이동 및 언론의 자유에 기초하여 각국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개별국가의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감시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동·합의서의 서명국들은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선언이나 협정에 서명할 의무까지 부여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1966년 12월 10일 유엔에서 채택된 시민·정치적 제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⁹⁷에 가입이 촉구되었다. 동독은 1973년 11월 2일 이 규약에 비준하였으며 헬싱키 최종합의서에 서명한 1976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동·서독간의 정치적 타협에 따른 독일 내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받는 대가로 독일민족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이산가족 재회, 여행 및 왕래의 자유, 인권존중, 언론 및 집회의 자유, 언론인들의 자유로운 취재와 무력에 의하지 않는 국경선의 평화적 변경승인 등의 조항을 헬싱키협정에 삽입시킴으로써 동·서독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증대를 가능케 하였다.⁹⁸ 이를 계기로 동·서독의 국경이 1989년 10월에 붕괴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이동의 자유를 선언한 헬싱키정신에 기초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⁹⁹

96. 외교통상부, 『OSCE 개황』 (외교통상부, 2010), pp. 23-24.

97. 법무부, 『국제인권조약자료집』 (법무부, 1994), pp. 65-116.

98. 주독대사관,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pp. 222-232.

99. 통일원, 『독일통합연구자료집』 (통일원, 1990), p. 11; 김성운, “독일연방공화국의 대 독일민주공화국의 인권정책사태에 관한 연구,” 『정책과학연구』, 제6권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1994), pp. 38-39. 이러한 측면에서 서방국가와 중립국가들의 요구로 헬싱키 최종문서에 인권조항을 삽입한데 성공한 것은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이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1 헬싱키협정 내용

구분	의제	내용
제1부	서명국간의 10개 원칙선언	① 주권의 평등 ② 폭력사용 및 위협 배제 ③ 국경 불가침 ④ 국가영토의 보전 ⑤ 분쟁의 평화적 해결 ⑥ 내정불간섭 ⑦ 사상·종교·양심·확신의 자유를 포괄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외의 보장 ⑧ 민족의 동등한 자결권 보장 ⑨ 국가간 상호협 력 ⑩ 국제법적 의무의 성실한 이행
	안보문제	① 군사적 신뢰구축, 안보, 군축 ② 대규모 군사훈련의 사전 통보 ③ 군축과 관련한 제반문제
제2부	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① 무역증진 ② 경제협력 공동프로젝트 추진 ③ 과학 기술협 력 ④ 환경문제 공동해결 ⑤ 교통·관광분야 협력, 이주자들 의 경제사회문제 해결 공동노력, 전문기술인력 직업교육 등
제3부	인적 접촉분야	① 가족재결합 및 상봉 추진 ② 국적이 다른 국민들간의 결혼제한조건 제거 ③ 개인적·직업상의 이유로 인한 여행 적극 추진 ④ 관광여행의 조건 개선 ⑤ 청소년들간의 접촉 증대 ⑥ 체육분야 교류 증대
	정보교류분야	① 정보의 교환, 접근, 전파의 개선 ② 정보교류 분야 협력사 업 추진 ③ 언론인의 활동조건 개선
	문화분야	① 문화분야 교류협력 증대
제3부	교육분야	① 학문교류 장려 ② 외국어·문화 소개 증진 ③ 교습방법 교화
	후속조치	동 최종합의서 이행을 위한 각국별, 양자간 및 다자간 노력 경주 합의

출처: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40.

헬싱키협정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후속
재검토회의와 전문가회의 등이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벨
그라드회의¹⁰⁰(1977.10~1978.3), 마드리드회의¹⁰¹(1980.11~1983.9), 빈

¹⁰⁰ 서방은 소련과 동구 내에서 최종의정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벨그라드회의에 임하였다. 반면 소련과 동구는 최종의정서 이행상황
을 검토할 경우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방의

회의¹⁰²(1986.11~1989.1) 등 3회에 걸친 공식회의와 이들 회의 중간에 재검토회의와 전문가모임이 개최됨으로써 결과 도출을 위한 과정이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파리정상회담을 통해 신유럽을 위한 파리현장 채택을 가능하게 하였다. 결국 헬싱키 프로세스에는 후속회의를 통해 최종의정서의 법적 구속력을 보완하는 한편 최종의정서의 구체적인 실천력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¹⁰³

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서독 연방법무부는 연방정부 차원의 인권문제 위임관을 두어 유럽

인권기록 검토에 반대 입장을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미국 대표를 중심으로 소련과 동구에서의 인권유린 문제가 집중 제기되었다. 벨그라드 회의는 비록 최종문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종결되었지만 최종의정서의 이행이 데탕트의 진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김수암, “헬싱키 최종의정서 이행과정 연구: 인권과 바스켓 3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p. 222.

¹⁰¹. 마드리드 회의에서도 서방에 의해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가 지속되었다. 벨그라드 회의와 비교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바스켓 3의 이행상황은 점검되었고 최종문서를 채택하려는 노력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1981년 12월 13일 폴란드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최종문서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전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인적 접촉 분야에서 이산가족, 결혼 지원에 대한 우호적 처리, 6개월 내 처리기한 명시, 이산가족 신청이 취업, 주거 등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 등의 6가지 구체적 공약이 채택되었다. 이외에도 종교 자유, 정보 분야에서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추가될 수 있었다. 위의 글, p. 224, p. 227.

¹⁰². 1986년 11월 4일부터 1월 19일 까지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개최된 3차 후속회의는 이전 회의와 비교할 때, 소련의 전략적 변화가 바스켓 3 논의 및 최종문서 도출에 영향을 미친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종문서에는 헬싱키 모니터링 요원의 권리 존중, 외국 라디오 방송의 정상적 수신 허용, 개인 우편과 전보 서비스의 존중, 가족 재결합과 긴급 여행을 위한 지원 시간제한 철폐, 종교권리 확대, 국제 테러리즘 예방과 중지, 인권 관심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 창설 등의 가장 포괄적인 인권공약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의 전향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빈회의에서도 여전히 인권분야에서 최종의정서 이행기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위의 글, p. 228, pp. 231-232.

¹⁰³. 위의 글, p. 218.

인권법정 및 유엔자유권위원회에서 연방정부를 대표해 인권문제의 전반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서방국가 및 유엔 차원에서 체결된 국제적 규약에 기초한 동유럽의 인권문제에 대한 감시와 제소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¹⁰⁴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서명국들은 동 규약 제40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특정한 국가에 대해서는 동 규약 제41조에 따라 개별 서명국들이 국가별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인권문제 위임관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국가별 소원제기는 서명 국가별 승복선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동독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본질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자유권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추가의 정서를 통해 인권침해 시 개인별 소원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명국들은 개별 국민에게 소원을 제기하게 하고 이를 자유권위원회가 심사·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별 소원제 또한 동독이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서 동독의 인권상황 개선에 별다른 실효성을 갖지는 못하였다.¹⁰⁵

라. 국제적 인권단체

세계인권선언상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대한 가치는 1960년

¹⁰⁴ Auswärtiges Amt, 8.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ihre Menschenrechtspolitik in den auswärtigen Beziehungen und in anderen Politikbereichen, 2008, p. 17.

¹⁰⁵ 이동기, “동독에 대한 서독 정부의 인권정책 -서독 연방 법무부의 인권활동을 중심으로” p. 18.

대 후반부터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는데, 그 활동의 중심에는 국제적으로 조직된 다양한 인권단체가 있었다. 서독의 대표적 인권단체로는 ‘독일인권연맹’, ‘국제사면위원회 독일지부’, ‘인도주의 연합’ 등을 들 수 있다.¹⁰⁶

독일인권연맹은 패전 직후부터 점령지역의 곳곳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설립초기부터 정치이념을 초월한 보편적 인권문제를 다루었다.¹⁰⁷ 전후 독일인권연맹의 재건과정은 점령통치 및 이념적 논쟁 등으로 순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48년 서베를린에 지부가 만들어졌으며 이후 서독을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을 기반으로 인권활동을 전개하였다. 무엇보다 독일인권연맹은 나찌범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 분단 상황 속 동독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였다.¹⁰⁸

국제사면위원회와 인도주의 연합 또한 정치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인권단체였다.¹⁰⁹ 그러나 인도주의 연합은 냉전적 대결구도의 타파와 다원주의적 열린사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결과적으로 동독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반면 국제사면위원회는 동독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동독의 정치범과 이들에 대한 고문, 서독이주 신청자와 체제 탈출자 그리고 군복무거부자의 구금 및 억압과 같은

¹⁰⁶ 김학성,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p. 77; Lora Wildenthal, *The Origins of the West German Human Rights Movement, 1945-1961*(University of Connecticut DigitalCommons@UConn, 2004), p. 3. 특히 1961년에 설립된 ‘국제사면위원회’와 ‘인도주의 연합’은 각 국의 정치이념을 초월한 국제적 인권운동을 주도하였다.

¹⁰⁷ 김학성,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pp. 77-78.

¹⁰⁸ 위의 글, p. 74.

¹⁰⁹ *Parallel Report of The Alliance fo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Germany* (WSK-ALLIANZ), p. 54.

인권침해에 주목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접수된 동독 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안은 1989년 동독 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약 2,000여 건 정도로 추산되는데,¹¹⁰ 실질적으로 국제사면위원회가 이러한 사안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인권개선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독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상당수 사안들은 정치적으로 결부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간섭 및 판단은 기본적으로 국제사면위원회가 표명하였던 탈정치이데올로기의 활동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었으며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는 국제사면위원회의 자국활동(Work on own country: WOOC) 원칙에 기인한 것이었다.¹¹¹ 동 원칙에 따르면 각 정부는 자국의 인권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도록 되었는데, 국제사면위원회는 동독과 서독을 하나의 나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서독 정부는 동독 내 인권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국제적 인권단체는 동독 체제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황을 중대시 하였지만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찌 과오의 청산 등 서독의 인권개선 노력은 대동독 인권정책이 국제적 신뢰의 기반 위에 전개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형성하였으며 나아가 동독 정권에 대한 일정한 압력을 행사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¹¹⁰ 이동기, “동독에 대한 서독 정부의 인권정책 -서독 연방 법무부의 인권활동을 중심으로” p. 20.

¹¹¹ Amnesty International, *A Synthesis of the Learning from the Stop Violence Against Women Campaign 2004-10*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2010), p. 18.

V. 서독의 인권 법제에 대한 동독 정권의 대응



1. 사회주의통일당과 국가보위부의 대응

동독은 1973년 7월 3일 소련의 주도하에 유럽안보협력회의에 참여하였다.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는 1975년 8월 1일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이루어졌다. 동독 서기장 호네커는 여기서 많은 국가 정상과의 회담을 활용하였다. 이들 가운데에는 미국 대통령 포드(Gerald Ford), 핀란드 대통령 케코넨(Urho Kekkonen) 등이 있었다. 호네커는 외무부장관 피셔(Oskar Fischer)와 당 중앙위원회 국제담당 약센(Hermann Axen)을 대동하여 동독 외교정책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유럽안보협력회의는 동독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치·외교의 장이었다. 왜냐하면 동독은 서독과 마찬가지로 국제무대에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대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동독의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스켓 3(Korb III)에 들어 있었던 인권문제였다.¹¹²

동독 정부가 국가보위부를 중심으로 유럽안보협력회의에 대응방안을 찾고자 하였다.¹¹³ 헬싱키 유럽안보협력회의의 동독 대표단의 비서였

¹¹²- Andreas Fraude, "Die Außenpolitik der DDR," Erfurt: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Thüringen, pp. 37-38. 그러나 그 당시 동독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1996년 약센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동독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동지들과 같이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진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서독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평화와 안보로 전환하기 위해 인권문제를 활용하였다. 어쨌든 평화 역시 동독에 위협한 것이었다고 약센은 강조하였다. 바스켓 2가 동독 정권에게 많은 이점을 안겨준 반면 바스켓 3은 동독에서 저항그룹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가능케 하여 동독 정권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¹¹³- 동독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서방측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동독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그들의 인권현실을 옹호하였다. 첫째, 인권 개념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간의 이해가 서로 근본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서방국가들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둘째,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최종문서 6항에는 내정불간섭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방국가들의 인권문제 비난은 일종의 내정불간섭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셋째, 구동독 지도부는 동독에서는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최종문서가 요구하는 인권문제 해결이 모두 충족되

던 슈테글리히(Peter Steglich)에 따르면 국가보위부는 동독의 유럽안보회의 대응책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바스켓 3과 관련하여 동독에게 본질적인 문제점은 인권문제였다. 인권문제에 대한 최종결정은 정치국에서 이루어졌다. 국가보위부는 수시로 유럽안보협력회의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았고 동독 내부 안정을 위해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국가보위부는 서독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인권선동을 분쇄하기 위해 모든 유럽안보협력회의를 위한 기초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였다.

일반적으로 동독 정권의 유럽안보협력회의에 대한 대응책은 다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었다.

바르샤바조약기구 (Warschauer Pakt: WVO)

- 정치자문위원회
(Politisch Beratender Ausschuss; PBA, Erst Sekretär)
- 외무장관 회담
(Treffen der Außenminister der stellvertretenden Außenminister)

중앙당 차원 (ZK-Ebene)

- 국제 및 이념문제 위원회
(Beratungen der Sekretäre für internationale und ideologische Fra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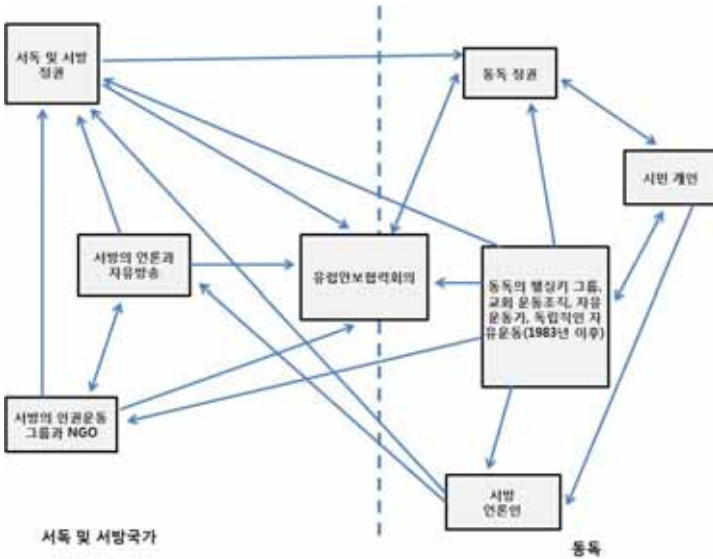
안보기관 차원 (Sicherheitsdienstebene)

- 국가보위기구의 간부회의
(Beratungen der Leiter der Abwehrdienste der Staatssicherheitsorgane der Staaten der sozialistischen Gemeinschaft)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권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주독대사관, 『동·서독간 인권문제 논란 (1)』 (1993), p. 1.

유럽안보협력회의와 관련하여 국가보위부의 역할은 아직까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비밀경찰과 더불어 국가보위부는 서방으로부터의 인권개선 압력에 맞서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유럽안보협력회의를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의 인인권선동에 동독의 대응을 이해하기 위해 국가보위부의 업무와 급격한 조직 팽창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서독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어떻게 동독 정권에게 인권개선을 요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그림은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압력으로부터 동독의 대응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 그림 V-1 유럽안보협력회의를 중심으로 한 동독과 서독의 관계



출처: Douglas Selvaie, "Das MfS und der KSZE-Prozess, 1977-1986," p. 8.

서독을 비롯한 서방국가는 유럽안보협력회의를 통해 동독 정권에 인권개선을 요구하였다. 헬싱키 최종의정서 서명 후에 서방의 인권그룹과 NGO들은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논의된 문제들 가운데 인권문

제를 중심으로 동독에 제기하였다. 이러한 그룹에는 미국의 유럽안보 협력위원회(U.S. Commission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인권협회(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e)가 속하였다. 두 번째 인권활동그룹은 인권문제 일반과 유럽안보협력회의를 이들의 활동형태로 요구하는 조직들이었다. 이러한 그룹에는 대표적으로 국제사면위원회(Ammesty International)가 있다. 세 번째 인권활동그룹은 동독의 인권 침해 문제에 집중한 조직들이었는데 여기에는 동독원조협회(Hilferufe von Drüben), 8월 13일 협회(Arbeitsgemeinschaft 13. August)가 있었다. 이들 조직들은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동독 정권과 유럽안보협력 회의에 보냈으며 동독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위를 조직하고 서방언론과의 협력을 통해 동독 정권과 서방국가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

헬싱키 최종의정서 서명 후에 동유럽에 다양한 자유주의 운동 조직(예를 들면 Charta 77, KSS-KOR, Moskauer Helsinki-Gruppe)들이 생겨났다. 이들 단체들은 헬싱키 최종의정서의 바스켓 3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였다. 또한 당시 동독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원칙 수행 요구를 주장하는 저항조직들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동독에서 발생한 자유운동은 1983년부터 동·서 진영의 군축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를 중심 의제로 논의하였다. 이들 자유운동은 동독 정권에 인권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들의 활동은 서독을 비롯한 서방언론에 자주 보도되었고 서방의 인권단체, NGO와 접촉하여 동독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하였다. 동독과 서독 그리고 서방의 자유운동 단체들간의 접촉은 동독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였고 동독 정권에게 헬싱키 최종의정서에 서명한 인권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자유주의 운동은 국가보위부에게 있어 정치-이데올로기 국가태업(Politisch-ideologische Diversion: PID), 정치적 지하조직활동

(Politische Untergrundtätigkeit: PUT) 그리고 테러(Terrorismus)로 인식되었다. 서방의 인권단체와 NGO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보위부는 제10국(정치-이데올로기 국가태업, 지하조직활동 담당), 제12국(테러 방어담당)을 강화하였다. 국가보위부 제10국 산하에 4과는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교회문제만을 전담하였다. 또한 동독내에서의 자유주의 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제10국은 제11국(국내정치 정보 수집 및 분석)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국가보위부는 인권과 관련한 단체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이들 단체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

동독의 개별적인 자유주의자(Einzelne ostdeutsche Dissidenten)

- 단지 개인적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권운동가들과 연대하여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 템플린(Wolfgang Templin)과 폭스(Jürgen Fuchs)가 대표적인 동독의 개인 인권운동가들이었다.

교회조직(Kirchliche Initiativen bzgl. der Menschenrechte)

독립적인 자유운동조직(Unabhängige Friedensbewegung)

동독의 헬싱키 그룹(Ostdeutsche Helsinki-Gruppen)

서방의 인권그룹과 NGO(Westliche Menschenrechtsgruppen und NGOs)

- 동독의 헬싱키 그룹, 평화인권연합, 국제 헬싱키연합, 인권사무그룹, Ammesty International, 8월 13일 협회가 대표적인 독립 자유운동단체였다.

서방의 언론(Westliche Journalisten)

- 특히 동독의 인권침해에 관심을 가진 언론인들이 국가보위부의 감시대상이었다. 대표적인 언론인으로 뢰벤탈(Gerhard Löwenthal)이 있었다.

동독의 국가보위부는 다른 동구권 국가의 보위기관들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서방의 인권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동독의 국가보위부와 동구권 국가의 보위기관들의 국제협력은 크게 다음의 3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 최고위간부의 정보와 경험교환
(allgemeiner Informations- und Erfahrungsaustausch auf Leitungsebene)
- ◎ 통일적인 업무협조를 위한 경험교환과 협력
(Erfahrungsaustausch und Zusammenarbeit auf Ebene der Dienstseinheiten)
- ◎ 개인적인 자유운동가와 인권단체를 분쇄하기 위한 일상적인 업무협력
(tägliche Zusammenarbeit auf der Arbeitsebene gegen einzelne Dissidenten und Gruppen)

최고위급 차원에서 정보와 경험 교환의 예는 동독의 국가보위부장 밀케(Erich Milke)와 다른 동구권 국가의 보위기관 장들과의 회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밀케는 이 자리에서 서방국가의 인권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동유럽 보위기관의 고위간부들과 의논하였다.

- 그림 V-2 동독의 국가보위부장 밀케(Erich Mielke)와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Komitee für Staatssicherheit: KGB) 의장 안드로포프(Juri. W. Andropow)와의 협력계약 조인식(1973)



출처: <http://www.bstu.bund.de/DE/Wissen/MfS-Dokumente/MfS-KGB/_inhalt.html>.

국가보위부 업무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해 동구권 국가들의 보위 기관 간부들과의 협력이 강화되었다. 당시 동독의 국가보위부와 동유럽 국가의 국가보위부 간부들은 협력하여 반체제 인사와 인권단체의 리스트를 공동으로 만들었다. 또한 동독의 국가보위부는 동유럽의 보위 기관과 공동으로 인권단체에 비공식 요원(Inoffizielle Mitarbeiter: IM)을 잠입시켜 인권단체를 파괴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예는 동독의 작가 빈스(Paul Wiens)를 비공식요원으로 활용하여 소련의 자유운동가 코펠레프(Lew Kopelew)와 접촉하였다. 동독의 국가보위부 역시 체코 슬로바키아의 내무부와 협력하여 비공식요원을 인권단체인 Charta 77에 침투시켰다. 또한 동독의 국가보위부는 동유럽의 국가보위기관과 공동으로 동독내에서 활동하였던 인권단체를 파괴하려고 하였다. 일상적인 협력은 이러한 수준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졌다.¹¹⁴

1970년대는 동독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승인¹¹⁵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국내정치에서는 위기 상황이었다. 체제비판자들과 해외여행 신청자들은 헬싱키 최종의정서의 바스켓 3에 의거해 국경을 넘어 여행과 접촉의 가능성을 증대하려고 시도하였다. 1976년 해외여행 신청자들은 약 20,000명에 이르렀다. 1977년 해외여행 신청자의 수가 3분의 1로 줄었지만 이는 동독 정권이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해외여행을

¹¹⁴- Douglas Selvage, "Das MfS und der KSZE-Prozess, 1977-1986: Der Kampf der DDR gegen die Menschenrechte in Zusammenarbeit mit und im Vergleich zu den anderen Warschauer Paktstaaten," <http://www.bstu.bund.de/DE/Wissen/Forschung/Forschungsprojekte/Downloads/selvage_forschungsprojekte.pdf?__blob=publicationFile>, (Zugriff am 30.11.2013).

¹¹⁵- 1972년도까지 동독은 소련과 동구국가를 제외한 유럽의 어느 한 국가로부터도 국제법적, 외교법적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사독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국가가 동독을 인정하게 되면 독일의 분단을 인정한다는 점과, 서구방위체제가 정치도덕적, 안보상의 대원칙인 서독의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바르샤바 기구에 대한 견제를 했기 때문이다.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p. 217.

허가한 결과였다. 따라서 해외여행 신청자 수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독 정권은 헬싱키 최종의정서를 인권문제에만 제한시키지 않고 의정서 전체문제로 간주하였으며 내정불간섭의 원칙(Prinzip der Nichteinmischung in die inneren Angelegenheiten anderer Staaten)을 주장하였다.¹¹⁶ 이는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1977년부터 시작된 벨그라드 유럽안보협력회의에서 주장하였던 것이었다. 해외여행 신청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주의통일당 지도부는 정치적·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해외여행 신청자들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고 범죄자로 만들었다. 해외여행 신청자들은 사회로부터 오랫동안 격리되었다. 이들은 지인, 직장동료로부터 소외되어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 결국 서독으로 추방되었다. 해외여행 신청자들의 범죄화(Kriminalisierung Ausreisewilliger)는 1977년 2월 16일 중앙당 비서국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중앙당 비서국의 결정은 서방 국가와 서베를린으로 이주하려는 동독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해외여행 신청자는 이 결정에 따라 법률위반, 형벌, 노동권 그리고 다른 사회적 권리를 박

¹¹⁶ 최종의정서의 실천과 관련해서는 동독 측은 바스켓 1의 원칙선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바스켓 2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바스켓 3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동독 측은 바스켓 1을 헬싱키 최종의정서의 핵심적 부분으로 간주했으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권과 기본권적 자유의 존중, 국가간 협력 등의 원칙보다는, 서독에 대해 독립국가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국경의 불가침과 국내문제 불가침 등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바스켓 2에 대해서는 동독 측은 다른 동구권 국가들과는 달리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왜냐하면 동독은 서독과 이미 내독경제 교류를 중단 직후부터 지속해왔고, 서독을 통해 EC의 준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바스켓 3에 대해서는 동독 체제의 정통성 흠결을 의식하여, 끊임없이 서독에 대한 이념투쟁을 강조하여 극히 수세적으로 대처하였다. 역사적인 공동체 형성 경험, 언어, 문화 등의 공통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동독 공산주의 체제의 정치·사회·경제적인 질서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공산당 지도부의 노력은 서독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과 주민들로부터 정통성을 획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늘 실패를 거듭해 왔는 바 이로 인해 바스켓 3의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동독지도부는 이데올로기적인 오염에 대해 극히 경계하였다.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p. 228-229.

탈당하게 되었다. 중앙당 비서국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1977년 4월 7일 인민회의의 결정으로 통과되었다.¹¹⁷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 동독 정권은 1970년대 초부터 국가보위부 조직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1971년부터 1982년 사이에 국가보위부의 직원 수는 45,000명에서 81,500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1977년에 68,000명이 국가보위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국가보위부에 대한 예산 역시 급격히 팽창하여 1977년 국가보위부의 예산은 전 해인 1976년에 비해 20,000,000 동독 마르크가 증액되었다. 또한 울브리히트에서 호네커로의 정권교체는 새로운 전략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보위부는 안보(Sicherheit), 권력강화(Machtsicherung), 억압(Unterdrückung)을 통합하는 일반업무(Generalunternehmen)를 수행하여 막강한 국가기구로 성장하였다. 헬싱키 최종의정서에 서명한 동독 정권과 국가보위부는 체제반대자들에게 무자비한 탄압을 이전과 같이 가시적으로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가보위부는 점점 은폐된 형태로 저항그룹들을 해체하는 이른바 업무와 사람을 동원한 와해 공작전술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국가보위부의 전략변경에 따라 국가보위부 산하의 평가조직과 정보조직이 혜택을 받아 조직적으로 팽창하였다. 1972년부터 1977년까지 본부조직에 근무하는 인원은 57명에서 90명으로 늘었다. 1977년 중앙정보그룹은 그 이전 5년에 비해 조직원이 40% 증가하였다. 또한 1970년대 중반 사회주의통일당 지도자들에게 모든 동독의 국내외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조직인 중앙 평가 및 정보 그룹(Zentrale Auswerungs- und Informationsgruppe: ZAIG)¹¹⁸이

¹¹⁷-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Geschichte und Strukturen der DDR* (München: Bayerische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sarbeit, 1999), pp. 235-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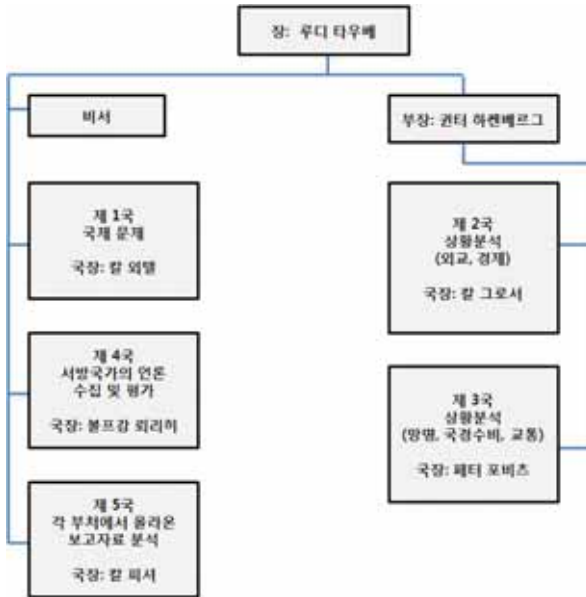
¹¹⁸- 1953년 6월 17일에 발생한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은 사회주의통일당에 있어 충격적

창설되었다. 중앙 평가 및 정보 그룹은 국가보위부의 기능조직으로 확대되었고 1974년에는 독립된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중앙 평가 및 정보 그룹은 타우베(Rudi Taube)를 장으로 27개의 과(Planstellen)가 있었다. 일반적인 안보정치 주제인 체제반대자들의 동향(oppositionellen Tendenzen)과 국경침범(Grenzverletzungen)뿐만 아니라 문화정치 업무(kulturpolitische Angelegenheiten), 경제와 교통문제(Probleme in der Wirtschaft und im Verkehrswesen) 등 모든 주제들이 중앙 평가 및 정보 그룹에 의해 다루어졌다. 이를 통해 국가보위부의 업무에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¹⁹ 다음 그림은 중앙 평가 및 정보 그룹의 내부를 표현한 것이다.

인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동독 정권은 서독과 서방국가들의 동독 붕괴정책(Putschversuch)에 맞서기 위해 국가보위부를 중심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6·17 민주화 운동은 동독내에서의 반정권운동이었다. 따라서 사회주의통일당 수뇌부는 당시 국가보위부 부장이었던 자이저(Wilhelm Zaisser)를 경질하고 새로운 국가보위부의 수장으로 볼베버(Ernst Wollweber)를 임명하는 한편 국내의 정치적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할 4개 과(Stellen)를 국가보위부에 신설하였다. 이 때 설치된 4개의 정보분석과가 중앙 평가 및 정보 그룹(Zentrale Auswertungs- und Informationsgruppe: ZAIG)의 전신이었다. 동독 정권이 붕괴한 1989년까지 중앙 평가 및 정보 그룹에 4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¹¹⁹- Henrik Bispinck, "Die DDR im Blick der Stasi 1977" (Göttignen: Verdenhoeck Ruprecht GmbH, 2012), pp. 13-14, pp.16-17.

● 그림 V-3 중앙 평가 및 정보 그룹의 내부 조직도



출처: Henrik Bispinck, *Die DDR im Blick der Stasi*, p. 18.

동독내에서의 자유, 인권운동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사회주의통일당은 정치국의 주도로 형법개정을 서둘렀다. 인민의회는 1979년 7월 반대 없이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형법 219조에 따라 외국에서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동독의 주민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에 따라 서독과 서방국가에 작품을 발표하였던 동독 출신 예술인들이 처벌받게 되었다. 국가보위부는 명령계획 1/77을 통해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감시 기술에는 비공식요원 침투(Einsatz Inoffizieller Mitarbeiter), 우편 검열(Postkontrolle), 전화도청(Telefonüberwachung, 은폐감시(verdeckte Observierung), 집안검색(konspirative Durchsuchung von Wohnungen) 등이 해당되었다. 또한 체제 비판의 가능성이 있는 지식인들에 대한

통계가 1970년대 중반부터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언론인이자 작가인 보르크우스키(Dieter Borkowski), 샤흐트(Ulrich Schacht) 그리고 파우스트(Siegmar Faust)가 1970년대 구속된 대표적인 지식인이다.¹²⁰

국가보위부의 특별한 감시대상은 서방의 언론인들이었다. 1973년 3월부터 서방국가 언론인들의 상주취재가 동독에서 허용되었다. 1970년대 서방언론은 동독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서방언론은 또한 사회주의통일당에 있어 금지와 폭력을 통해 통제할 수 없는 위협적인 대상이었다. 따라서 사회주의통일당과 국가보위부는 언론인들의 취재 허가권(Akkreditierung)을 중심으로 이들을 통제하였다. 당에게 온정적인 서방언론인을 적극 지원하였고 동독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인들에게는 많은 제재가 따랐다. 1975년 말 동독 정권은 국가보위부가 주도한 동독 이탈주민들 자녀의 강제입양(Zwangsadoptionen von Kindern geflüchterer Eltern)에 대한 기사를 실은 서독 슈피겔(SPIEGEL)지의 기자 메트케(Jörg Mettke)의 취재권을 박탈하였다. 1976년에는 서독 방송국 ARD의 기자 뢰비(Lothar Loewe)의 취재권을 박탈하였다. 뢰비는 당시 동독 주민들의 인식, 동독 정권의 비판적이었던 대표적인 지식인 하페만(Robert Havemann)과의 인터뷰를 방영하여 동독 정권의 비판적인 내용을 방송하였다. 1976년 12월 21일 뢰비가 동·서독 국경에 관한 방송내용을 보내자 뢰비는 더 이상 동독에서 취재할 수 없게 되었다.¹²¹

사회주의통일당은 개신교 교회협회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호네커, 당 중앙위원회-비서국 교회담당 페르너(Paul Verner), 국가비서국

¹²⁰-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Geschichte und Strukturen der DDR* (München: Bayerische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sarbeit, 1999), pp. 239-240.

¹²¹- *Ibid.*, pp. 236-237.

교회담당 비서 칼브(Hermann Kalb) 그리고 쇠헤어스(Albrecht Schöherrs)를 중심으로 한 교회 지도자와 회담을 1978년 3월 6일에 가졌다. 호네커는 여기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와 교회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호네커는 이전부터 교회가 요구해왔던 사안인 교회건립과 라디오 및 TV 방송국 설립(Ermöglichung kirchlicher Bauvorhaben sowie kirchlicher Sendungen in Rundfunk und Fernsehen)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쇠헤어스는 동독 정권의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동독 교회는 사회의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과 투명성(Transparenz)을 동독 정권에 요구하였다.

● 그림 V-4 동독의 당 수뇌부와 교회지도자의 정상회담 (1978. 3. 6)



출처: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Geschichte und Strukturen der DDR*.

2. 평가

서독의 인권 법제와 국제적 인권 법제가 동독에 끼친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는 동독 정권에 있어 국제사회로의 개방정책과 국내정치에서 차단정책(Außenpolitisch öfFnung und innenpolitisch Eindämmung)을 동시에 수행하여 서독의 인권정책에 대응하려 하였

다.¹²² 특히 국제사회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서독의 국제적 인권 법제에서 헬싱키의정서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브란트 정권이 기대한 헬싱키의정서의 기능은 크게 3가지였다. 첫째, 헬싱키의정서 체결이 동독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동·서독 주민들의 분단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었다. 둘째, 헬싱키의정서를 통해 동독과 서독 관계는 양자적 관계 뿐만 아니라 다자적 관계로 확대될 수 있었다. 셋째, 헬싱키의정서는 정치적인 긴장완화를 군사적인 안전보장과 결합하여 동·서독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안정화하려고 노력하였다.¹²³ 여기서 인권문제가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였다. 헬싱키 최종의정서를 계기로 동독에서 이주를 원하는 일반주민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동독 정권은 체제 유지에 부담이 덜한 내용을 중심으로 피동적으로 국제적 인권 법제에 대응하였다. 따라서 동독의 인권개선과 관련하여 유럽안보협력회의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 법제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헬싱키 최종의정서 서명 이전 이미 동·서독은 기본조약을 비롯한 인권과 관련된 많은 협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동독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서독 정부는 다자간 채널보다는 동독과의 양자 관계를 통해 정치범 석방,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¹²⁴ 다음의 동독 주민의 면담내용은 동독의 인권개선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국제 인권 법제보다는 서독 정부의 역할과 서독의 인권 법제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122-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Geschichte und Strukturen der DDR*, pp. 233.

123-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p. 227.

124- 통일원, 『독일통일 실태 자료집-정치·외교분야』 (1993), p. 366.

동독 관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이주민 수는 동독 측의 CSCE 최정의정서 서명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음.

저는 헬싱키의정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동독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헬싱키의정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동독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창구는 바로 서독 정부였습니다. 동베를린에 서독의 상설대표부(Ständige Vertretung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가 있었습니다. 많은 동독 주민들은 동베를린의 상설대표부를 방문하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상설대표부에 갔습니다. 당연히 제가 서독의 상설대표부에 간 것은 곧 국가보위부에 의해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도움은 동독의 법률에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법률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¹²⁵

서독의 인권 법제와 국제 인권 법제를 근간으로 한 서독의 대동독 인권 정책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독의 인권상황을 개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서독 정부와 국제사회가 동독 정권의 인권문제를 제기 하던 1970년 중반 이후 국가보위부의 인력과 예산이 급격히 팽창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동독 정권이 내부체제 단속을 위한 신봉쇄정책(neue Abgrenzungsstrategie)과 신감시정책(neue überwachungsstrategie)으로의 전환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신감시정책에 따라 국가보위부는 반체제지식인, 동독의 서방언론인, 교회, 동독의 일반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였다.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가보위부 요원이 있었는지 아세요? 포츠담은 동독의 한 도시입니다. 천명 정도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곳 포츠담에는 3,000명의 국가보위부 요원과 9,000명의 비공식 요원이 있었습니다.¹²⁶

¹²⁵ 동독 주민 A와의 인터뷰(2013. 8. 29).

¹²⁶ 동독 주민 G와의 인터뷰(2009. 6. 30) 이 면접 자료는 다음의 논문에서 재인용하였음. 안지호, “동·서독 관료성향에 관한연구: 현상학적 사회학과 해석학을 중심으로”

비밀 경찰은 모든 국가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독의 국가보위부는 주로 국내를 사찰했습니다.¹²⁷

상기 동독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보위부의 조직이 얼마나 크고, 체계적으로 주민들을 감시·통제하였는지 알 수 있다. 국가보위부가 과잉성장된 1970년대 이후 동독에서 인권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서독의 인권 법제와 국제 인권 법제는 동구권 체제를 점차 이완시켰으며 결국 브레즈네프 독트린(Breschnew-Doktrin)이 폐지되어 동독 정권이 붕괴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동·서독 주민들간의 인적접촉을 증대시켜 양독간의 적대감을 감소시켰으며 동독에 체제 저항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였다.¹²⁸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으로 인한 국가보위부의 과대성장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동독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970년대 이후 나타난 동독경제의 위기와 함께 동독 주민들의 체제 불만을 증대시켜 1980년대 동구권의 개혁과 자유화운동과 결합하여 동독 정권 붕괴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¹²⁷ 동독 주민 G와의 인터뷰(2009. 6. 30) 이 면접 자료는 다음의 논문에서 재인용하였음. 안지호, “동·서독 관료성향에 관한연구: 현상학적 사회학과 해석학을 중심으로”

¹²⁸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p. 215.

Ⅵ.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1.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시기

II장에서 독일정책과의 연관을 통한 대동독 인권정책의 시기 구분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대동독 인권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앞서 기술한 대동독 인권정책의 시기 구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역사학의 가장 힘든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의 분절에 대한 것이다. 이는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왜냐하면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시기 구분 문제는 당시 대동독 인권정책의 행위자들이 인식할 수 없었던 사후적(ex-post)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독일 분단의 역사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시기를 나눌 수 있는 결정적인 지점들이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동독과 서독이 건국한 1949년이다. 이 시기 소련점령 지구(Sowjetische Besatzungszone: SBZ)¹²⁹에서는 국유화(Enteignungen), 소련화(Sowjetisierung) 그리고 사회주의통일당(SED)의 독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결정적인 시점은 베를린 장벽이 건설된 1961년 8월 13일이다. 특히 베를린 장벽 건설의 결과는 동독의 체제비판자(Kritiker des Systems)들이 더 이상 동독을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이 중요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기 이전 수백만의 사람이 동독을 떠났지만 장벽이 건설된 이후부터 동독 주민들은 동독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장기적으로 베를린 장벽 건설은 동독에서 내부 갈등이 커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동독의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소련의 지원이 끝이 난 이후 동독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베를린 장벽 건설은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에서도

¹²⁹ 동독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동독 지역을 말함.

많은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베를린 장벽 건설로 인해 동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하였던 서독의 인권단체들은 더욱더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 건설은 반파시즘의 화신이라는 동독의 선전이 서독 주민들은 물론 동독 주민들에게서조차 회의를 불러일으키게 하였던 정치적 사건이었다.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 모든 독일정책은 자연스럽게 인권정책으로 귀결되었다. 베를린 장벽 건설 이전의 독일정책은 주로 지형학적 전략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베를린 장벽 건설을 통해 독일정책은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장벽은 제거되어야 한다(Die Mauer muss weg)’는 요구로 옮겨가게 되었다. 또한 베를린 장벽 건설은 동독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드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동독의 비인권적인 체제는 종식되어야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 케네디(John F. Kennedy)가 서베를린을 방문하여 서베를린의 연대와 자유의지를 강조하였고 20년 뒤 서베를린을 방문한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Ronald Reagan)이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행한 연설은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새로운 시기를 알리는 것이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서기장 이제 장벽을 해체합시다”라고 연설하였다. 이에 따라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세 번째 시기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Fall der Berliner Mauer) 1989년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하게 되었다. 마침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었다. 여기서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정점을 이루었다.

이러한 거시적 시기적 구분 이외에도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에서 의미 있는 시기 구분을 할 수 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의 발발은 서독에서 전쟁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했다. 서독의 외교정책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서독 주권을 신속하게 되찾으려고 하였으며 국내정치에서 한국전쟁은 동·서독간의 체제갈등을 더욱 증폭

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아테나워 정권 시절 공산주의 체제와의 대결에서 서독 정부는 동독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동독의 인권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진중하게 논의하였다. 동독과 서독의 체제 대결이 증대된 상황에서 동독은 국경시설의 설치와 이 시설물에 대한 증축, 그리고 ‘해충 명령(Aktion Ungeziefer)’이란 이름으로 시행된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국경 지방에서 내륙으로 강제로 추방하는 일이 1952년에 발생하였다.¹³⁰

당시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1953년 6월 17일 동독 주민들의 민주화 항쟁(Aufstand vom 17. Juni 1953)이었다. 이는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에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동독에서 발생한 이 민주화 항쟁은 다양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첫째, 동독의 주민들은 동독의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둘째, 동독 정권 단독으로 이 항쟁을 진압할 수 없었고 결국 진압을 위해 소련의 탱크가 동원되어야만 하였다. 셋째, 민주화 항쟁을 계기로 동독 주민들의 인권문제가 분명하게 서독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다. 1953년 6월 17일에 발생한 민주화 항쟁은 정치적 차원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조건(더 정확하게 말하면 임금동결)에 반대해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데모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들의 데모는 짧은 시간 안에 동독 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운동과 독일 통일을 바라는 시민들의 운동(Demonstration gegen das SED-Regime und für die Wiedervereinigung)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아테나워 정부는 이 민주화 항쟁을 기리기 위해서 이 날

¹³⁰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Weißbuch: Die Sperrmaßnahmen der DDR vom Mai 1952: Die Sperrmaßnahmen der Sowjetzonenregierung an der Zonengrenze und um Westberlin* (Bonn: 1953).

을 국경일로 제정하는 것을 통해 화답하였다. 국가사회주의 지배와 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동독과 서독의 민족전통의 단절을 고려하면 당시 아테나워 정부가 동독의 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해 이 날을 국경일로 지정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동독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개선을 위한 투쟁 운동이 서독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한편 이를 통해 동·서독의 민주적 전통을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 서독에서는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동방정책의 시작은 서독의 인권정책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의미하였다. 우선 동독은 안티테제로서가 아닌 합법적인 파트너로서 인식되었다. 이에 동방정책을 근간으로 독일정책을 수행한 브란트 정권은 동독의 체제 비판에 대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동독의 국내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동독을 자극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브란트 정권은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신중하였다. 이는 당시 정권을 잡았던 많은 사민당 정치가들과 특히 젊은 세대 흔히 '68세대'라 불리는 젊은 사람들은 동독을 반파시즘으로 이해하여 동독 체제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사민당 지도부와 이들 68세대들은 동독을 아테나워 정권 시절과는 다르게 이해하여 동독을 파트너로 보게 되는데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사민-자민당 연정은 동독의 인권상황과 관련된 비판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테나워 시절의 대결적 대동독 인권정책은 의미를 상실하였다. 이에 아테나워 정권 시절 동독 주민들의 인권상황 개선과 인권침해를 알리고자 노력하였던 서독의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은 사민-자민당 연정하에서 급진적인 반공주의자로 취급받기도 하였다.

인권정책을 부차적(stiefmütterlich)으로 다루었던 사민-자민당 연정(sozialliberalen Koalition)의 동방정책은 당시 야당이었던 기민/기

사당의 정치가들에 의해 격정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기민당의 자매 정당이었던 기사당에게 있어 동방정책은 동독의 공식적인 인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동·서독의 분단을 인정함으로써 미래의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기사당은 동방정책이 서독 기본법의 조항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1982년 사민-자민당 연정이 붕괴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동방정책과 다른 새로운 독일정책을 새로 들어선 기민/기사-자민당 연정이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콜 총리의 독일정책은 이러한 기대를 뒤집는 것이었다. 정권교체 이후 외무부에서 겐셔 장관(Hans-Dietrich Genscher)을 비롯한 인사상의 연속성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독일정책 역시 브란트-슈미트 정권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기민/기사당이 주도하였던 ‘인도적 개선’(Humaitäre Erleichterungen)은 동독 주민들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더욱 강조하였다. 인도적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대동독 인권정책의 개념을 가진 콜 정부는 동독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동독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권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1980년대는 서독 인권정책의 분열된 발전을 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인권논쟁이 나타났으며 동독과 관련된 비판적 질문이 제기되었다. 수백만의 서독 사람들이 동독으로 여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에서 가시적인 인권개선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동독의 개신교 교회에서 반체제운동 단체를 비롯한 몇 개의 그룹들이 동독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환경관련 단체들이 대표적이었다. 이들은 예를 들면 활동가들의 구금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1980년대는 동독에 인권상황과 인권침해에 대해 서독에서뿐만 아니라 동독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시기였다.

2.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전개

가. 동독의 소련화와 획일적 통합화

소련화는 동독이 건국하기 이전 제2차 세계대전 중 모스크바로 망명한 일련의 공산주의자들이 베를린으로 돌아온 때에 이미 시작되었다. 소련화와 관련하여 당시 가장 대표적인 인권침해는 재산몰수와 탈나치화(Entnazifizierung)의 명목으로 자행되었던 구금과 소련 군정의 감옥에서 수행되었던 고문(Folter)이었다. 나치 시절 수용소로 이용되었던 부헨발트(Buchenwald)는 용도가 변경되어 동독에서 특정한 용도를 위해 사용되었다. 1945년 6월 11일 독일 공산당은(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KPD) 소련점령 지구(Sowjetische Besatzungszone: SBZ)에서 활동을 허가 받은 첫 번째 정당이었다. 1945년 6월 공산당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파시즘-민주주의 정당들을 연합하여 독일공산당(KPD) 주도로 통일전선(Einheitsfront der antifaschistisch-demokratischen Parteien)을 설립하였다. 행정의 재건과 함께 반강압적인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에서조차 동독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공산당은 1946년 6월 사민당과 공산당을 강제로 병합하여 새로운 정당인 사회주의통일당을 만들었다(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 그리고 이와 동시에 공산당 비판자들에 대한 구속과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당시 동독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였던 정치인들 예를 들어 기민당(CDU) 야콥 카이저(Jakob Kaiser)와 같은 사람들은 서독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사민당과 공산당의 강제 병합의 직접적인 결과는 이에 반대하는 동독 지역 사민당원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사민당(SPD) 동부 사무소의 설립과 활동이었다. 사민당의 동부 사무소는 1940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 동독에서 발생하였던 인

권침해를 비판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 동독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공적 삶에 일상적인 획일화)와 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 당시 동독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정보의 대부분은 서독으로 반입되어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동독 주민들의 일기(Mitteldeutsche Tagebuch)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들 일기장에는 동독에서 일상적인 획일화에 대한 많은 정보가 수록되었다.¹³¹

소련 점령지구(SBZ)에서 소련 군정은 계획경제를 동독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 기업의 해체작업과 200개의 대형 기업소를 정리하였다. 계획경제의 도입에 따라 중공업의 국유화(Verstaatlichung der Schwerindustrie)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또한 토지 개혁(Bodenreform)으로 전체 농지의 35%를 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구실로 옛 지주(Junker, Adeligen)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였다. 계획경제 도입으로 인한 경제 영역의 소련화와 함께 동독의 사회부문에 서도 소련의 전체주의 체제가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법무부의 획일화(Gleichschaltung der Justiz), 문화개혁(Kulturreform), 교육 및 학교 개혁(Bildungs- und Schulreform), 자유 독일 노동조합(Freier Deutscher Gewerkschaftsbund: FDG), 자유 독일 청년단(Freie Deutsche Jugend: FDJ)과 같은 대중조직들이 조직된 것이 대표적인 동독 사회의 소련

¹³¹- Beate Bouvier, "Verfolgung und Repression in der SBZ/DDR von den vierziger bis zu den sechziger Jahren und ihre Wahrnehmung in Ost und West," in: Friedrich-Ebert-Stiftung (Hrsg.), *Politische Repression in der SBZ/DDR und ihre Wahrnehmung in der Bundesrepublik* : Vorträge einer Sektion auf dem Berliner "Geschichtsforum 1949-1989-1999. Getrennte Vergangenheit-gemeinsame Geschichte?" am 29. Mai 1999, Bonn 1999, Reprint im Internet : <<http://www.fes.de/fulltext/historiker/00660002.htm#LOCE9E2>>, (Zugriff am 30.7.2013).

화였다.¹³²

서독에서 이 시기에 진정한 동독의 인권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 단순히 서독 정부와 인권단체들은 소련의 간섭과 동독의 정책, 경찰, 법률기관들을 비난하는 수준이었다. 몇몇 인권단체들 예를 들면 자유법률가 위원회(UFJ) 또는 비인도성과 싸우는 투쟁단(Kgu)과 같은 단체들은 동독의 인권침해를 직접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독에서 여전히 독일의 중립화정책(Neutralisierungspolitik) 또는 분단된 독일의 재통일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 그림 VI-1 1960년대 동독의 협동농장



출처: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Geschichte und Strukturen der DDR*.

¹³²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Geschichte und Strukturen der DDR*, pp. 110-115.

나. 1953년 6월 17일 민주화 항쟁과 서독의 반응

한국전쟁의 발발은 독일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는 두려움을 만들었다. 한편 동독에서는 급격한 소련화에 반대하는 동독 주민들이 점차 증가하였고 이는 반정부적인 감정으로 확대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53년 동베를린에서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난 민주화 항쟁이었다. 1953년 3월 스탈린이 죽자 동독의 주민들은 소련화의 약화와 보다 많은 자유를 기대하게 되었다. 당시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 서기장과 사회주의통일당은 ‘신 방침’을 통해 소비재 생산을 늘리고 노동자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약속했던 임금 인상은 철회되었다. 이에 동베를린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데모를 시작하였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는 자유선거와 공산독재 철폐를 주장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하여 동독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노동자와 동독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스스로 진압할 수 없었던 동독 정권은 소련군의 도움을 받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¹³³ 1953년 6월 17일 민주항쟁의 발생과 소련 탱크에 의한 진압은 서독 정부가 동독의 민주화 운동에 개입할 수 없는 무력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1953년 6월 17일 민주화 항쟁은 동독에서 처음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당시 서독의 아데나워 정권은 6월 17일을 독일통일의 날로 정하여 국경일로 삼았다.

¹³³- Dennis·Bark·David Gress, *A History of West Germany*, 서지원(역), 『도이치 현대사 4』 (서울: 비봉출판사, 2004), pp. 243-244.

● 그림 VI-2 1953년 6월 17일 시민 항쟁



출처: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Geschichte und Strukturen der DDR*.

다. 베를린 장벽 건설

베를린 장벽 건설은 서독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정치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 건설은 독일정책에서 인권정책이 본격적으로 발전되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¹³⁴ 왜냐하면 장벽 건설은 결과적으로 동독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중앙기록보존소(니더작센 주 잘츠기터 소재)가 설립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중앙기록보존소의 설립은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핵심이었다. 소위 장벽살해(Mauertoten) 즉,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게 대한 발포로 인한 사망과 동독의 국경수비대에게 내려진 사살 명령은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중요한 주제였다. 이는 한편으로 동독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가 서독에서 직접적으로 기록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 동독에서의 탄압정책(Repressionspolitik)은 은밀하게 자행되는 형태로 발전되었다. 특히 1956년부터 탈스탈린화(Entstalinisierung)

¹³⁴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건설했다는 의미는 그 동안 진행해 왔던 서독과의 체제경쟁을 포기하고 장벽 건설을 통해 동독내부를 단속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에 따른 공포정치에 대한 비판과 울브리히트에서 호네커의 정권(Weschsel von Ulbricht zu Honecker)교체는 이러한 탄압정책이 비가시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¹³⁵

4,900,000명의 동독 주민들이 1945년부터 1989년까지 엘베(Elbe)강과 오더(Oder)강 사이의 국경을 넘어 서독으로 왔다. 1961년부터 1989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만 1,250,000명이 넘는 동독 주민들이 동독을 떠났다.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었던 해인 1961년에 236,390명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에는 388,396명이 동독을 떠났다. 이는 매년 300,000명의 동독 주민들이 불법으로 도망쳐서 서독에 온 것을 의미한다. 동독 국가보위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MfS)는 1976년부터 1988년까지 국경에서 총 38,063건의 탈출 실패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 따르면 매년 3,100건의 동독을 탈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³⁶ 동독 주민들의 탈주 물결은 서독에서 이미 장벽이 건설되기 전에 있었다.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기 전까지 동유럽과 동독을 탈출한 사람들이 약 팔백십만 명에 달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서독 정부에 효과적인 통합정책을 요구하는 요인이었다. 1951년부터 1988년 말까지 약 백육십만 명의 동구, 남부유럽 이민자들은 독일 사회에 통합되었다. 1949년부터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기 전인 1961년 8월까지 적어도 이백칠십만 명의 동독 주민이 서독에 정착하였다.¹³⁷

¹³⁵-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Geschichte und Strukturen der DDR*, pp. 162-164.

¹³⁶- Eine Diktatur in Zahlen, unter: <<http://www.stern.de/politik/deutschland/statistik-des-schreckens-eine-diktatur-in-zahlen-1517047.html>> (Stand: 09.09.2013).

¹³⁷- Migration, Ausländerbeschäftigung und Asylpolitik in der DDR, <<http://www.bpb.de/gesellschaft/migration/dossier-migration/56368/migrationspolitik-in-der-ddr?p=all>> (Stand: 09.09.2013).

라. 동독 주민의 서독 방문과 이주에 대한 재정적 지원

(1) 서독 방문 동독 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

서독 정부는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 주민들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동독 주민들의 서독 방문 여행은 물론 서독 주민과 동독 주민과의 교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서독 정부는 동·서독의 민족 동질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1972년 7월 1일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동독과 동베를린 및 동남부 유럽으로부터의 방문객을 위한 지원조치에 관한 기본 지침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환영현금(Bargeldhilfe)의 지급에서부터 일정액의 여행경비(Reisehilfe) 및 의료비(Krankenhilfe) 지원, 나아가 서독 여행중 사망한 경우의 지원(Hilfe im Todesfall) 등이었다.

(2) 이주 동독 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

긴급수용법에 따라 수용결정을 받은 자들은 긴급수용소에 체류하였는데, 동 수용소에서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예산에 기초한 각종의 보조금 및 사회부조적 조치들이 취해졌다.¹³⁸ 동 수용소를 떠난 이후에도 복지주택의 입주상 혜택, 주택건설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각종의 생활용품의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었다. 그리고 연방실향민법(Bundesvertriebenengesetz, BVFG)에 따라 졸업증명서나 자격증서 인정(동법 제92조), 공공사업 발주에 있어서 우선적 수주 및 수공업자협회 가입 간소화(동법 제74조) 등 다양한 재정

¹³⁸. 긴급수용소(Notaufnahmelager)는 Berlin(Ulzen-Bohdamm), Gießen(Hammstrasse), Marienfeld 등에 설치되었다.

적 및 세계상의 각종 편익이 제공되었다.¹³⁹ 동독 이탈주민 정착지원의 내용은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VI-1 동독 이탈주민 정착지원 내역

거주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수용소 •주택소개 •복지주택 우선 입주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인척이나 기타 연고를 통한 주택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주택건설법 제 25조에 따라 동독출신 이주민에게 5년 동안 주택임주 혜택
생활상담과 후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생활환경 소개 	
생활용품, 가구구입을 위한 저리 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신자 •2인 이상 가족기본금 •기타 가족 1인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0 DM •4,000 DM •1,000 DM 최고액 10,000 DM
학력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독 취득 •학교졸업증명서나 직업교육 자격증명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실향민법
교육촉진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간 동안의 생활비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교육촉진법
대졸자 사회진출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업추가 이수 시 장학금 지원
자녀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수에 따라 양육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자녀수당법
사회복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보험, 질병급부 •연금보험 •실업보험 •실업수당 •산재보험 •전쟁희생자 원호 •사회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보험법에 따른 질병 급부금 수혜 •연금법에 따른 개별적 급부금 수혜 •동독에서의 실직기간, 정치범으로서 구류기간, 자영업 기간도 취업기간에 포함 산정 •단체협약임금의 63% •서독 보험법에 따른 급부 제공 •연방원호법에 의한 원호생계비 지원, 주택임대료 지원, 난방비 보조금, 의복과 가구에 대한 보조금

출처: 김영윤·양현모 편,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 통일』 (통일부, 2009), p. 46.

¹³⁹ 주독대사관,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p. 307.

마. 거래를 통한 동독 정치범의 석방

“정치범의 석방을 위한 거래(Häftlingsfreikauf: 이하 Freikauf)”는 동독 내에서 정치적 이유로 구금되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반체제인사, 특히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서독 정부가 일정한 댓가를 동독에 지불하고 이들을 석방한 거래를 말한다. 서독 정부는 Freikauf를 “특별사업(Sondergeschäft)”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서독 정부는 이를 비공식적으로 추진하였다. 석방된 동독의 정치범들은 서독에서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1963년부터 시작된 Freikauf는 통일 직전까지 지속되었는데, 최초에는 개별사안에 대한 협상으로 시작되었으나 차후에는 점차 조직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¹⁴⁰

Freikauf는 대동독 전담 부서인 전독성(1969년 이후 ‘내독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특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 전반을 주관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전독성/내독성은 협상과정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는데 이는 무엇보다 정부기관이 직접 Freikauf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¹⁴¹

한편 Freikauf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했던 전독성/내독성 및 전독문제연구소¹⁴² 등의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 규정은 있었다. 그러나 Freikauf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은 없었다. 이는 Freikauf가 비밀리에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수긍되어진다 하겠다. 또한 동·서독간에는 비밀리에 진행된 Freikauf와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합의나 조약도 존재하지 않았다.¹⁴³

¹⁴⁰. 손기웅 외,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 및 정책적 시사점” (통일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08), pp. 1-2.

¹⁴¹. 위의 글, pp. 28-29.

¹⁴². 위의 글, p. 29.

¹⁴³. 위의 글, pp. 3-4;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pp. 121-126.

1962년부터 1989년까지 33,755명의 동독의 정치범들이 석방되었고 이를 위해 서독 정부는 3,436,900,755,120 서독 마르크를 동독 정권에 지불하였다. 서독 정부는 동독의 정치범 석방의 대가를 외화로 지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서독 정부가 이를 강력히 반대하였기 때문에 금액에 해당하는 현물로 동독 정부에 지급하였다. Freikauf 이외에도 25만 명에 달하는 동독의 해외여행 신청자에 대해서도 서독 정부는 이들을 Freikauf 방식으로 샀다. Freikauf 방식을 통해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막대한 돈이 유입되었다. 동독 정권은 Freikauf를 통해 유입된 막대한 돈을 통해 정권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¹⁴⁴

● 그림 VI-3 연도별 동독 정치범 석방자의 수



출처: Falco Werkentin, *Recht und Justiz im SED-Staat* (Bonn: Bundestent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02), p. 81.

¹⁴⁴- Häftlingsfreikauf zwischen DDR und Bundesrepublik, Seite 1, unter: <<http://www.sed-opfer-hilfe.de/doc%20freikauf.pdf>> (Stand: 09.09.2013). Die Häftlingsfreikäufe in Deutschland als ein Modell für Korea?, Seite 11, unter: <http://www.bundesarchiv.de/imperia/md/content/bundesarchiv_de/fachinformation/hammer_korea.pdf> (Stand: 09.09.2013).

그러나 Freikauf는 장기적으로 동독 정권에 해를 끼치는 것이기도 하였다. 각각의 Freikauf는 서독 정권에게 정당성과 동독 정권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Freikauf가 비밀리에 거래되어 동독의 정치범들이 서독에 정착하여 조직화됨에 따라 동독에서 발생 하였던 인권침해에 대한 증인들과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축적될 수 있었다. 따라서 Freikauf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독 정권에게 부담이 되었다.

바. 교회의 저항과 환경운동 조직의 발생

동독에서 인권침해와 독재에 대한 교회의 저항은 특히 중요하였다. 왜냐하면 교회는 동독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자율성(Autonom)을 확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정치적 공간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교회는 주교구(Bistümern)에서 관할하는 전통적인 접촉을 통해 서독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이기도 하였다. 서독의 교회는 재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동독의 교회를 도왔다. 따라서 동독 주민에 대한 탄압과 관련된 정보는 동독의 교회와 접촉할 수 있었던 서독의 교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 분단 초기 울브리히트 정권하에서 교회의 강력한 반정부 투쟁 시기에 서독의 교회는 물질적, 비물질적 수단의 지원을 통해 동독 교회의 반정부 활동을 도왔다. 1980년대 교회는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독 역사상 처음으로 조직된 반정부 그룹(Oppositionsgruppe) 활동을 지원하였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환경 운동을 중심으로 동독 내부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¹⁴⁵

¹⁴⁵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Geschichte und Strukturen der DDR*, pp. 474-482.

표 VI-2 서독 교회의 동독 교회 지원액¹⁴⁶

(단위: 백만)

연도	A형 교회사업		B형 교회사업
	개신교	천주교	개신교
	동독 마르크	동독마르크	서독 마르크
1957	23.5		
1958	31.5		
1959	36.2		
1960	33.2		
1961	34.7		
1962	33.9		
1963	36.3		
1964	36.2		37.9
1965	40.9		67.7
1966	56.0	3.4	24.8
1967	43.0	15.0	31.5
1968	45.9	20.0	28.4
1969	40.1	20.0	44.9
1970	44.0		50.7
1971	44.1		84.2
1972	44.1	20.0	69.5
1973	44.0	25.0	54.0
1974	48.0	20.0	88.1
1975	40.0	25.0	104.0
1976	44.0	30.0	130.0
1977	51.0	35.0	144.0
1978	51.0	35.0	168.4
1979	44.0	35.0	107.0
1980	44.0	35.0	130.0

¹⁴⁶ A형 교회사업은 동독 교회 지원 목적의 원자재 공급을 통한 재정지원을 말하고 B형 교회사업은 인도주의적 목적(정치범 석방, 이산가족 재합류)을 위한 원자재 이전을 의미한다.

연도	A형 교회사업		B형 교회사업
	개신교	천주교	개신교
	동독 마르크	동독마르크	서독 마르크
1981	44.0	35.0	179.0
1982	44.0	40.0	102.8
1983	44.0	40.0	388.0
1984	44.0	40.0	388.0
1985	44.0	40.0	302.0
1986	44.0	40.0	195.0
1987	44.0	40.0	163.0
1989	44.0	40.0	232.1
1990	44.0	40.0	65.0

출처: 통일원,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pp. 749-750.

사. 긴장완화 정책, 대화 그리고 동독의 인권문제

긴장완화정책(Entspannungspolitik)은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수상 하에서 시행된 새로운 독일정책에 특별히 각인되어 있다. 브란트는 1960년대 초 냉전의 최전선(Frontstadt des kalten Krieges)이었던 서베를린의 시장(Bürgermeister von (Westberlin))으로 동독에서 발생하였던 인권침해를 직접 목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브란트의 경험은 그가 동독 인권침해에 대한 중앙기록보존소의 설립을 주도하게 만들었던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의 긴장완화와 접근을 통한 동독의 변화를 추구하였던 브란트의 독일정책에 있어 동독의 인권개선에 대한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았다. 브란트 정권하에서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인기 없는 정책이 되었다. 이는 실질적인 차원(잘츠기터의 재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차원에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브란트의 독일정책은 동독과 서독 사이에 사람과 정보교류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람과

정보의 동·서독 간의 교류의 핵심은 인권문제였다. 브란트 총리는 동·서독 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 현실적이면서 정치적으로 해결이 용이한 이산가족의 상봉이라는 인권카드를 통해 동독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독일 내부간 부속협약, 우편협약, 1971년 12월에 체결된 서베를린 출입 및 서베를린에서 동독 출입협약이었다. 그리고 동독과의 대화와 협력에 기초하여 브란트 총리는 동·서독 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의미하는 동독과 서독 간의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을 체결하였다.¹⁴⁷

이러한 긴장완화정책 덕분에 수 백만의 서독사람들이 동독으로 여행을 갈 수 있었으며 동독 정권이 붕괴되기 전 동독에서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서독으로 왔다. 물론 서독을 방문한 대부분의 동독사람들은 은퇴한 사람들이었다. 긴장완화정책을 통해 서독과 동독의 관계는 점차 대결적 국면에서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동독은 공식적으로 2국가 이론(Zwei-Staaten-Theorie)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동독 정권은 독일에는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과 자본주의 국가인 서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자신의 체제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동독 정권의 이 같은 분리정책에도 불구하고 독일민족의 연대감은 이데올로기로 사라질 수 없었다. 대부분의 서독 주민들은 대결정책을 지양할 새로운 독일정책과 인권정책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독의 요구와는 반대로 동독 정권은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탄압과 인권침해(구속, 심리적 육체적 고문, 월경자들의 살해 등)를 더욱 강화하였다.¹⁴⁸

¹⁴⁷- Dennis·Bark·David Gress, *A History of West Germany*, 서지원(역), 『도이치 현대사 3』, pp. 88-89.

¹⁴⁸- Erich Hahn, *SPD und SED. Ein Dialog*, Berlin: Edition Ost, 2002.

● 그림 VI-4 동베를린 방문을 위해 줄을 서는 서베를린 주민



출처: Dennis Bark·David Gress, *A History of West Germany*, 서지원(역), 『도이치현 대사 3』.

아. 수백만에 달하는 대부와 인도적 개신

헬무트 콜 정권은 사민-기민당 연정에서 시작한 긴장완화 정책을 계승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켰다. 특히 콜 총리는 아데나워 정권이 주장하였던 대결적 독일정책을 철회하고 통일의 목표로 전체 독일인들이 원하는 정치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을 지지하였다. 이는 야당 시절 항상 사민-자민당 연정의 긴장완화정책을 비판하였던 기민당을 생각해보면 가히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¹⁴⁹ 특히 기

¹⁴⁹- CDU/CSU-Bundestagsfraktion zu den Menschenrechten in der DDR, 20. September 1979, Reprint im Internet: <<http://www.chronik-der-mauer.de/>

민당보다 긴장완화정책에 더 비판적이었던 기사당의 당수 슈트라우스(Franz Josef Strauss)가 1984년에 동독 정권에게 10억 마르크 차관을 지원한 것은 콜 정권하에서 급격히 변화된 기민-기사당의 독일정책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¹⁵⁰ 콜 수상은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동독에 대한 대규모의 경제적 차관지원과 동독 정권에 대한 정치적 승인(예를 들면 호네커가 1987년 서독의 본(Bonn)을 방문한 것)을 하였다. 콜 정권은 동독에 대규모 차관 제공을 통해 동독 정권으로부터 국경선의 무인발사 시설의 철수, 동·서독 왕래 증가와 같은 인권정책의 가시적 성과물을 끌어낼 수 있었다.¹⁵¹

이러한 콜 수상의 독일정책¹⁵²은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차관 지원과 Freikauf의 확대는 긴장완화정책(Entspannungspolitik)과 인권정책(Menschenrechtspolitik)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물론 콜 수상이

index.php/de/Start/Detail/id/593849/page/3> (Zugriff am 30.7.2013).

¹⁵⁰- Dennis·Bark·avid Gress, *A History of West Germany*, 서지원(역), 『도이치현 대사 3』, pp. 433-434. 이 차관은 슈트라우스의 주선으로 서독 정부 보증 하에 서독 은행 컨소시움이 제공한 것임.

¹⁵¹- Manfred Görtemaker,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n der Gründung bis zur Gegenwart* (Frankfurt a.M: Fischer Verlag, 2004), pp. 697-702.

1981년의 1,563,000명에서 1983년에 1,462,000명으로 줄었던 연금수혜자들의 여행은 지난 두해에 걸쳐 1,546,000명과 1,609,000명으로 10% 이상 증가했다. 동독으로부터 독일연방공화국으로의 연금수혜자 여행자수는 1980년에 약 40,400명에서 1981년에 약 36,600명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다음 해부터는 현저하게 증가했다. (1982년 약 45,000명, 1983년 약 66,000명, 1984년에는 약 61,000명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1985년 약 66,000명으로 증가했다). 통일원, 『내독관계발전사』 (1990) pp. 48-49.

¹⁵²- 콜 수상의 독일정책은 이전 정권인 사민당의 브란트-슈미트 정권의 독일정책을 계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교 정책과 관련하여 콜은 이전 정권의 등거리 외교정책을 포기하고 서독을 미국의 외교의 하위파트너로 간주하여 대미외교를 강화하는 외교정책을 실천에 옮겼다.

긴장완화 정책과 인권정책에 있어 균형잡힌 정책을 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두 정책이 양립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만은 분명하다. 1980년대 독일의 독일정책의 역사는 긴장완화정책과 인권정책이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이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¹⁵³ 결국 콜 정권은 대동독 인권정책의 외연확대를 시도하였던 브란트-슈미트 총리의 인권정책을 계승하여 독일통일을 달성하였다. 다음의 표는 통일 전까지 서독과 동독에서 사람과 상품 교역이 연도별로 확대되는 것을 잘 보여준다.

표 VI-3 서독 주민의 동독 방문

(단위: 천명)

연도	총계	서베를린 → 동독	동독 1일 방문	서독→ 동독	연도	총계	서베를린 → 동독	동독 1일 방문	서독→ 동독
1953	1,388	-	-	-	1971	2,677	-	1,400	1,267
1954	2,534	-	-	-	1972	6,260	3,320	1,400	1,540
1955	2,186	-	-	-	1973	7,499	3,820	1,400	2,279
1956	2,259	-	-	-	1974	5,879	2,560	1,400	1,919
1957	2,696	-	-	-	1975	7,734	3,210	1,400	3,124
1958	659	-	-	-	1976	7,921	3,400	1,400	3,124
1959	867	-	-	-	1977	7,788	3,400	1,400	2,988
1960	761	-	-	-	1978	7,837	3,260	1,400	3,177
1961	-	-	-	-	1979	7,423	3,100	1,400	2,923
1962	-	-	-	-	1980	6,746	2,600	1,400	2,746
1963	1,242	1,242	-	-	1981	5,020	1,800	1,120	2,100
1964	1,394	1,376	-	-	1982	5,068	1,730	1,120	2,218

¹⁵³ CDU/CSU-Bundestagsfraktion zu den Menschenrechten in der DDR, 20. September 1979, Reprint im Internet: <<http://www.chronik-der-mauer.de/index.php/de/Start/Detail/id/593849/page/3>> (Zugriff am 30.7.2013).

연도	총계	서베를린 → 동독	동독 1일 방문	서독 → 동독	연도	총계	서베를린 → 동독	동독 1일 방문	서독 → 동독
1965	1,904	1,904	-	-	1983	5,059	1,720	1,120	2,219
1966	978	978	-	-	1984	5,219	1,600	1,120	2,499
1967	1,424	-	-	-	1985	5,620	1,900	1,120	3,790
1968	1,261	-	-	-	1986	6,740	1,800	1,120	3,700
1969	1,107	-	-	-	1987	6,620	1,800	1,120	3,700
1970	2,654	-	1,400	1,254	1988	6,671	1,972	1,120	3,579

출처: 김영윤·양현모 편,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p. 53.

표 VI-4 동·서독간 상품교역 현황

(단위: 백만 VE)

연도	동독 → 서독	서독 → 동독	연도	동독 → 서독	서독 → 동독
1950	414.6	330.0	1970	1,996.0	2,415.5
1951	145.3	141.4	1971	2,318.7	2,498.6
1952	220.3	178.5	1972	2,380.9	2,927.4
1953	306.9	271.3	1973	2,659.6	2,998.5
1954	449.7	454.5	1974	3,252.5	3,670.8
1955	587.9	562.6	1975	3,342.3	3,921.6
1956	653.5	699.2	1976	3,876.7	4,268.7
1957	817.3	845.9	1977	3,961.0	4,409.4
1958	858.2	800.4	1978	3,899.9	4,574.9
1959	891.7	1,078.6	1979	4,588.9	4,719.6
1960	1,122.5	959.5	1980	5,579.6	5,293.2
1961	940.9	872.9	1981	6,050.6	5,595.1
1962	914.4	852.7	1982	6,639.3	6,382.3
1963	1,022.3	859.6	1983	6,878.2	6,957.1
1964	1,027.4	1,151.0	1984	7,744.2	6,408.1
1965	1,260.4	1,206.1	1985	7,635.8	7,901.1
1966	1,345.4	1,325.3	1986	6,843.6	7,454.2
1967	1,263.9	1,483.0	1987	6,646.9	7,367.4
1968	1,439.5	1,422.2	1988	6,788.7	7,234.2
1969	1,656.3	2,271.8	1989	7,205.4	8,103.5

출처: 김영윤·양현모 편,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 p. 59.

3.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주요 조직

여기서는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를 살펴볼도록 하겠다.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주요 행위자 가운데 정부 측 행위자로는 전독일성(Gesamtdeutsche Ministerium), 전독일 연구소(Gesamtdeutsche Institut) 그리고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Erfassungstelle Salzgitter)가 있다. 두 번째 인권정책과 관련된 행위자로 교회 또는 교회와 연관된 조직을 들 수 있다. 이들 교회에 기반한 조직들은 한편으로 동독에서 구체적인 구호활동을 수행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서독으로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독일 분단 초기, 즉 대결적 인권정책 시기에 반공주의에 토대를 둔 인권조직이 설립되었다. 이들 조직은 동독에 관한 정보 특히 동독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동독에서 직접 활동하였다. 당시 인권운동에 참여하였던 대표적인 단체는 비인도성과 싸우는 투쟁단과 자율법률인위원회가 대표적이었다. 특히 자율법률위원회는 동독의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수 천명의 동독 주민의 권리문제에 대해 자문을 해주었다. 이들 반공주의에 토대를 둔 인권단체와 유사한 기능을 하였던 조직으로는 서독 정당의 동부사무소(Ostbüro)가 있었다. 특히 시민당의 동부사무소는 동독의 인권개선과 동독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대표적인 서독 정당의 동부사무소였다.

가. 정부 측 행위자

(1) 전독성

전독성(Das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BMG)은 우선 통일 문제와 동독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가장 중요한 정부 기구였다. 전독성은 1949년 설립되었고 당시 서독의 정통성주장(Alleinvertretungsanspruch)을 정당화 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 전독성은 전반적인 대동독 관계 업무를 맡고 있었다. 전독성의 초대 장관을 역임했던 인물은 동독 출신의 영향력 있는 정치가였던 기민당의 카이저(재임기간 1949년~1957년)였다. 초대 장관이었던 카이저는 아데나워와는 달리 서방통합보다는 동독과 서독의 정치적 통일을 원했다. 전독성은 카이저와 같은 동독 출신 정치가(예를 들면 에른스트 램머(Ernst Lemmer)들이 고위직에 많이 포진하고 있었다. 이들은 소련 점령지구와 동독에서 공산독재의 탄압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동독 출신의 전독성 고위 관료들은 동독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전독성의 중요한 과제로 만들었다. 전독성의 강력한 인권정책에 대항하여 동독 정권은 아데나워 정권의 전독성을 파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이와 같은 전독성을 파괴하려는 전략에는 전복음모, 동맹결성, 간첩침투 같은 것이 포함되었다. 이에 맞서 전독성은 냉전에서 동독 정권의 파괴 공작으로부터 서독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¹⁵⁴

독일정책은 아데나워 총리 이후 동독과의 협력과 교류라는 차원에서 연속성을 보였다. 이는 브란트 총리와 슈미트 총리의 사민-자민당 연정 정권하에서 뿐만 아니라 기민당 출신의 수상이었던 헬무트 콜 정권에서도 유효하였다. 이러한 독일정책의 적극적인 변화에 따라 전독성의 업무 역시 동독과의 화해와 협력업무로 전환되었다. 통일이 된 이듬해인 1991년 전독성은 사라졌다. 왜냐하면 전독성의 과제인 동독

¹⁵⁴ Stefan Kreuzberger *Kampf für die Einheit. Das gesamtdeutsche Ministerium und die politische Kultur des Kalten Krieges 1949-1969*, Schriften des Bundesarchivs, 69 (Düsseldorf: Droste Verlag, 2008).

과의 협력과 교류 그리고 통일이라는 과제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이었다. 독일통일 이후 정치적, 법적 차원에서 전독성의 남은 업무는 연방내무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로 이관되었다.

냉전에서 1969년까지 전독성(BMC)은 동독의 인권상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알리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전독성은 1966년까지 10판까지 출간된 『소련점령지구 A에서 Z까지』란 책을 발행하였다. 또한 동독에 대한 연구물 시리즈 예를 들면 1952년 국경폐쇄에 관한 연구, 1960년 동독 청소년의 상황,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에 관한 연구물을 발표하였다.¹⁵⁵ 전독성은 재단의 설립과 통일과 관련된 상을 후원하는 사업을 통해 독일통일과 동독의 인권개선에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다. 독일하우스 재단의 감독기관으로 전독성은 에른스트 로이터 상(Ernst-Reuter-Preis), 야콥 카이저 상(Jakob-Kaiser-Preis)을 후원하여 독일통일과 인권개선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이 상을 수여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전독성은 재정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독일통일과 반공주의에 토대를 두고 인권운동을 하였던 민간 인권운동가와 단체를 후원하였다. 이들 조직들은 과거 동독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중 많은 단체들이 교회관련 조직들이었다. 이들 단체가 수행한 활동 가운데 인도적 지원(humaitäre Erleitungen)이 포함되었다. 인도적 지원활동은 동독 주민들에게 의약품과 다른 필요한 생필품을 제공하는

¹⁵⁵.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Die Situation der Jugend im kommunistischen Herrschaftssystem der SBZ Deutschlands in Bonner Berichte aus Mittel- und Ostdeutschland* (Bonn - Berlin, 1960).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Denkschrift, Der Bau der Mauer durch Berlin: die Flucht aus der Sowjetzone und die Sperrmaßnahmen des kommunistischen Regimes vom 13. August 1961 in Berlin* (Bonn-Berlin, 1961).

일을 의미하였다.¹⁵⁶ 초대 총리 아테나워가 사임한 1963년 전독성 장관으로 에리히 멘데(Erich Mende)가 부임하여 최우선적으로 동독에 대한 인도적 지원 특히 통행증협정(Passierscheinvereinbarungen)을 체결하였다. 통행협정이 중요했던 이유는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짐에 따라 서베를린 주민들은 동베를린으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멘데는 짧은 시간이나마 동베를린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을 방문할 수 있는 통행협정 체결을 전독성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내세웠다. 1966년 기민당과 사민당의 대연정(grosse Koalition)이 들어섬에 따라 처음으로 사민당 출신의 헤르베르트 베너(Herbert Wehner)가 멘데의 후임으로 전독성 장관이 되었다. 베너는 우선 전독성을 내독성(innerdeutsche Beziehungen)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전독성의 명칭 변경은 독일정책과 대동독 인권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었다.¹⁵⁷ 이러한 실용적 독일정책으로의 변화는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서독 정부가 동독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있어 동독에 대한 비판을 가급적 삼가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용적 독일정책의 등장은 동독 연구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실용적인 독일정책은 동독의 연구방법으로 체제의 내재적 접근(systemimmanente Beurteilung)을 발전시켰다. 이 새로운 동독에 관한 연구경향은 동독의 이해에 있어 추체험(Nachleben)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당시 전독일 연구소(Das Gesamtdeutsche Institut)에

¹⁵⁶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und Robert-Havemann-Gesellschaft e.V., Schüler im Widerstand, letzte Änderung September 2008, im Internet: <www.jugendopposition.de/index.php?id=2853?> (Zugriff am 30.7.2013).

¹⁵⁷ 사민당 최초의 전독성 장관이 된 베너는 이전의 대결적 독일정책과 인권정책의 핵심 인물들이었던 반공주의자들을 내보내고 이 자리에 실용적 독일정책과 인권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전독성 요직에 기용하였다. 이동기 교수와의 면담(2013. 9.13).

서 출간된 동독에 관한 핸드북이 동독 연구의 대표적인 내재적 접근을 활용한 연구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적 연구경향은 동독의 객관적 연구 보다는 동독 정권과의 관계를 단순히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재적 접근법의 연구 중에서 일부는 동독의 국가보위부의 비공식요원(inoffizielle Mitarbeiter)의 후원을 받은 것도 있었다. 베너의 이러한 내독성의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내독성은 독일정책과 대동독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독일정책과 인권정책의 중요한 결정은 주로 연방총리청(Bundeskanzleramt)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었다. 독일정책과 인권정책의 결정과 집행 구조는 기민당 출신의 콜이 총리가 된 1982년까지 변하지 않았다. 내독성은 독일정책과 인권정책에서 ‘들러리 기구’로 불리웠다. 왜냐하면 독일통일과 관련된 출판 사업을 제외하고는 내독성은 중요한 정책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에 있어 내독성의 역할은 과소평가 될 수 없다. 내독성이 가지고 있었던 동독의 상황과 관련한 정보는 대동독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호네커가 믿는 인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동베를린 출신의 변호사 볼프강 포겔(Wolfgang Vogel)은 동독과 서독의 이산가족 상봉, 동독 정치범의 Freikauf와 감형에 관한 협상을 내독성과 하였다.

(2) 전독일연구소

1969년 6월 1일 통일에 관한 정책적 자문.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서독에서 내독성 관할하에 소위 전독일연구소(Gedamtdeutsche Institut)가 설립되었다.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소는 당시 서독의 수도였던 본(Bonn)에 설치되었고 서베를린에 연구소의 지방사무소가 설치되었다.

내독성 산하 전독일연구소는 동독과 관련된 자료와 문헌의 수집, 연구 평가 작업 이외에도 서독의 주민들에게 동독과 통일에 관한 기본지식을 제공하였다. 이렇듯 전독일연구소의 업무는 문서보관 작업, 연구 그리고 정치교육을 포함하였다. 또한 전독일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저장되었다. 전독일연구소의 업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동베를린 또는 동독 지역을 방문하는 서독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후원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동독에 대한 정보 특히 인권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동독 연구를 핵심 주제로 하여 많은 연구 성과를 냈다. 동독 핸드북, 동독 정치인 인명사전 등이 전독일연구소의 대표적인 연구 결과물이었다. 독일 통일 이후 전독일연구소는 1991년 12월 31일 사라지게 되었다. 통일준비 과제와 통일 정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동독의 국가보위부에 의한 전독일연구소의 감시와 이 연구소를 파괴하기 위해 감행된 많은 공작들이 간접적으로 보여준다.¹⁵⁸

(3) 통일문제위원회

국가기관으로서 전독일연구소 이외에도 통일문제위원회(Ausschuss für Fragen der Wiedervereinigung e.V.)가 있었다. 이 통일문제위원회는 국가기관이 아닌 등록협회(eingetragener Verein e.V)였다. 그러나 통일문제위원회는 정부와 정당의 지원을 받는 반정부기관(quasi-staatliche Institution)의 성격을 띠는 기구였다. 이 위원회는 동독에서

¹⁵⁸. Detlef Kühn, *Das Gesamtdeutsche Institut im Visier der Staatssicherheit, Berlin, Schriftenreihe des Berliner La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Band 13, 3. Auflage, im Internet: <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1stu/schriftenreihe/heft13_2011.pdf> (Zugriff am 30.7.2013).

1953년 6월 17일 민주화항쟁이 발생한 이듬해인 1954년 초대 전독성 장관 야콥 카이저의 제안과 연방대통령 테오도르 호이스(Theodor Heuss)의 참여로 설립되었다. 초당적인 위원회(überparteiliches Gremium)로서 통일문제위원회는 연방, 주 그리고 자치단체에 조직을 설립하였고 통일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특히 통일문제위원회가 동독 인권과 관련하여 실시하였던 중요한 사업은 동독에서 발생하였던 1953년 6월 17일 민주항쟁을 기리는 기념관을 서독의 많은 도시에 건립한 것이었다. 이들 통해 통일문제위원회는 서독에서 동독의 인권현황과 인권침해 문제를 공론화 하였다. 그러나 통일문제위원회의 대동독 인권 활동은 사민-자민당의 연정이 출범¹⁵⁹한 1969년에 중단되었다. 일반적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서독에서는 동독에서 발생한 1953년 6월 17일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축소되었다.

(4) 중앙기록보존소

1961년 서독 정부는 동독 내에서 자행되는 정치적 폭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공소시효와 무관한 동독의 비인도적·반법치 국가적 범죄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여 향후 형사소추를 가능토록 결의하였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구로 동년 11월 24일 니더작센 주 잘츠기터(Salzgitter) 시에 중앙기록보존소(Zentrale Erfassungs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in Salzgitter)¹⁶⁰를 설치하였다.¹⁶¹

¹⁵⁹. Leo Kreuz, *Das Kuratorium Unteilbares Deutschland. Aufbau, Programmatik, Wirkung* (Opladen: Leske und Budrich, 1980).

¹⁶⁰. 이에 관한 선행 연구자료는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pp. 117-121, pp. 155-168; 윤여상/제성호, “서독의 동독 인권침해 기록사례와 한국의 원용방안: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운영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8권 제1호 (중앙법학회, 2006); 윤여상/이건호,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범법행위 중앙기록보존소의 의미: 탈북자 인권침해기록보존소의 한

중앙기록보존소의 설립은 블루멘펠트(Erik Blumenfeld)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제안에 대한 적극 수용의 뜻을 보인 빌리 브란트의 주도로 진행되게 되었다. 이를 위해 1961년 10월 25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각 주와 연방 및 서베를린의 법무장관들의 합동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서 중앙기록보존소의 설치가 결정되었다.¹⁶²

중앙기록보존소는 잘츠기터 시의 잘츠기터-바트 지방법원 구역 내에 설치되었으며 편제상으로 브라운슈바이크 주 최고 검찰청에 소속되어 니더작센 주 검찰총장의 직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 비록 중앙기록보존소는 주 정부 산하기관으로 설치되었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모든 주와 연방기관이 그 활동을 보조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연방과 각 주들이 공동으로 분담하였다.¹⁶³

인적 조직은 출범 당시에는 3명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업무량의 증가와 함께 확대 개편되었는데, 소장인 고등검사 1명, 평검사 1명 등 검사 2명과 실무책임자인 주 법무부 공무원 1명, 기록전문요원인 공무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었다.

중앙기록보존소의 설립 초기에 그 임무는 베를린 장벽 및 국경선에

모델로서, 『통일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06); 윤여상, “북한인권 피해조사 및 기록보존소 설립과 운영방안,” 북한인권센터 주최 2005년 1차 정책포럼 발표논문; Bernhard Seliger, “동독 인권문제, 서독의 인권정책 및 통일 전후의 잘츠기터 인권침해사례 수집소의 역할과 성과,” 『통일과 법률』, 통권 제8호 (법무부, 2011)를 참조할 것.

161. Heiner Sauer/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Report*, 이건호 (역), 『서독 잘츠기터 인권침해중앙기록보존소 - 동독(사회주의통일당)의 국가범죄에 대한 서독중앙기록보존소의 결산보고』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pp. 26-32;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역할 - 독일 사례 비교 검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2008), p. 2.

162. 이건호 (역), 『서독 잘츠기터 인권침해중앙기록보존소 - 동독(사회주의통일당)의 국가범죄에 대한 서독중앙기록보존소의 결산보고』, pp. 26-32.

163.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역할 - 독일 사례 비교 검토,” p. 3.

서 발생히는 동독의 ‘폭력행위(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자료의 수집·기록·보존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이후 동독 정권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를 전반적으로 추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앙기록보존소의 업무영역은 점차 확장되었다.¹⁶⁴

서독 중앙기록보존소의 필요한 정보의 수집방법은 매우 광범위하였는데, 첫째, 연방국경수비대의 현황보고서 접수, 둘째, 언론매체의 분석, 셋째, 피해자나 증인들의 개인적 증언의 심사, 넷째, 주 및 연방 정부에 의한 조회정보의 분석·심사, 다섯째, 임시수용소인 기센(Gießen) 소재 연방수용소에서 석방 거래된 동독출신 정치범, 여섯째, 귀순 동독군에 대한 설문조사, 일곱째, 동·서독을 왕래하는 상호 방문자들을 활용하는 우회적인 동독 내 인권침해 사례수집 등이 그것이다.¹⁶⁵

이러한 서독의 중앙기록보존소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 자유를 갈구하는 동독 주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싹틔우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며, 또한 서독 정부의 전체 독일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나아가 이는 실질적으로 통일후 체제범죄청산의 자료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¹⁶⁶

164. Heiner Sauer/Hans-Otto Plumeyer, *Der Salzgitter-Report*, 이건호 (역), 『서독 잘쓰기터 인권침해중앙기록보존소 - 동독(사회주의통일당)의 국가범죄에 대한 서독중앙기록보존소의 결산보고』, p. 28;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pp. 159-162;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역할 - 독일 사례 비교 검토,” pp. 3-4.

165. 법무부, 『통일독일의 구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pp. 162-167.

166. 위의 책, pp. 167-168. 서독의 공권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동독 지역에 거주하는 독일인을 보호하기 위한 동 기관의 활동은 물질·인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정부에 가져다 준 충격은 심대하였다. 동 기관은 동독이 붕괴될 때까지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을 기다리면서 동독에 거주하는 독일인의 인권을 지키고 체제범죄를 감시한 조용한 파수꾼의 역할을 한 것이다.

나. 교회와 교회 관련 조직

앞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동독 사회에서 교회의 이중적 역할(한편으로는 동독 정권에 협력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 저항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할은 동독의 인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왜냐하면 교회는 동독 내에서 상대적인 정치적 자율성을 통해 동독 정권의 협박과 파괴로부터 보호될 수 있었던 유일한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동독 정권이 들어설 당시 약 92%의 동독 주민들이 기독교 또는 카톨릭을 믿는 신자들이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동독에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맑스-레닌주의의 무신론에 입각한 동독 정권에게 교회는 적이었다. 이에 동독 교회는 일상생활에서 정권의 탈종교정책을 받아들여야 했다. 서독의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동독의 교회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었던 점은 통일 이전에 설정된 교구 때문이었다. 교구는 동·서독 분단 이전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동·서독을 포함하는 교구가 있었다. 독일 카톨릭은 1995년에서야 동독 지역에 3개의 교구 막데부르크(Magdeburg), 에어푸르트-마이닝엔(Erfurt-Meiningen) 그리고 괴를리츠(Görlitz) 교구를 신설함으로써 동독 지역의 교구를 정비하였다. 그 이전까지 공식적으로 동독의 에어푸르트는 서독의 풀다(Fulda), 동독의 마이닝엔은 서독의 뷔르츠부르크(Würzburg) 그리고 괴를리츠는 폴란드의 브레스라우(Breslau) 교구에 속하였다. 또한 대교구(Erzbitum)인 서독의 파더본(Paderborn)에 속하였던 동독의 막데부르크가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에도 여전히 파더본에 속하였고 이는 동·서독간의 연대감을 유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호네커 정권하에 동독 정권은 바티칸에 동독과 서독이 포함된 교구를 재지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동독 정권이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독일의 2국가 체제를 인정받으려는 인

상을 피하기 위해 호네커 정권은 이를 망설였다.¹⁶⁷

동독의 기독교 교회는 정부의 교회정책을 받아들여 1969년 개신교 교회연합(BEK)을 설립하였다. 1971년 ‘사회주의에서 교회(Kirche im Sozialismus)’라는 모토가 생겨났고 교회는 국가질서에 순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목사들은 동독 정권의 종교통제와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동독의 교회목사인 오스카 브뤼제비츠(Oskar Brueselwitz)는 1976년 동독의 교회정책에 항의하기 위하여 분신 자살하였다.

소련점령 지구와 동독의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서독과의 교류를 통해 이득을 보았다. 교회를 건립할 때 서독 교회는 건축자재를 지원하였고 교회시설의 보수 그리고 신학대학교 교원, 목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서독 교회의 지원 덕분에 교회출판사와 교회신문은 폐간되지 않고 신문을 계속 발행할 수 있었고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갖추었다. 이를 통해 동독의 교회는 공산 독재정권에 반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Autonomie)을 확보할 수 있었다.¹⁶⁸

1960년대 이미 교회는 대체복무제도(Wehrersatzdienst, Bausoldaten 소위 건설병제도)를 위해 투쟁하였다. 교회에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동독 교회의 투쟁은 학교교육의 이데올로기화 반대 투쟁으로 이어졌다. 학교의 이데올로기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9학년과 10학년에 군사수업(Wehrunterricht)을 강제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교회의 반대 투쟁이었다.¹⁶⁹ 또한 헬싱키 최종의정서의 서명을 통해서 자유와 인권정책에

¹⁶⁷- Joachim Goertz, *Kirche und Menschenrechte in der DDR* (Horch und Guck, 1995), pp. 68-76.

¹⁶⁸- Manfred Stolpe, “Universale Menschenrechte,” in: Lewek, Christa/Stolpe, Manfred/Garstecki(Hrsg.), *Menschenrechte in christlicher Verantwortung* (1980), pp. 51-62.

¹⁶⁹- 동독 교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투쟁과 교육의 이데올로기화에 대한 저항과 관련하여

대해 동독의 교회 역시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새로 나타난 자유운동 그룹들은 점차 교회의 보호 아래 집회와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자유운동과 함께 새로 결성된 환경운동 그룹 역시 교회의 후원 하에 서독의 환경운동 단체와 녹색당과 교류하였다. 환경운동 그룹의 이러한 서독과의 교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재를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서독의 대표들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류하였기 때문이다. 동베를린의 환경도서관(Umwelt-Bibliothek), 라이프치히에 소재한 니콜라이 교회(Nikolaikirche)의 자유를 위한 예배(Friedensgebete) 그리고 베를린의 게트제마네 교회(Gethsemane-Kirche)는 점차 발전하는 저항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¹⁷⁰

동독에서 교회활동을 종합해 보면 교회의 이중적 역할로 정리할 수 있다. 교회의 자율성은 서독의 교회로부터 후원받은 물질적 지원과 교인들의 믿음에 기인한다. 동독의 개신교 교회는 동독 정권의 지도 방침에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동독 정권의 종교 지도(Kirchenleitung)를 통한 교회의 자발적 순응 역시 동독의 교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동독 정권의 지도에 따라 국가보위부 요원들은 강력한 교회 파괴 공작을 벌였다.¹⁷¹

여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권형진, “저항과 타협의 사이에서: 동독의 건설병(Bausoldaten),” 『역사학연구』, 43 (2011).

¹⁷⁰- Patrik Von zur Mühlen. Repression und Opposition in der DDR der achtziger Jahre und ihre Wahrnehmung in der Bundesrepublik, in: Friedrich-Ebert-Stiftung (Hrsg.), Politische Repression in der SBZ/DDR und ihre Wahrnehmung in der Bundesrepublik : Vorträge einer Sektion auf dem Berliner “Geschichtsforum 1949-1989-1999. Getrennte Vergangenheit-gemeinsame Geschichte?” am 29. Mai 1999, Bonn 1999, Reprint im Internet : <<http://www.fes.de/fulltext/historiker/00660002.htm#LOCE9E3>> (Zugriff am 30.7.2013).

¹⁷¹- Klaus·Schroeder, *Der SED-Staat: Geschichte und Strukturen der DDR*, pp. 483-485.

그러나 동독 교회의 목사들은 1989년에 발생한 동독의 평화혁명과 반정부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들이었다. 카톨릭 교회는 동독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서독 카톨릭 교회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많은 동독의 교회가 저항운동과 인권개선의 중심이 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인권정책 초기 인권활동가와 독일 정당의 동부사무소

2차 세계대전이 종전 후 독일은 4대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의 점령지구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1949년에 동독과 서독 정부가 수립되었다. 국가 형성 과정기에 동독과 서독에서 복구가 가장 시급한 정권의 과제였다. 4대 전승국에 의해 분할된 베를린 시는 1950년대 냉전의 도화선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서베를린은 동독을 탈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난처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 정부조직은 아니었지만 소련 점령지구와 후에 동독이 된 지역의 인권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두 개의 민간조직이 있었다. 이 두 조직은 비인도성과 싸우는 투쟁단(Kampfgruppe gegen Unmenschlichkeit: KGU)과 잘츠기터 중앙문서기록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법률가 조사위원회(Untersuchungsausschuss freiheitlicher Juristen: UFG)였다. 이 두 민간조직은 서독의 정치기구와 정보기관의 후원을 받았다.

(1) 비인도성과 싸우는 투쟁단

비인도성과 싸우는 투쟁단(UFG)은 1948년 라이너 힐데브란트(Rainer Hildebrandt)와 나중에 연방헌법재판소 소장이 된 벤다(Ernst Benda)가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다. 벤다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동

베를린에 소재한 훔볼트 대학에 입학하였고 마지막 자유선거를 통해 구성된 학생위원회(Studentenrat)의 구성원이었다. 벤다는 동독 정권의 탄압으로 서독으로 오기 전까지 이 학생위원회에서 일을 하였다. 비인도성과 싸우는 투쟁단은 2차 세계대전 후 소련 점령지구에서 소련의 비밀경찰과 나중에 동독의 인민경찰에 구속되거나 부헨발트와 작센하우젠과 같은 특별수용소(Speziallager)에 구금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 특별수용소는 공식적으로 나치주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들이었으나 반공주의자들 역시 이 특별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이들은 높은 형량과 가혹한 고문으로 인해 대부분 수용소에서 사망하였다. 소련점령지구와 그 후 동독 지역에서 비인도성과 싸우는 투쟁단은 전단지 살포와 표어를 적은 낙서를 통해 동독 지역에서 직접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정치적 운동을 수행하였다.

동독 정권은 비인도성과 싸우는 투쟁단이 서독의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은 테러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02년까지도 비인도성과 싸우는 투쟁단은 전직 동독의 국가보위부 요원이 쓴 책에 서독의 정보기관에 의해 동베를린에 조직된 간접조직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⁷² 이는 사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비인도성과 싸우는 투쟁단은 그 당시 동독의 소련 점령권력에 맞서 동독의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연방정치청(Bu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과 로베르트 하버만 재단(Robert-Havemann-Gesellschaft)은 동독에서 청소년들의 반체제 운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전단지 살포, 신문, 플랜카드는 서독에서 지원되었다. 그러나 동독의 저항운동이 서베를

¹⁷²- Reinhard Grimmer, et al, *Die Sicherheit. Zur Abwehrarbeit des MfS* (Berlin: edition ost. 2002).

린에 의해 조직화 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비인도성과 싸우는 투쟁단의 일원이었던 핀(Finn)씨의 회상에 따르면 동독의 악랄한 공산당 간부에게 비인도성과 싸우는 투쟁단은 이 간부의 행적을 기록 하였고 이러한 기록은 통일 후에 이 간부를 처벌하는데 이용될 것이라는 협박 편지를 보냈다. 이러한 비인도성과 싸우는 투쟁단의 활동은 동독 정권의 철저한 감시와 추적을 받았다. 1951년 200명의 비인도성과 싸우는 투쟁단원이 구속되어 이중 42명이 비밀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되었다. 나머지 단원들은 시베리아에 있는 보르쿠타 굴락(Gulag Workuta)에 대부분 강제 이주되었다. 굴락으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은 아테나워 수상이 소련과 맺은 협정에 따라 독소전 참전 군인들과 함께 석방되었다. 1955년 비인도성과 싸우는 투쟁단에 대한 공개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사형선고가 다시 내려졌다. 1953년 6월 17일 민주항쟁 이후 동독 정권의 공고화로 인해 국가보위부는 비인도성과 싸우는 투쟁단을 해체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1959년 3월 동독 정권이 벌인 반체제 조직에 대한 테러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비인도성과 싸우는 투쟁단은 스스로 해산하였다. 당시 서독과의 접촉을 이유로 14명이 사형을 선고받아 처형되었고 73명에게 1,330년의 노동형과 397년 수감형이 각각 선고되었다.¹⁷³

(2) 자유법률가 조사위원회

자유법률가 조사위원회(UFJ)는 1949년 10월 베를린의 소련 점령지구

¹⁷³- Gerhard Finn, Die Widerstandsarbeit der Kampfgruppe gegen Unmenschlichkeit, in :Gerhard Finn et al. (Hrsg.) *Unrecht überwinden - SED-Diktatur und Widerstand, Aktuelle Fragen der Politik* 38, Sankt Augustin: Konrad-Adenauer-Stiftung, pp. 23-32, im Internet: <http://www.kas.de/wf/doc/kas_685-544-1-30.pdf> (Zugriff am 30.7.2013).

자유 변호사협회(Vereinigung Freiheitlicher Juristen der Sowjetzone e.V.)의 하부 조직으로 출발하여 동독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폭로하고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에 활동을 집중하였다. 이 조직의 기능은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와 유사하여 오늘날 중앙문서기록서의 전신이라고 불린다. 1969년 6월 자유법률가 조사위원회는 전독일연구소와 합쳐졌다. 자유법률가 조사위원회는 동독에서 인권침해를 본 목격자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동독에서 인권침해와 관련한 정황증거(Indizien)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자유법률가 조사위원회는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기 전 동독 주민들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자문 활동을 벌였다. 총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유법률가 조사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이러한 법률자문을 통해 자유법률가 조사위원회는 동독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인권 현황과 관련한 막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서베를린의 마리엔펠데(Marienfelde)에 있는 임시수용소에 자유법률가 조사위원회는 동독의 이탈주민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보관하기 위한 문서고를 만들었다. 자유법률가 조사위원회는 수집된 자료를 통해 공산당 간부의 인권침해 정도에 따라 유죄카드와 확정카드 두 종류의 카드로 분류하였다. 동독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총 123,000의 자료가 자유법률가 조사위원회에 의해 수집되었다. 이러한 동독 인권침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자유법률가 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를 범한 동독의 국가간부와 공산당 간부들의 리스트가 적힌 기소장을 출판하였다. 자유법률가 조사위원회에 수집되고 분석된 정보는 서독에서 인사기록으로 사용되었다.

비인도성과 싸우는 투쟁단과 마찬가지로 자유법률가 조사위원회는 서독의 간첩기관으로 동독의 탄압을 받았다. 자유법률가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동독 정권은 자유법률가 조사위원회 회원을 납치, 살해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자유법률가 조사위원회 회원이었던 발터

린제(Walter Linse)사건이 있다. 린제는 납치되어 1952년 동베를린으로 강제로 끌려갔으며 이듬해 1953년 모스크바에서 처형당했다.¹⁷⁴

(3) 쾨니히슈타이너 그룹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소위 비인도성과 싸우는 투쟁단과 자유법률가 조사위원회 비교될 수 있는 조직은 독일정책에 주요한 자문 역할과 동독 이탈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한 쾨니히슈타이너 그룹(Königssteiner Kreis: KK)이 있다. 쾨니히슈타이너 그룹은 1949년 쾨니히슈타인에서 설립되었으며 정치인, 법률가, 공무원 그리고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모인 초당적 기구였다. 쾨니히슈타이너 그룹은 자신들이 그룹을 스스로 해체한 1997년까지 존속하였다. 이 조직의 상임위원에는 전 튀링겐 주 대통령 브릴(Hermann Brill, 사민당), 전할레 시장 리저(Theodor Lieser, 자민당), 연방실향민 장관 루카셱(Hans Lukaschek, 기민당) 그리고 튀링겐 주 고등법원 부원장인 마겐(Karl Magen, 기민당) 등이 있었다. 이들 쾨니히슈타이너 그룹 상임위원 모두 소련 점령지역에서 통일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어서 동독 이탈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쾨니히슈타이너 그룹이 비인도성과 싸우는 투쟁단과 자유법률가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구분 되는 점은 이들이 주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대신 소련 점령지역을 탈출한 엘리트

¹⁷⁴ Frank Hagemann, "Die Drohung des Rechts" - Der Kampf des Untersuchungsausschusses Freiheitlicher Juristen, in: Gerhard Finn et al. (Hrsg.) *Unrecht überwinden - SED-Diktatur und Widerstand*, Aktuelle Fragen der Politik 38, Sankt Augustin: Konrad-Adenauer-Stiftung, pp. 33-46, im Internet: <http://www.kas.de/wf/doc/kas_685-544-1-30.pdf> (Zugriff am 30.7.2013).

로서 간접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자문을 통해 동독의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였다는 점이다. 총 900명 남짓의 쾨니히슈타이너 그룹의 회원 모두는 동독 이탈주민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작은 연합체의 성격이 강하였고 이들은 모두 강한 조직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초기 쾨니히슈타이너 그룹은 전독성의 지원을 받았다. 쾨니히슈타이너 그룹 내에 헌법위원회와 별도로 경제 자문그룹 그리고 1954년에는 법률 자문그룹이 각각 조직되었다. 헌법위원회는 독일정책과 관련하여 초대 총리 아테나워에게 자문을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자문을 통해 아테나워의 독일정책과 대동독 인권정책은 서독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대결적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쾨니히슈타이너 그룹의 회원들은 수상 아테나워 뿐만 아니라 전독성, 연방법무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쳤다. 독일이 분단된 이후 많은 동구권(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과 동독 출신 이주민 단체들이 서독에서 생겨났고 쾨니히슈타이너 그룹은 이들 이주민단체와의 경쟁으로 인해 다른 이주민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동독 이탈주민의 수용소 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베를린 장벽 건설로 인해 동독 주민들의 탈주도 점차 줄어드는 것과 사민-자민당 연정의 출범으로 인한 새로운 긴장 완화 정책은 쾨니히슈타이너 그룹의 활동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쾨니히슈타이너 그룹은 동독 공산당 독재체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후원하는 일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였다.¹⁷⁵

(4) 서독 정당의 동부사무소

소련점령 지구에서 소련화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대동독 인권정책

¹⁷⁵- Ilse Mittag, *Königsteiner Kreis 1959-1969 10 Jahre aus der Arbeit* (Wiesner Verlag, 1970).

과 관련하여 서독에서 설립된 최초의 조직은 사민당의 동부사무소(Ostbüro der Sozialdemokratischen Partei Deutschlands)였다. 사민당의 동부사무소는 소련 점령지구에서 사민당의 정치적 활동이 불법화 되었던 1946년 하노버(Hanover)에서 설립되었다. 당시 하노버에는 사민당의 동독 이탈주민을 위한 시설이 있었다. 사민당의 동부사무소는 동독 이탈주민의 보호, 동독의 비민주적 조치와 인권침해 대한 저항운동 세력의 지원과 협력, 정치범의 구호활동과 이들 가족의 후원, 풍선을 통한 동독 지역의 전단지 살포 등의 활동을 하였다. 풍선을 통해 동독 지역으로 넘어간 전단지의 내용에는 공산당 독재정권에 대한 정보, 독재정권의 일반주민 탄압, 인권침해 그리고 공산당과 사민당의 강압적인 합당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당시 동독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사민당 동부사무소와 협력을 하였다는 죄로 많은 사람들이 공개재판을 받았다. 브란트가 총리가 된 이후 사민당 동독의 사민당 지하당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던 동부사무소를 폐쇄하였다. 왜냐하면 사민당의 동부사무소는 대표적인 냉전적 조직이라고 사민당 지도자들은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¹⁷⁶

기민당의 동부사무소는 초대 수상 아테나워 정권에서 전독성 초대 장관을 지낸 야콥 카이저(Jakob Kaiser)의 서베를린 사무소에 기원을 두고 있다. 기민당 동부사무소는 소련 점령지역과 그 이후 동독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기민당 당원을 후원하였다. 기민당의 동부사무소의 역할은 사민당의 동부사무소와 유사한 과제를 수행하였다. 특히 기민당 동부사무소는 일간신문 “Der Tag”을 1948년에 창간하여 비밀리에 이 신문을 동독 지역에 배달하여 공산당 독재와 독재정권의 인권탄압을

¹⁷⁶- Dennis·Bark·David Gress, *A History of West Germany*, 서지원(역), 『도이치 현대사 4』, pp. 40-41.

동독 주민에게 알렸다. 또한 기민당 동독 사무소는 잡지 “Der Kleine Tag,” “Der Wellenbrechter” 그리고 “Das deutsche Monatsblatt”를 계속 창간하여 동독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1952년부터 국경폐쇄가 더욱 강화되어 신문을 동독 지역에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기민당 동부사무소는 풍선에 전단지 등을 넣은 방법을 통해 동독 공산당 독재와 인권문제를 동독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동부기민당 사무소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소련 점령 지구와 동독에서 146명의 기민당원이 구금되었고 그 중 3명의 당원에게는 사형과 장기형이 선고되었다. 기민당 그리고 사민당과 마찬가지로 자민당(FDP)과 독일 노동조합연맹(Deutsche Gewerkschaftsbund) 역시 동부사무소를 가지고 있었다.¹⁷⁷

라. 서독과 동독의 인권조직

전독성의 전신조직으로 앞서 기술하였던 인권단체, 서독 정당들의 동부사무소는 대동독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브란트 총리가 집권한 후 독일정책에 있어 큰 변화가 나타났다. 긴장완화정책으로 인해 반공주의에 기반을 둔 민간 인권단체의 활동에 있어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 건설 또한 동독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많은 단체의 활동을 꺾어줄게 만들었다. 이에 동독 주민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수행되었던 인권단체의 많은 활동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새로 들어

¹⁷⁷- Wolfgang.Buschfort, Die Ostbüros der Parteien in den 50er Jahren (=Schriftenreihe des Berliner La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Bd. 7). 3., unveränderte Auflage, Berlin: Der Berliner La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2006.

선 시민-자민 연정은 반공주의에 기초한 인권단체의 활동에 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민-자민 연정은 이러한 반공주의에 기초한 대결적 인권단체의 활동이 동독과의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동독의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려고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자민당 연정에서 동독의 인권문제를 진공상태로 만들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대한 논쟁이 커졌던 1972년 국제인권협회(Internationale 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e: IGMF)가 게르스트마이어(Cornelias Gerstenmaier)와 13명의 명망가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초창기 국제인권협회는 동유럽과 동독의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폰 합스부르크(Otto von Habsburg), 뢰벤탈(Gerhard Löwenthal) 그리고 에어하르트(Luwig Erhard) 전 총리 같은 덕망 있는 정치가들이 보수인사를 대표하여 국제인권협회에 참여하였다. 오늘날 국제인권협회는 독일 내에서만 약 3,000명의 회원이 있으며 26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30,0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국제조직이 되었다. 또한 국제인권협회는 유럽의회에서 감시권과 유엔의 경제·사회회의에서 자문권을 가지고 있다.¹⁷⁸ 국제협회의 첫 번째 활동은 동독의 해외여행자 신청자에 대한 것이었다. 베를린 장벽 건설로 인해 1961년 이후부터 외국으로 여행하고 싶은 동독의 주민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외국여행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했다. 동독 주민이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신청자 본인은 물론 신청자의 가족,

¹⁷⁸. Günter Platzdasch-Rainer Fromm. Die sogenannte Internationale 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e Eine rechte Grauzonenorganisation Wiesbaden (Hrsg. Büro der Stadtverordnetenversammlung 1990). Mit aktuellem Vorwort 2009, Dokument zur NTS/CIA-Connection und F.A.Z. - Artikel vom 11. Juli 2012, im Internet: <<http://www.platzdasch.homepage.t-online.de/download/igfm.pdf>> (Zugriff am 30.7.2013).

친척 그리고 친구들 또한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따라서 1961년 이후 동독 주민의 해외여행에 관한 권리문제가 중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인권협회는 1989년까지 총 220건의 사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동독 정부에 해외여행 신청자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지하라는 내용이 든 편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국제인권협회는 동독 주민의 해외여행 이외에도 정치범 석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동독 출신 정치범들 중에서 연방 국회의원 혹은 유럽의회 의원이 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인권협회는 이들 국회의원의 도움을 통해 정치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국제인권협회는 1972년부터 1990년까지 10,000명이 넘는 동독의 정치적 피해자 사례를 담당하였고 이 중에 약 1,500건이 정치범 수용소의 재소자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국제인권협회가 조사한 중요한 자료 가운데에는 동독에서 대표적인 인권침해 가운데 하나인 강제입양(Zwangsadoptionen, 1977), 1982년 국경선에 설치되었던 자동발사시설(Selbstschussanlagen)에 관한 조사가 있었다.¹⁷⁹

4.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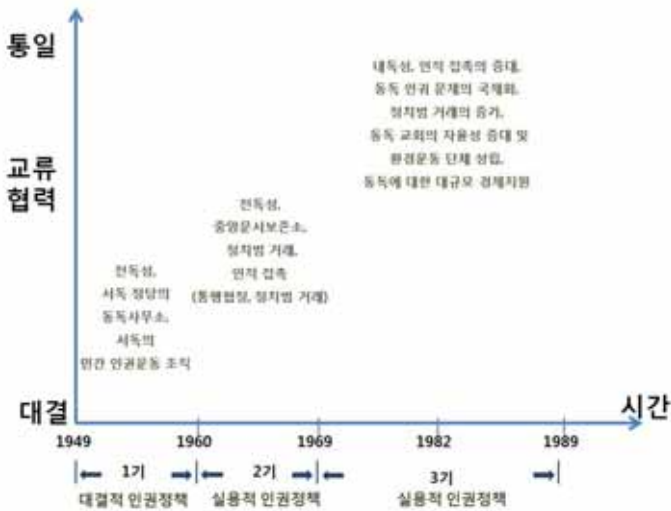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아테나워 정권하에서 전독성을 중심으로 대결적 인권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전독성 초대 장관인 카이저를 중심으로 한 동독 지역 출신들이 대동독 인권정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전독성은 반공주의자들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 인권단체들을 지원하였다. 자유법률가 위원회, 비인도성과 싸우는 투쟁단, 쾨니히슈

¹⁷⁹- Haus der Geschichte (Hrsg.) (ohne Jahr).Bürgerbewegungen: 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 (IFM), im Internet:<<http://www.hdg.de/lemo/html/DasGeteilteDeutschland/NeueHerausforderungen/Buergerbewegungen/initiativeFriedenUndMenschenrechte.html>> (Zugriff am 30.7.2013).

타이너 그룹, 그리고 정당의 동독 사무소가 동독의 인권문제를 제기했던 대표적인 인권운동 조직이었다. 그러나 1961년 베를린 장벽 건설은 동독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던 민간 인권단체 운동을 위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데탕트의 도래로 대결적 인권활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베를린 장벽 건설은 분단을 고착화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통일을 주장한 아데나워의 독일정책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분단의 공고화로 인해 큰 정치적 주제인 통일보다 현실적이고 가능한 것부터 해보자는 실용적인 생각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용적 정책의 화두가 바로 이산가족 상봉, 사람과 정보의 교류, 동독에서의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중앙기록보존소 그리고 정치범 거래와 같은 인권문제였다. 실용적 대동독 인권정책으로의 전환은 브란트 총리의 등장 이후 독일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69년 정권교체와 함께 등장한 브란트 총리의 독일정책은 인권문제의 외연을 인적 접촉(통행협정, 우편협정)을 넘어 동·서독 교류와 협력으로 확장하였다. 브란트 총리가 동독과의 관계 개선을 이산가족 상봉, 동·서독인의 방문과 같은 인권문제를 기초로 확대하였다면 뒤를 이은 슈미트 총리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동구와 서구의 관계의 개선, 동독 인권문제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슈미트 정권은 헬싱키 최종의정서에 서명하고 이에 동독이 참여하면서 동독 인권문제의 국제화에 기여하였다. 10년 이상 야당으로 대동독 인권정책에 소외되었던 기민/기사당이 1982년 정권을 다시 잡게 되었다. 그 동안 실용적 인권정책을 줄곧 반대해 온 기민/기사당 정권은 브란트-슈미트 총리의 독일정책을 계승하였다. 콜 정권에서 급격히 증가한 정치범 거래와 동독에 제공된 대규모의 경제차관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콜 정권의 실용적 인권정책의 계승은 독일이 통일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결국 독일통일 과정은 이산가

족의 만남과 동·서독의 교류라는 작은 문제부터, 동·서독 지역간 협력, 문화교류, 서독의 대규모 경제지원 그리고 통일로 이어진 인권정책의 외연 확대 과정임을 잘 보여 준다. 지금까지 기술한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그림 VI-5 시간에 따른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발전



VII. 결론: 과정과 문화적 차원에서의 대동독 인권정책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40년간의 독일정책을 ‘인권’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면 독일통일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강조한다. 서독 정부의 대결적 독일정책이 실용적 독일정책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추상적인 통일 논의를 버리고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구체적인 인권문제에 집중한 서독 정부의 인식전환이었다. 브란트 총리가 강조한 작은 보폭의 정치(Politik der kleinen Schritte)는 바로 통일의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브란트 자신이 서베를린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분단의 고통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적접촉 문제를 중심으로 동독 정권과 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사람과 정보의 교류 그리고 경제지원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인권을 통한 독일정책의 재해석을 통해 독일통일은 인적접촉 → 인적교류 → 교류확대 → 경제지원 → 통일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으로서의 특징이 드러난다. 이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인권문제가 핵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의 신뢰는 이산가족 상봉, 분단의 고통 문제라는 작고 해결가능한 문제에서 시작하여 인적교류, 교류확대, 경제지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독일통일의 과정이 증명하고 있다. 현 정부 대북정책의 화두가 국민행복, 창조성,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분단고통의 완화, 인식의 전환 그리고 과정적 접근이라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3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모범적인 정책 사례이다. 따라서 인권을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된 독일 통일정책의 역사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상상력을 제공하는 통일교육의 장이다. 이에 대북 인권정책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는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사례를 보다 면밀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¹⁸⁰

둘째,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일관된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그

림 VI-5).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역사는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동독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였던 서독 정부의 노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야당 시절 끊임 없이 긴장완화 정책을 비판한 기민당은 집권 후 사민당의 실용적 독일정책과 인권정책을 계승하였다. 콜 정권하에서 동독의 정치범 석방이 정점을 이룬 것(그림 VI-3)과 인도적 개선을 위한 차관제공은 대동독 인권정책의 연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보수 정당인 기민/기사당이 대동독 인권정책에서 사민당 못지 않은 성과를 낸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국군포로와 북한의 정치범들을 Freikauf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북인권정책에 과감한 경제지원 전략을 연계하여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개선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우리는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발전과정에서 서독 정부는 동독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둔 나머지 동독의 인권개선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진보적인 정권인 사민-자민 연정에서 뿐만 아니라 보수 정권인 콜 정부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실용적 인권정책은 대결적 인권 개념에서 탈피하여 동독 주민들의 인권개선과 분단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대안 모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용적 인권정책을 통해 동독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는지는 의문이

180. 특히 연구진들이 제시한 방법인 독일 통일연구와 동독 일상사 연구의 결합은 독일 통일 연구에 있어 다양한 관점과 보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통일정책 전략을 설계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통일 연구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독일 학자들이 발전시킨 학제간 연구방법을 통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한국과 독일의 통일에 관한 비교 연구를 위해 베를린 자유대학교 동독 연구소(Forschungsverbund SED-Staat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와 한국의 통일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이는 인도적 문제 해결이 동독의 인권개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규범적 비판과 인권침해를 개선할 수 있는 압박 수단들이 필요하다.¹⁸¹

넷째, 서독의 실용적 인권정책의 내용은 정치가 혹은 관료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 분단의 현장에서 살았던 서독 주민들의 목소리에서 나왔다.¹⁸² 당시 서베를린 시장 브란트는 물론 기민당 원내 총무 바르첼(Rainer Barzel) 역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인권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 인권정책에서 남북한의 일반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소외되어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대북 인권정책의 주제가 통일, 정치범 수용소 문제와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대북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일반주민, 북한이탈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으며 해결하기 쉬운 탈관료적인 주제를 찾아야 할 것이다.¹⁸³ 정치범과 정치범 수용소 인권문제는 북한인권문제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지만 하나 북한 일반주민들이 공감하기는 어려운 주제일 뿐만 아니라 남한 주민들에게 있어 너무 정치화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일반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인 연좌제, 장마당의 인권, 직장생활과 학교의 인권, 북한 이탈주민들의 인권문제를 통해 대북인권정책을 탈정치화

181. 이동기, “평화와 인권: 서독 정부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대북 인권정책을 위한 함의,” p. 64.

182. 동베를린을 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서베를린 주민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 VI-4>을 참조할 것.

183. 특수주의(Particularism), 과학주의(Scientism), 기술주의(Technologism)에 기초한 관료제에서 창의적인 정책이 나오기는 어렵다. 창의적인 정책을 위해 상상(Imagination), 해체(Deconstruction),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 그리고 타자성(Alterity)이 관료제에 필요하다. David John Farmer, *The Language of Public Administration: Bureaucracy, Modernity, and Postmodernity*, 강신택(역), 『행정학의 언어』 (박영사: 서울, 1999).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나치게 정치화 된 북한인권 주제는 남한의 주민들에게 이미 잘 알려졌기 때문에 큰 관심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남한의 주민들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교육과 북한의 인권문제를 연계하는 프로그램(북한 생활총화, 학교, 수용소 체험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¹⁸⁴

다섯째, 서독의 실용적 인권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동·서독 관계의 예측 가능성 증대이다. 서독 정부는 인권문제를 지렛대 삼아 동독과의 교류와 협력에 나섰다. 동독 정권 또한 인권문제를 거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서독 정부가 마련한 대화의 장에 나섰다. 서독 정부는 동독의 인권개선을 위해 동독 정부가 요구한 필요한 조치를 들어주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은 인권을 매개로 40년간 서독과 동독의 주고받기 게임(거래 혹은 계약: Contact)¹⁸⁵이라고 볼 수 있다. 인적 접촉에서 출발한 서독의 인권정책은 1980년대 대규모 경제지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당시 만성적인 외화부족에 시달렸던 동독 정권은 경제지원의 댓가로 서독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독일통일의 역사적 경험은 우리 정부 역시 인적접촉문제를 경제지원의 연결고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개성공단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은 남북관계에서 예측 가능성의 증대를 잘 보여주

184. 북한이탈주민 H 와의 인터뷰(2013. 8. 30), 북한이탈주민 I 와의 인터뷰(2013. 9. 3), 김병로 교수(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와의 인터뷰(2013. 9. 1).

185. 이동기 교수에 따르면 우리는 악마(공산주의)와 춤을 회피하지 않고 같이 춤을 추어야 한다. 인권의 문제는 바로 악마와 춤을 추게 만드는 매개체이다. 인권문제를 점차 확대하여 악마(공산주의 국가)가 우리(자유주의 국가)의 리듬에 따라 춤을 추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권정책이다. 이동기 교수가 말한 리듬의 비유는 겐셔가 말한 예측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주고 받는 원칙(교환)은 시장체제 혹은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결국 인권정책을 통해 공산주의는 자유주의에 리듬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냉전을 극복한 지난 40년 동안의 유럽 역사이다(이동기 교수와의 인터뷰, 2013. 9. 13).

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 사업인 “DMZ 세계평화공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 사업을 이산가족 상봉, 남북 문화교류 사업 등과 같은 인권문제의 연결고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보다 효과적인 대북인권정책을 위해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동독 주민들과의 면접을 중심으로 동독의 인권 실재를 재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인권 개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집단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문화의 특성은 일방적 관계가 아닌 쌍방향적 소통 구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관점에서 대북인권정책은 먼저 북한의 인권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하자는 것이다. 북한 인권의 메커니즘 이해를 통해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대북인권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남한과 북한 두 사회의 인권 개념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할 수 있는 통문화적 전문가가 필요하다.¹⁸⁶

이 연구는 학제적 접근법, 독일정책과 대동독 인권정책과의 연관성 연구, 동독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행위자적 접근, 동독 주민들과의 심층면접을 활용하여 동독의 인권상황을 재구성하고자 한 점이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와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

186. 쌍방향적 소통(관계)을 강조하는 문화적 차원에서 통일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최근 독일 문화계에서 동독 출신의 젊은 예술가들이 두각을 보이는 현상은 이를 잘 보여준다. 왜냐하면 동독 출신의 젊은 예술가들은 서독과 동독 사회 모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독 출신의 예술가보다 표현할 수 있는 수단(언어)이 풍부하다. 문화의 쌍방향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안지호·현주. “독일 한인간호사들의 간문화성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23(1) (한독사회과학회, 2013).

고자 한다. 우선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인권 정책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기술하고 있지만 정부 측 행위자, 민간 측 행위자 그리고 소위 제 3섹터에 해당하는 행위자들이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고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인권정책 행위자들에 대한 관계론적 접근이 부재하고 있다.¹⁸⁷ 둘째, 모든 해외 정책 사례에 대한 연구는 재귀성¹⁸⁸을 띠고 있듯이 이 연구 역시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한 인권정책에 대한 내용이 빠지게 됨으로써 서독과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없었다. 인권정책에 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연구를 통해서만 보다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북한 인권정책 전문가, 인권활동을 하는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일반 탈북자들과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연구에서 빠진 대북 인권정책과 이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보완하려고 하였다.¹⁸⁹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학제적 연구를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경제학, 법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역사학)이 대동독 인권정책 문제를 중심으

187.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국회의 독일정책위원회 의장(Vorsitzender der Arbeitsgruppe Deutschlandpolitik)이었던 린트너(Eduard Lintner) 전 연방차관과 인터뷰를 하지 못한 것은 서독의 독일정책과 대동독 인권정책의 관계적 접근과 관련되어 아쉬운 부분이다.

188. 비교연구의 재귀성에 관하여 다음 논문을 참조 할 것. 안지호, “비교행정 연구의 논리: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1(1)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3), pp. 80-81. 비교연구의 재귀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저서를 참고할 것. Dogan, Mattei-Pelassy, Dominique, *How to Compare Nations: Strategies in Comparative Politics*, 김종필·정기웅 (역),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비교정치연구의 전략』, (서울: 진영사, 1992).

189. 이 자리를 빌어 이 연구에 이론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내용까지 자문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김병로 교수님, 강릉대학교 역사학과의 이동기 교수님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연구책임자의 경험 부족과 연구 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연구가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에 대한 일종의 파일럿연구(Pilot Study)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연구의 한계점은 자연스럽게 후속 연구의 과제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연구의 미비한 점들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 보고 싶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민족통일연구원, 1997.
- 김영운·양현모 편.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 통일』, 통일부, 2009.
- 김철수. 『독일통일의 정치와 헌법』. 서울: 박영사, 2004.
- 박경서·서보혁. 『헬싱키 프로세스와 동북아 안보협력』. 한국학술정보, 2012.
- 박찬운. 『인권법』. 서울: 한울, 2011.
- 법무부. 『국제인권조약자료집』. 법무부, 1994.
- _____.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 연구』. 법무부, 2008.
- _____. 『통일독일의 구동독 체제불법청산 개관』. 법무부, 1995.
- 손기웅.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1』. 서울: 늘품 플러스, 2009.
- 외교통상부. 『OSCE개황』. 외교통상부, 2010.
- 이건호 譯. 『서독 잘쓰기터 인권침해중양기록보존소 - 동독(사회주의통일당)의 국가범죄에 대한 서독중양기록보존소의 결산보고』,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3.
- 주독대사관.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주독대사관, 1993.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3』. 통일연구원, 2013.
- 통일원. 『독일통일백서』. 통일원, 1994.
- _____. 『독일통합연구자료집』. 통일원 1990.
- _____. 『인권관련 법규 및 동·서독 사례연구』. 통일원, 1994.
- _____. 『독일통일 실태 자료집:정치·외교분야』. 통일원. 1993
- _____. 『내독관계발전사』. 통일원. 1990.
- Auswärtiges Amt.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ihre Menschenrechtspolitik in den auswärtigen Beziehungen und in anderen Politikbereichen, 2008.
- Bark, Dennis·David Gress. *A History of West Germany*. 서지원(역). 『도이치현대사 1-4』. 서울: 비룡출판사, 2004.

-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Denkschrift, Der Bau der Mauer durch Berlin: die Flucht aus der Sowjetzone und die Sperrmaßnahmen des kommunistischen Regimes vom 13. August 1961 in Berlin*. Bonn-Berlin, 1961.
-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Die Situation der Jugend im kommunistischen Herrschaftssystem der SBZ Deutschlands in Bonner Berichte aus Mittel- und Ostdeutschland*. Bonn - Berlin, 1960.
-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Weißbuch: Die Sperrmaßnahmen der DDR vom Mai 1952: Die Sperrmaßnahmen der Sowjetzonenregierung an der Zonengrenze und um Westberlin*, Bonn, 1953.
- Buschfort, Wolfgang. *Die Ostbüros der Parteien in den 50er Jahren (=Schriftenreihe des Berliner La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Bd. 7)*. 3., unveränderte Auflage, Berlin: Der Berliner La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2006.
- Clemens, Clay. *Reluctant Realists: the CDU/CSU and West German Ostpolitik*, 권영세(역). 『서독 기민/기사당의 동방정책: 고뇌하는 현실주의자』. 서울: 나남출판사, 2010.
- Creuzberger, Stefan. *Kampf für die Einheit. Das gesamtdeutsche Ministerium und die politische Kultur des Kalten Krieges 1949 -1969*, Schriften des Bundesarchivs, 69, Düsseldorf: Droste Verlag, 2008.
- Diekmann, Kai. *Freigekauft: Der DDR-Menschenhandel*. München: Pieper, 2012
- Dogan, Mattei-Pelassy, Dominique. *How to Compare Nations: Strategies in Comparative Politics*. 김종필·정기웅 (역).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비교정치연구의 전략』. 서울: 진영사, 1992.
- Donnelly, Jack. *International Human Rights*. 2nd ed.. Boulder: Westview Press, 1998.

- Elias, Norbert. *Engagement und Distanzierung: Arbeiten zur Wissenssoziologie*, Berlin: Suhrkamp Verlag, 1983.
- Farmer, David John. *The Language of Public Administration: Bureaucracy, Modernity, and Postmodernity*. 강신탉(역). 『행정학의 언어』. 서울: 박영사, 1999.
- Gerhart Fieberg/Harald Reichenbach/Burkhard Messerschmidt/Jürgen Schmidt-Räntsch. *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sfragen (Kommentar)*.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München, 1993.
- Goertz, Joachim. "Kirche und Menschenrechte in der DDR." in: Horch und Guck, 1995.
- Görtemaker, Manfred.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n der Gründung bis zur Gegenwart*. Frankfurt a.M: Fischer Verlag, 2004.
- Grimmer, Reinhard. et al.. *Die Sicherheit. Zur Abwehrarbeit des MfS*, Berlin: edition ost, 2010.
- Gugutzer, Robert. *Soziologie des Körpers*, Bielefeld: Transcript Verlag, 2004.
- Hahn, Erich. *SPD und SED. Ein Dialog*. Berlin: Edition Ost, 2002.
- Heinrich-Jost, Ingrid. *Abenteuer Amnesty. Freiheit und Menschenwürde*. Wien: Carl Ueberreuter, 1991.
- Hillgruber, Andreas. *Deutsche Geschichte 1945-1986*. 손상하(역). 『독일현대사』. 서울: 까치, 1991.
- Kailitz, Steffen. (Hrsg.). *Gegenwart der Vergangenheit*.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8.
- Krais, Beate-Gebauer, Gunter. *Habitus*. Bielefeld: Transcript Verlag, 2002.
- Kreuz, Leo. *Das Kuratorium Unteilbares Deutschland. Aufbau, Programmatik, Wirkung*. Opladen: Leske und Budrich, 1980.
- Mazz, Hans Joachim. *Der Gefühlsstau: Ein Psychogramm der DDR*. Berlin: Argon Verlag, 1992.
- Merz, Kai-Uwe. *Kalter Krieg als antikommunistischer Widerstand. Die Kampfgruppe gegen Unmenschlichkeit 1948 -1959*. München:

- Oldenbourg, 1987.
- Mihr, Anja. *Amnesty International in der DDR. Der Einsatz für Menschenrechte im Visier der Stasi. Berlin: Ch. Links Verlag, 2002.*
- Mittag, Ilse. *Königsteiner Kreis 1959 - 1969 10 Jahre aus der Arbeit. Klagenfurt/Celovec: Wiesner Verlag, 1970.*
- Rehlinger, Ludwig A. *Freikauf Die Geschäfte der DDR mit politischen Verfolgten 1961-1989. Berlin: Ulstein, 1991.*
- Sauer, Heiner/Plumeyer, Hans Otto. *Der Salzgitter-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über Verbrechen im SED-Staat, Frankfurt/ Main: Ullstein, 1991.*
- Sauer, Heiner/Plumeyer, Hans-Otto. *Der Salzgitter-Report: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berichtet über Verbrechen im SED-Staat.* 이진호 (역). 『서독 잘쓰기터 인권침해중앙기록보존소 - 동독(사회주의통일당)의 국가범죄에 대한 서독중앙기록보존소의 결산보고』.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 Schroeder, Klaus. *Der SED-Staat: Geschichte und Strukturen der DDR. München: Bayerische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sarbeit, 1999.*
- Stolpe, Manfred. *Universale Menschenrechte*, in: Lewek, Christa/Stolpe, Manfred, *Menschenrechte in christlicher Verantwortung.*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80.
- Stöver, Bernd. *Der kalte Krieg. Geschichte eines radikalen Zeitalters 1947-1991.* München: Verlag C. H. Beck, 2007.
- UNITED NATION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History, Principles, Roles and Responsibilities.*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10.
- Volkman, Uwe. Grundrechte und Sozialismus, in: Merten, Detlef - Hans-Jürgen Papier (Hrsg.), *Handbuch der Grundrechte in Deutschland und Europa, Band 1.* 2004.
- Weinke, Annette. *Eine Gesellschaft ermittelt gegen sich selbst. Die Geschichte der Zentralen Stelle in Ludwigsburg 1958 -2008.*

-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8. *Transformation 1975 - 1990*. München: Oldenbourg, 2012.
- Wildenthal, Lora. *The Origins of the West German Human Rights Movement, 1945-1961*. University of Connecticut Digital Commons@UConn, 2004.
- Wüst, Jürgen. *Menschenrechtsarbeit im Zwielficht. Zwischen Staatssicherheit und Antifaschismus, Schriftenreihe Extremismus und Demokratie 13*, Bonn: Bouvier Verlag, 1999.

2. 논문

- 권형진. “저항과 타협의 사이에서: 동독의 “건설병(Bausoldaten).” 『역사학연구』. 제43권, 2011.
- 김동한. “햇볕정책과 북한의 인권.” 『한양법학』. 제21집(한양법학회), 2007.
- 김민서. “헬싱키 프로세스와 미국의 북한인권법.” 『국제법학회논집』. 제50권 3호 (대한국제법학회), 2005.
- 김성윤. “독일연방공화국의 대 독일민주공화국의 인권정책사례에 관한 연구.” 『정책과학연구』 제6권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1994.
- 김수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 그리고 북한인권법.” 『나라경제』. 제14권 2호. 한국개발연구원, 2012.
- _____. “헬싱키 최종의정서 이행과정 연구:인권과 바스켓3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 _____. “북한이권과 대북지원 추진 방향.” 『나라경제』. 제10권 4호 (한국개발연구원), 2008.
- 김학성.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대북인권정책과 인권문제의 세계적 추세』. KPI 연구총서. 제10회 한반도평화포럼 자료집, 2008.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대북정책로드맵2020 워크숍.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통일론의 모색: 연성복합통일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9.
- 베른하르트 젤리거. “동독 인권문제, 서독의 인권정책 및 통일 전후의 잘츠기터 인권침해사례 수집소의 역할과 성과.” 『통일과 법률』. 통권 제8호 (법무부), 2011.
- 손기웅 외. “동·서독 정치범 석방거래 및 정책적 시사점.”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 보고서, 2008.
- 손기용.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통일정세분석』 (2005-15) (통일연구원), 2005.
- 안지호. “독일 행정통합의 재고찰: 겔렌(Arnold Gehlen)의 제도론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9권 4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1.
- _____. “동·서독 관료 성향에 관한 연구: 현상학적 사회학과 해석학을 중심으로” 『정부학 연구』. 제17권 2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 _____. “동·서독 행정 비교연구 서설: 부르디외의 아비투스과 장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5권 2호 (한국행정학회), 2011.
- _____. “비교행정 연구의 논리: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1권 1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3.
- _____. “인간학으로서의 행정학을 위하여: 엘리야스의 결합태(figuration)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3권 4호 (서울행정학회), 2013.
- 안지호·현주. “독일 한인간호사들의 간문화성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3권 1호 (한독사회과학회), 2013.
- 윤여상. “북한의 인권실태와 한국정부·NGO의 역할.” 『한국발전리뷰』. 제126호 (한국발전연구소), 2003.
- _____.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역할 - 독일 사례 비교 검토”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2008.
- _____. “북한인권피해조사 및 기록보존소 설립가 운영방안.” 북한인권센터 주최 2005년 1차 정책포럼 발표논문, 2005.
- 윤여상·이건호.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범법행위 중앙기록보존소의 의미: 탈북자 인권침해기록보존소의 한 모델로서.” 『통일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06.
- 윤여상·제성호. “서독의 동독 인권침해 기록사례와 한국의 원용방안: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운영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8권 1호 (중앙법학회), 2006.
- 이동기. “동독에 대한 서독 정부의 인권정책 -서독 연방 법무부의 인권활동을 중심으로” 법무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09.
- _____. “평화와 인권: 서독 정부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대북 인권정책을 위한 합의.” 『통일과 평화』. 제3권 1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11.

- 임도빈·신혜영·안지호. “북한의 지방행정 두텁게 이해하기(Thick Understanding):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4권 3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12.
- 장영수. “동·서독 기본조약 판결.” 『판례연구』. 제7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 정용길.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관계와 남북관계에의 시사점.” 『저스티스』. 제134권 2호 (한국법학원), 2013.
- 최승완. “냉전 또 하나의 세계전쟁.” 송충기 외 저. 『세계화시대의 서양현대사』. 서울: 아카넷, 2009.
- 최진우. “독일의 통일외교정책과 한반도에의 시사점.” 통일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0.
- 최태현·박미경.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국제인권규정의 국내적 적용과 보장.” 『법학논총』. 제24집 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한용섭.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이론, 선례, 정책 대안.” 『국가전략』. 제8권 4호 (세종연구소), 2002.
- 한형건. “서독과 동독과의 법적관계 -남북한 관계와의 비교를 위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26권 2호 (대한국제법학회), 1982.
- 황준식. “국내적 인권과 국제적 인권? -인권 개념의 이중성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 제22권 3집 (한양법학회), 2011.
- Amnesty International (Hrsg.). “Menschenrechte in der DDR,” in: *AI-Journal*, Dezember 1997, Reprint im Internet: <<http://www.amnesty.de/umleitung/1997/deu05/080>>, 1997. (Zugriff am 30.7.2013).
- Amnesty International. “A Synthesis of the Learning From the Stop Violence Against Women Campaign 2004-10.”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2010.
- Bispinck, Henrik. “Die DDR im Blick der Stasi 1977.” Göttingen: Verdenhoeck Ruprecht GmbH. 2012.
- Bouvier, Beate. “Verfolgung und Repression in der SBZ/DDR von den vierziger bis zu den sechziger Jahren und ihre Wahrnehmung in Ost und West.” in: Friedrich-Ebert-Stiftung (Hrsg.), *Politische Repression in der SBZ/DDR und ihre Wahrnehmung in der*

Bundesrepublik : Vorträge einer Sektion auf dem Berliner “Geschichtsforum 1949–1989–1999. Getrennte Vergangenheit–gemeinsame Geschichte?” am 29. Mai 1999, Bonn 1999, Reprint im Internet : <<http://www.fes.de/fulltext/historiker/00660002.htm#LOCE9E2>>, (Zugriff am 30.7.2013).

Brandt, Willy. “Rede des Bürgermeisters von Berlin.” Willy Brandt, vor dem Deutschen Bundestag, 18. August 1961, in: Das Parlament, 11. Jg. Nr. 35, 23. August 1961, S. 3-4, Reprint im Internet: <<http://www.chronik-der-mauer.de/index.php/de/Media/TextPopup/day/18/id/592907/month/August/oldAction/Detail/oldModule/Chronical/year/1961>> (Zugriff am 30.7.2013).

Brauckmann, Roland. “Amnesty International als Feindobjekt der DDR.” Berlin, Schriftenreihe des Berliner La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Band 3, im Internet: <https://www.berlin.de/imperia/md/content/lstu/schriftenreihe/ai_1.pdf?start&ts=1119965951&file=ai_1.pdf,1996>. (Zugriff am 30.7.2013).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und Robert-Havemann-Gesellschaft e. V. “Schüler im Widerstand.” letzte Änderung September 2008, im Internet: <www.jugendopposition.de/index.php?id=2853, 2008.> (Zugriff am 30.7.2013).

Der Spiegel. “Spießiges Gehabe.” 24.04.1989, Reprint im Internet: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13495351.html>>, (Zugriff am 30.7.2013).

Deutsche Bundesregierung.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große Anfrage der CDU/CSU-Bundestagsfraktion zu den Menschenrechten in der DDR.” 20. September 1979, Reprint im Internet: <<http://www.chronik-der-mauer.de/index.php/de/Start/Detail/id/593849/page/3,1979>>. (Zugriff am 30.7.2013).

Finn, Gerhard. “Die Widerstandsarbeit der Kampfgruppe gegen Unmenschlichkeit.” in :Gerhard Finn et al. (Hrsg.) *Unrecht überwinden - SED-Diktatur und Widerstand, Aktuelle Fragen*

- der Politik* 38, Sankt Augustin: Konrad-Adenauer-Stiftung, S. 23-32, im Internet: <http://www.kas.de/wf/doc/kas_685-544-1-30.pdf 1996>. (Zugriff am 30.7.2013).
- Fraude, Andreas. "Die Außenpolitik der DDR." Erfurt: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Thüringen.
- Grasemann, Hans-Jürgen. "Das schlechte Gewissen der DDR." in: *Bayernkurier*, 3. Dezember 2011, im Internet: <<http://www.bayernkurier.de/zeitung/artikel/ansicht/4125-das-schlechte-gewissen-der-ddr.html>, 2011> (Zugriff am 30.7.2013).
- Hacker, Jens. "*Deutschland als Rechtsbegriff aus der Sicht beider Staaten.*" Innerdeutsche Rechtsbeziehungen. Heidelberg: C.F. Müller Juristischer Verlag, 1988.
- Hagemann, Frank. "Die Drohung des Rechts - Der Kampf des Untersuchungsausschusses Freiheitlicher Juristen." in: Gerhard Finn et al. (Hrsg.) *Unrecht überwinden - SED-Diktatur und Widerstand, Aktuelle Fragen der Politik* 38, Sankt Augustin: Konrad-Adenauer-Stiftung, S. 33-46, im Internet: <http://www.kas.de/wf/doc/kas_685-544-1-30.pdf, 1996>. (Zugriff am 30.7.2013).
- Hans-Peter Schwarz. "Brauchen wir ein neues deutschlandpolitisches Konzept?." in: *Europa-Archiv*, Folge 111/1977.
- Haus der Geschichte (Hrsg.) (ohne Jahr). "Bürgerbewegungen: 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 (IFM)," im Internet: <<http://www.hdg.de/lemo/html/DasGeteilteDeutschland/NeueHerausforderungen/Buergerbewegungen/initiativeFriedenUndMenschenrechte.html>>, (Zugriff am 30.7.2013).
- Hopgood, Stephen. "*Keepers of the Flame. Understanding Amnesty International.*"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http://www.bpb.de/geschichte/deutsche-einheit/154327/die-reaktion-des-westens>>, (Zugriff am 30.7.2013).
- Internationale 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e. "Chronik. Stationen der DDR-Arbeit der Internationalen 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e

- von 1972 bis 1989.” im Internet: <<http://www.igfm.de/fileadmin/igfm.de/pdf/Publikationen/Dokumentationen/IGFM-Chronik-DDR-Arbeit-1972-1989.pdf>, 1996>. (Zugriff am 30.7.2013).
- Jabusch, Sebastian. “Adenauers Deutschland-Politik: Alternative Ideen & Kritik,” 2009, <http://www.sebastianjabusch.de/wp-content/uploads/2010/12/Konrad_Adenauer_und_die_gescheiterte_Einheit_by_Jabusch.pdf>.
- Kaiser, Carl-Christian. “Freiheit, die sie meinen. Ein deutsch-deutscher Diskurs über die Menschenrechte.” Die Zeit, 21.4.1989, Nr. 17/89, Reprint im Internet: <<http://www.zeit.de/1989/17/freiheit-die-sie-meinen>, 1989>. (Zugriff am 30.7.2013).
- Kühn, Detlef. “Das Gesamtdeutsche Institut im Visier der Staatssicherheit, Berlin, Schriftenreihe des Berliner Landesbeauftragten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Band 13, 3. Auflage, im Internet: <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1stu/schriftenreihe/heft13_2011.pdf. 2011>. (Zugriff am 30.7.2013).
- Kunig, Philip. Peinlicher Zynismus. “Wo Menschenrechte ignoriert werden.” in: Die Zeit, 30.03.1984, Nr. 14/84, Reprint im Internet: <<http://www.zeit.de/1984/14/peinlicher-zynismus>. 1984>. (Zugriff am 30.7.2013).
- NDR. “Todesstrafe in der DDR.” im Internet: <<http://www.ndr.de/geschichte/grenzenlos/glossar/ddrtodesstrafe100.html>>. (Zugriff am 30.7.2013).
- Platzdasch, Günter-Frohm, Rainer. “*Die sogenannte Internationale 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e Eine rechte Grauzonenorganisation*.” Wiesbaden (Hrsg. Büro der Stadtverordnetenversammlung 1990). Mit aktuellem Vorwort 2009, Dokument zur NTS/CIA-Connection und F.A.Z. -Artikel vom 11. Juli 2012, im Internet: <<http://www.platzdasch.homepage.t-online.de/download/igfm.pdf> 2012>. (Zugriff am 30.7.2013).
- Ruland, Maximilian. “Experten für gesamtdeutsche Fragen.” Der Königssteiner

- Kreis in den 1950/60er Jahren, in: Deutschland Archiv, 10/2012, im Internet: <<http://www.bpb.de/geschichte/zeitgeschichte/deutschlandarchiv/144666/experten-fuer-gesamtdeutsche-fragen-der-koenigsteiner-kreis-2012>>. (Zugriff am 30.7.2013).
- Schäffgen, Christoph. “DDR-Regierungskriminalität – Erscheinungsformen und Probleme.” Deutschland Archiv, 1993.
- Selvage, Douglas. “Das MfS und der KSZE-Prozess, 1977–1986: Der Kampf der DDR gegen die Menschenrechte in Zusammenarbeit mit und im Vergleich zu den anderen Warschauer Paktstaaten,” <http://www.bstu.bund.de/DE/Wissen/Forschung/Forschungsprojekte/Downloads/selvage_forschungsprojekt.pdf?__blob=publicationFile>, (Zugriff am 30.11.2013).
- SPD-Parteivorstand. “Trotz allem - hilfreich. Das Streitkultur-Papier von SPD und SED. Fünf Jahre danach.” Im Internet: <<http://www.norbertschnittzler.de/Texte/SPD-SED.htm>. 1992>. (Zugriff am 30.7.2013).
- Thomas, Rüdiger. “DDR: Politisches System.” in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 1993.
- Von zur Mühlen, Patrik. “Repression und Opposition in der DDR der achtziger Jahre und ihre Wahrnehmung in der Bundesrepublik” in: Friedrich-Ebert-Stiftung (Hrsg.), Politische Repression in der SBZ/DDR und ihre Wahrnehmung in der Bundesrepublik : Vorträge einer Sektion auf dem Berliner “Geschichtsforum 1949 – 1989 – 1999. Getrennte Vergangenheit – gemeinsame Geschichte?” am 29. Mai 1999, Bonn 1999, Reprint im Internet :1991. <<http://www.fes.de/fulltext/historiker/00660002.htm#LOCE9E3>>, (Zugriff am 30.7.2013).
- Wahl, Stefanie. “Die Reaktion des Westens.” im Internet:2013.
- Wüst, Jürgen. “Imperialistisches Menschenrechtsgeschrei: Der Kampf des MfS gegen die Internationale 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e (IGFM) und Amnesty International (AI).” in: Deutschland Archiv, Nr. 3/1998.

3. 기타자료

<면담자료>

- 동독 주민 A와의 인터뷰. 2013. 8. 29.
동독 주민 B와의 인터뷰. 2013. 9. 3.
북한 이탈주민 C와의 인터뷰. 2013. 9. 10.
동독 주민 D와의 인터뷰. 2013. 9. 13.
동독 주민 E와의 인터뷰. 2013. 8. 13.
동독 주민 F와의 인터뷰. 2013. 9. 16.
동독 주민 G와의 인터뷰. 2009. 6. 30.
북한 이탈 주민 H 와의 인터뷰. 2013. 8. 30.
북한 이탈 주민 I 와의 인터뷰. 2013. 9. 3.
김병로 교수(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와의 인터뷰. 2013. 9. 1.
이동기 교수(강릉대학교 역사학과)와의 인터뷰. 2013. 9. 13.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근,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학술회의총서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협동연구총서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1)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기타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 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외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곤, 이기현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박영호, 김동수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예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외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 조사위원회(O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손기웅 외

Study Series		비매품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n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Park Jong Chul et al.
Son Gi Woong et al.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
(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